

연구결과보고서

수출입국가별 동식물 질병검역에 관한 법령 및 제도변화와 국내업계와의 연결모델 개발

Study on legislation of animal and plant quarantine system of
importing and exporting countries and development of distribution
model of legislative changes to domestic industries

주관연구기관: 한양여자대학

농림부

제 출 문

농림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수출입국가별 동식물 질병검역에 관한 법령 및 제도변화와 국내업체와의 연결모델 개발”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2. 26.

주관연구기관명 : 한양여자대학

주관연구책임자 : 허채옥

연 구 원 : 신성균

연 구 원 : 김승중

연 구 보 조 원 : 김민선

연 구 보 조 원 : 이수경

<목 차>

제1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장 연구 방법	3
2.1 연구내용	3
2.2 연구방법	4
제3장 연구 결과	8
3.1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및 주요국 검역조치 / 8	
3.1.1 수출입 동향 개괄	8
3.1.2 유형별 품목별 수출동향	9
3.1.3 국가별 수출동향	12
3.2 주요국가의 농식품 수입검사제도 / 30	
3.2.1 일본	30
3.2.2 미국	34
3.2.3 중국	50
3.2.4 유럽연합	66
3.2.5 호주	69
3.3 WTO사무국의 각국 SPS조치 통보현황 분석	74
3.4 주요 국가/국제기구의 전파시스템 사례 / 81	
3.4.1 미국	81
3.4.2 호주	86
3.4.3 유럽연합	90
3.4.4 중국	96
3.4.5 IPFSAPH	97
3.4.6 WTO	99
3.4.7 우리나라	101
3.5 통보문 및 조치의 분류 / 109	
3.5.1 WTO 통보문의 분류	109
3.5.2 WTO의 SPS조치 분류	112
3.5.3 OIE의 분류	114
3.5.4 IPPC의 분류	121
3.5.5 WCO 및 ISO의 품목 분류	123
3.5.6 우리나라의 분류	133
3.6 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한 전파시스템	143
제4장 정책 제안	154
4.1 SPS 통보의 분류 원칙	154
4.2 국내업계에의 전파시스템 모델 개발 / 157	
4.2.1 WTO SPS 조치를 위한 통보문 검색 시스템 개발 방향	157
4.2.2 SPS 통보문 검색 및 전파시스템 구축 방안	161
4.3 정책 제안	170
제5장 참고 자료	177
첨부 1 WTO/SPS 홍보 시스템 개발(안)	179

〈표 목 차〉

표 1 연도별 농식품 수출입동향	8
표 2 연도별 농식품 유형별 수출동향	9
표 3 국가별 주요 수출품목	12
표 4 농식품 합계 국별 수출입 순위	13
표 5 농산물 합계 국별 수출입 순위	14
표 6 축산물 합계 국별 수출입 순위	15
표 7 임산물 합계 국별 수출입 순위	16
표 8 한국산 배 대미 수출검역 절차 및 내용	46
표 9 품목별 검역제도	71
표 10 국가별 WTO SPS위원회 통보문 건수(2006.1.1 ~ 2006.12.13)	75
표 11 분야별 WTO SPS 통보문의 수(2006.1.1 ~ 2006.12.13)	76
표 12 동물보호관련 통보문의 조치 목적	77
표 13 동물보호 목적 통보문의 보호 목적 동물에 따른 분류	79
표 14 식물보호관련 통보문의 조치 목적 및 적용품목	79
표 15 SPS 통보문 종류 및 분류기호	110
표 16 SPS 통보문의 구성 요소	111
표 17 정규 SPS 통보문의 세부 구성 요소	113
표 18 육상동물보건규정	114
표 19 OIE 통보 질병 목록	119
표 20 IPPC 채택 식물보호 국제표준 목록	121
표 21 HS 코드 및 설명	123
표 22 ICS 코드 및 설명	131
표 23 지정검역대상 동물의 분류	135
표 24 수입금지 식물, 지역 및 병해충(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136
표 25 병해충의 관리 방법	141
표 26 AG코드 체계	142
표 27 RSS 버전별 특성	152
표 28 문서번호에 따른 조치의 종류	158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추진체계	3
그림 2 RSS 시스템에 대한 개념	5
그림 3 제안하는 RSS 시스템 구축 방안	6
그림 4 농수산물의 수입 심사 및 검사 절차	33
그림 5 식물 검역절차	39
그림 6 미국 APHIS의 조직	40
그림 7 APHIS의 Module 1	82
그림 8 APHIS의 Module 2	82
그림 9 APHIS의 Module 3	83
그림 10 ICON 데이터베이스의 검색화면	88
그림 11 ICON 데이터베이스의 검색결과	88
그림 12 PHYTO 데이터베이스의 검색화면	89
그림 13 ANIMEX 데이터베이스의 검색화면	90
그림 14 MADB에서 서비스하는 내용	90
그림 15 조치별 SPS 조치 현황	91
그림 16 조치코드 0101의 SPS 조치 현황	91
그림 17 WTO/TBT-SPS 국가통보자문센터 홈페이지	96
그림 18 제공 통보문과 온라인 의견 제출 페이지	97
그림 19 IPFSAPH에서 서비스하는 상품(commodity) 분류	98
그림 20 IPFSAPH를 통해 검색된 레코드	98
그림 21 IPFSAPH에서 검색된 레코드의 상세화면	99
그림 22 WTO 문서 회람 페이지	100
그림 23 국내 WTO TBT/SPS 공식 통보처 현황	101
그림 24 농림부의 SPS 조치 관련 서비스 사례	102
그림 25 식품의약품안전청의 SPS 통보문 전파 사례	104
그림 26 기술표준원의 WTO TBT 통보문 검색시스템 사례	105
그림 27 기술표준원에서 구축 중인 TBT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	106
그림 28 기술표준원의 TBT 통보문 처리 절차	107
그림 29 RSS 시스템과 메일링 시스템의 차이	144
그림 30 SPS 통보문 분류기호 DB 테이블의 구성필드 샘플	159
그림 31 SPS 통보문별 구성요소 DB 테이블의 구성필드 샘플	159
그림 32 상품분류코드 DB 테이블의 구성필드 샘플	160
그림 33 SPS 통보문 검색 및 전파시스템의 구축 방안	162
그림 34 RSS 시스템에 대한 개념	164
그림 35 SPS 통보문 경보시스템의 정의	165
그림 36 제안하는 SPS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의 프로세스	166
그림 37 단계별 시스템 구축 방안	168
그림 38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대효과	169

〈요 약〉

수출입국가별 동식물 질병검역에 관한 법령 및 제도변화와 국내업체와의 연결모델 개발

연구기관: 한양여자대학

연구자: 허채옥, 신성균, 김승중, 김민선, 이수경

연구기간: 2006.9.27-2006.12.26

주제어: 세계무역기구, 동식물 검역, SPS 통보문, 연계모델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도 WTO회원국의 통보현황과 농축산물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주요국의 검사·검역관련 SPS조치 조사하고, 주요 수출입국의 SPS 조치에 관한 WTO통보문 활용실태 조사와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외국의 SPS조치 모니터링과 국내업체와의 전파시스템 모델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WTO 회원국은 2006년 동안 총 1,103건(12.13까지)을 SPS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이 중 최초로 통보된 통보문은 총 859건(정규 757건, 긴급 102건)이다. WTO 회원국 중 50개국이 하나 이상의 통보문을 회람하였으며, 미국이 387건을 회람하여 가장 많은 통보문을 회람하였다. 이후 브라질, 필리핀, 대만, 콜롬비아가 2006년에 많은 통보를 하였다. 필리핀, 케냐, 이집트의 순으로 긴급 조치를 도입하였다. 통보문은 식품안전 61%, 식물보호 53% 및 국민보호 45%, 동물보호 30%, 영토보호의 순이다. 동물보호에 관한 통보는 화학물질에 관한 내용이 86건, 조류독감 69건, 구제역 27건, 광우병 21건 등이며, New cattle disease는 9건, 유전자변형생물 7건 등이 있다. 식물보호 목적의 통보문은 농약관련 조치 외에는 목재포장재, 유전자변형농산물, 해충 및 질병관련 및 외래종에 대한 통보가 있었다.

또한 연계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WTO SPS 포털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이 포털시스템은 홍보, 검색 및 RSS를 이용한 SPS 통보문 경보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나아가 통보문의 분류,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TBT 통보문의 추가, 번역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정보제공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제1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995년 WTO의 출범에 따라 이의 하부 협정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협정)도 함께 발효되어 SPS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회원국은 자국의 SPS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의 통보 의무가 있음
 - WTO SPS협정 제7조와 부속서 2에 의거하여 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을 이해당사회원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표할 것을 보장하며, 긴급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은 수출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내의 생산자가 수입회원국의 요구조건에 자신의 제품 및 생산방법을 적응시킬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규정의 공표와 발효사이에 합리적인 시간적 간격을 허용하기 위하여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이러한 WTO/SPS통보문은 '05년말까지 각 회원국에서 약 5천건이 회람됨
 - 또한 2006년에는 1,000건 이상의 통보문이 회람될 것으로 예상됨
- 통보문은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수출업자 등)가 수입국의 SPS조치의 제·개정 현황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 중요성이 있음
 - SPS통보문은 동·식물의 검역과 축산가공품의 검사의 경우 체계적으로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외국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당사자도 충분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WTO/SPS통보문과 유사한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on Trade, TBT협정)에 따라 통보하는 TBT 통보문의 경우 WTO/TBT 총괄 담당기관인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2002년부터 주요국의 통보문에 대한 분석과 국내 해당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기술표준원의 경우는 주요품목·주요국가로 한정하여 TBT통보문을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기관 홈페이지에 database를 구축하여 국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WTO/SPS통보문의 경우는 2004년부터 식품분야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국내 관계자에게 회람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초기 내부공문에 의하여 관계부서에 통보에서 최근 e-mail을 통하여 회람하고 있음
- 따라서, WTO/SPS통보문 중 농림부의 담당 분야인 동·식물의 검역과 축산·가공품의 검사에 대한 주요 통보문을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회람이 필요함
 - 이를 통하여 이해당사자는 수입국의 조치변화에 대한 빠른 정보 수집과 대응을 할 수 있어 수출에 문제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며,
 - SPS관련 부서(예,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등)는 제외국의 조치 변화 동향을 신속히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조치를 선진화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도 WTO회원국의 통보현황과 농축산물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주요국의 검사·검역관련 SPS조치 분석하고, 주요 수출입국가의 SPS 조치에 관한 WTO통보문 활용실태 조사와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외국의 SPS조치 모니터링과 국내업체에의 전파 시스템 모델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2장 연구 방법

2.1 연구내용

- 2006년도 WTO사무국의 각국 SPS조치 통보현황 분석
- 미국, 호주, EC, 일본 등 주요 수출입국가의 SPS 조치에 관한 WTO 통보문 활용실태 조사
- 농축산물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주요국의 검사·검역관련 SPS 조치 분석
- SPS조치 모니터링 및 국내업체에의 전파시스템 모델 개발
 - 제외국의 SPS제도 변화를 빠르게 확인 및 국내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확산할 수 있는 방안 개발
 -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RSS시스템을 활용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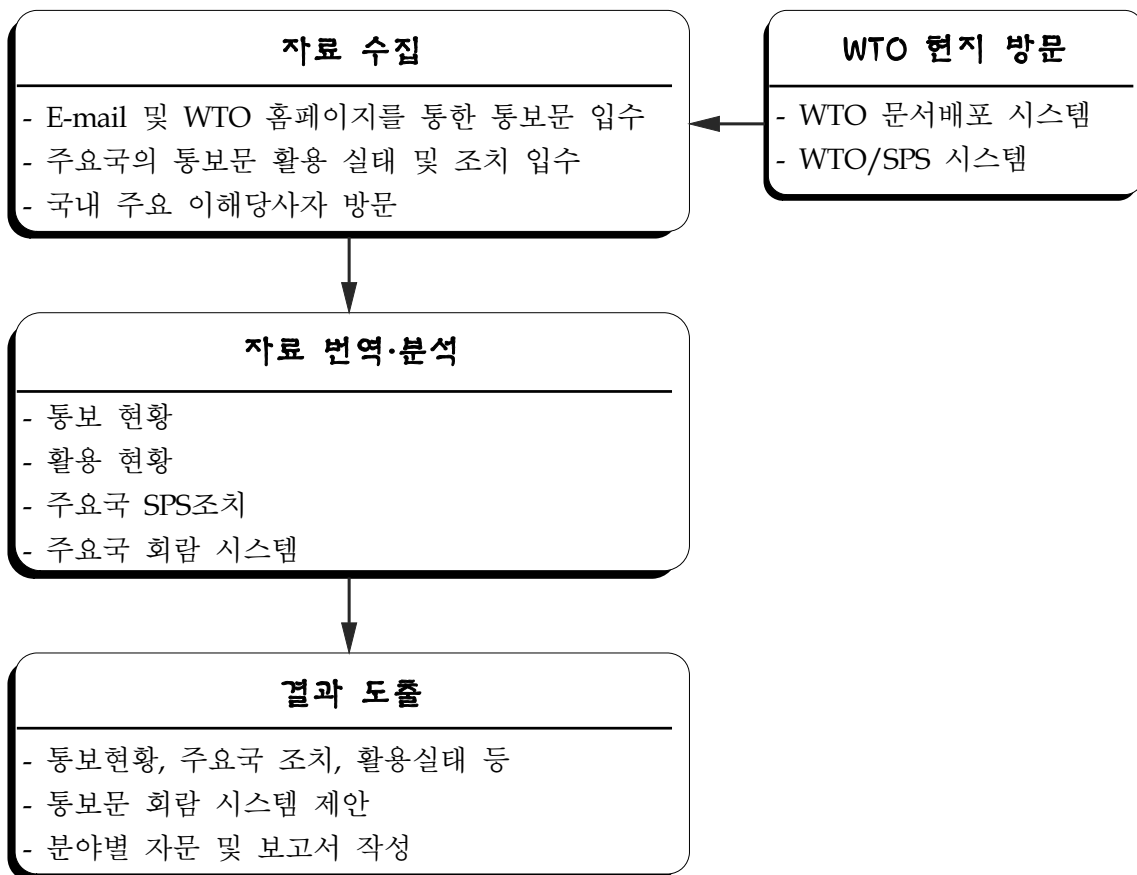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추진체계

2.2 연구방법

그림 1의 연구추진체계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수행함

- 관련 자료 수집
 - WTO 홈페이지 및 SPS위원회의 E-mail service를 통한 통보 자료 수집
 - 우리나라 통계자료를 통한 주요국 및 주요 품목 선정
 - 선정된 국가의 SPS관련 조치 수집(선정 국가의 담당국가의 홈페이지)
 - WTO 통보문의 활용사례 수집
 - WTO방문하여 WTO의 체제 확인 및 관련 정보 수집
 - 국내 업체 및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한 수요 수집
 - WTO 통보 체계 및 농림부의 전산 시스템의 RSS시스템 적용 가능성 확인

- 자료 정리·분석
 - Excel등을 활용하여 유형별 자료 정리
 - 축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동·식물 검역 등 적절한 분류 개발
 - 주요국가의 검역제도 요약
 - 국가별 WTO활용사례 비교·검토

- 결론 도출 및 보고서 작성
 - 주요국가의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SPS조치 및 통보동향
 - RSS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통보방법
 - 결론 도출 후 전문가 자문

○ SPS통보문 전파시스템

현재 SPS 조치에 대한 WTO통보문의 전파형태는 Microsoft 워드(DOC) 문서 형태로 이메일에 첨부되어 국내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된다. 다음에는 해당 담당자가 첨부된 문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파악하고 이를 다시 국내 이해당사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전 세계 회원국의 SPS 조치에 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파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RSS(Rich

Site Summary: Really Simple Syndication) 개념을 이용한 통보·확산 시스템 개발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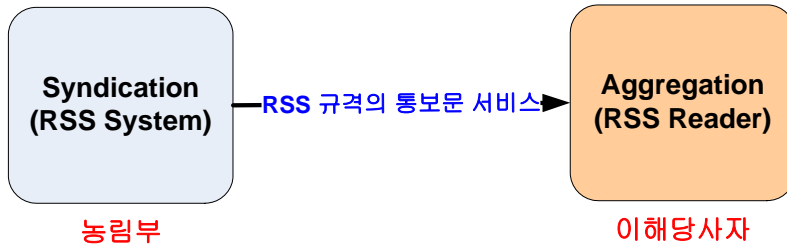


그림 2 RSS 시스템에 대한 개념

RSS는 뉴스나 블로그 등 자주 갱신되는 웹 사이트의 내용을 통보·배급을 위한 XML (eXtended Markup Language) 기반의 차세대 웹 서비스 기술이다. 예를 들면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웹 사이트의 RSS 파일을 정기적으로 수집하면 B 사이트의 갱신된 콘텐츠의 제목, 링크, 내용을 자동화된 과정에 의해 자신의 사이트에 등록하고 RSS 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해 B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최신 콘텐츠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0개의 웹 사이트에서 최근 갱신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웹 브라우저를 열고 10개 사이트를 하나씩 방문해서 지난번 읽었던 곳을 찾고 그 뒤로 새로운 글이 올라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시간 뒤에 또 확인해보려면 이 작업을 손으로 하나씩 다시 해줘야 한다. 그런데 만약 10개의 사이트에서 RSS를 제공한다면 RSS 리더기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확인이 가능하고 일정한 시간간격마다 자동으로 갱신된 내용을 확인해 준다.

상기와 같은 RSS 기술을 이용해 SPS 조치에 대한 WTO 통보문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배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은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통보문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는 RSS 리더기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검색하고 통보·배급할 수 있도록 파싱(parsing) 단계를 거쳐 모든 데이터를 RSS 포맷으로 변환해야 한다. 국내 이해당사자들은 농림부에서 서비스하는 RSS 시스템을 통해 회원 각국의 SPS 조치에 대한 WTO 통보문을 RSS 리더기로 손쉽게 획득하고 반대로 국내 수출입 업체나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의 RSS 시스템 연동을 통해 SPS 조치에 따른 WTO 통보문의 활용실태를 효율적으로 모

니터링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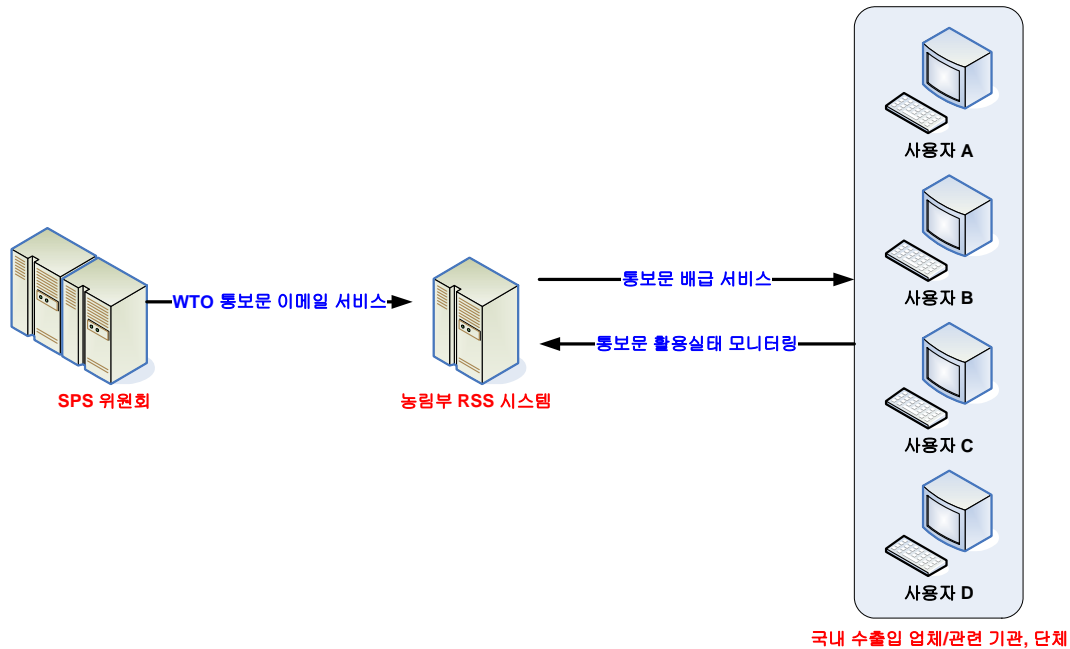


그림 3 제안하는 RSS 시스템 구축 방안

RSS는 가장 성공적인 XML 서비스로써, 웹 사이트를 통해 컨텐츠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구현방식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요약하고, 상호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표준이다. RSS로 대표되는 컨텐츠 배급 포맷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RSS 서비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선택적 정보의 획득: 사용자가 원하는 주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채널 선택 가능
- 빠른 정보의 획득: 동시에 다양한 소스에 접근 가능
- History 관리: 다양한 웹 사이트의 과거 기록 보관 가능
- 자동화된 콘텐츠 연동: Syndication / Aggregation
- 콘텐츠 재사용성: 구조화된 XML 데이터로 손쉬운 변환 및 처리 가능
-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 1:1에서 1:N으로 동시 접속 가능

RSS 시스템의 주요용도로는 시스템이 구축된 웹 사이트에 새롭게 생성되는 정보들을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규칙으로 이용되고 있다. 웹

사이트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RSS라는 규칙에 따라 제공하면 이용자는 RSS를 읽을 수 있는 브라우저나 리더를 통해 그 내용을 받아올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RSS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SPS 조치에 대한 WTO 통보문 제공자 측면에서 본다면 웹 페이지에 RSS를 지원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손쉽게 SPS 관련 농림부 웹 페이지의 최신정보를 배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해당사자(수출입 업체 및 관련 단체, 기관) 입장에서 보면 매번 SPS 조치에 대한 WTO 통보문을 얻기 위하여 기존의 이메일 서비스를 기다리지 않고도 아주 간단히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장 연구 결과

3.1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및 주요국 검역조치

3.1.1 수출입 동향 개괄

'05년 농식품 수출은 환율하락, 유가인상, 김치파동, 폭설피해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6.6% 증가한 2,222백만불, 수입은 6.0% 증가한 11,889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채소, 과일, 화훼 등 신선 농림축산물이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고 가공 농림축산물은 5.2% 증가하였고, 수입은 김치(73.9%), 돼지고기(75.9%), 닭고기(103.6%) 등이 대폭 증가하였고 곡물류 및 대두박 등 박류는 각각 10.6%, 7.8% 감소하였다.

표 1 연도별 농식품 수출입동향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2	2003	2004(A)		2005(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량	금액	
수출	국가전체	162,471	193,817	-	253,845	-	284,419	-	12.0
	농 식 품	1,639.9	1,859.8	1,491.0	2,085.0	1,481.5	2,221.5	△0.6	6.5
	농축산물	1,473.0	1,335.5	1,344.7	1,921.2	1,389.4	2,071.5	3.3	7.8
	-농산물	1,374.5	1,563.2	1,258.9	1,758.5	1,293.5	1,898.8	2.7	8.0
	-축산물	98.5	119.5	85.8	162.7	95.9	172.7	11.8	6.1
	임산물	166.9	177.1	146.4	163.8	92.1	150.0	△37.1	△8.4
수입	국가전체	152,126	178,827	-	224,463	-	261,238	-	16.4
	농 식 품	9,584.3	10,221.2	34,250.9	11,219.8	34,536.0	11,888.5	0.8	6.0
	농축산물	7,650.0	8,328.3	25,029.3	9,199.9	25,653.5	9,757.9	2.5	6.1
	-농산물	5,701.5	6,212.7	24,317.4	7,444.6	24,765.5	7,397.3	1.8	△0.6
	-축산물	1,948.5	2,115.6	711.9	1,755.3	888.0	2,360.6	24.7	34.5
	임산물	1,934.3	1,892.9	9,221.6	2,019.9	8,882.4	2,130.6	△3.7	5.5
수지	국가전체	10,345	14,990	-	29,382	-	23,181	-	-
	농 식 품	△7,944.4	△8,361.3	△32,759.9	△9,134.8	△33,054.5	△9,667.0	-	-

3.1.2 유형별 품목별 수출동향

유형별 수출동향

신선농림축산물중 채소(9.1%), 화훼(7.4), 과실(41.1), 가금육(171.4), 돈육(25.6) 등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김치(△9.4%), 인삼(△7.5)은 감소하였으며, 가공농림축산물중 가공식품(7.2%)은 증가했으나 목재류(△25.1)는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당류(19.9%), 과자류(11.7%), 소스류(22.0), 커피류(35.2), 연초류(15.6)는 증가하였으며, 주류(△7.4%)와 면류(△10.5)는 감소하였다.

표 2 연도별 농식품 유형별 수출동향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2	2003	2004(A)		2005(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축산물 합계	1,639.9	1,859.8	1,491.0	2,085.0	1,481.5	2,221.5	△0.6	6.5
○ 신선농림축산물	462.7	509.3	205.6	550.8	220.7	608.2	7.3	10.4
- 채 소	89.5	100.6	55.8	126.9	56.6	138.5	1.4	9.1
- 김 치	79.3	93.2	34.8	102.7	32.3	93.0	△7.2	△9.4
- 인 삼	55.0	66.6	2.2	89.2	2.1	82.5	△4.5	△7.5
- 화 훼	32.1	45.3	8.3	48.5	10.0	52.1	20.5	7.4
- 과 실	82.8	70.5	67.7	85.7	80.6	120.9	19.1	41.1
- 돼지고기	22.2	31.3	15.8	27.3	14.7	34.3	△7.0	25.6
- 가 금 육 (닭,오리)	6.6	5.7	2.2	3.5	3.1	9.5	40.9	171.4
- 산림부산물	95.2	96.1	18.8	67.0	21.3	77.4	13.3	15.5
○ 가공농림축산물	1,177.2	1,350.5	1,285.4	1,534.2	1,260.8	1,613.3	△1.9	5.2
- 가공식품	1,105.4	1,269.6	1,157.8	1,437.3	1,190.0	1,540.7	2.8	7.2
- 목 재 류	71.8	80.9	127.6	96.9	70.8	72.6	△44.5	△25.1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 채소류: ('04) 126.9백만불 → ('05) 138.5 (9.1%)
 -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재배기술 발달 등으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
 - 채소류: ('95) 61백만불 → ('00) 107 → ('04) 127 → ('05) 139

- 파프리카는 하기작 재배면적의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세 유지
 - 파프리카: ('04) 49.0백만불 → ('05) 57.1 (16.6%)
 - 딸기는 홍콩 수출이 증가하고, 대일 여름딸기 수출호조로 수출증가
 - 대홍콩 수출: ('04) 118천불 → ('05) 558 (372.9%)
 - 토마토, 배추 등은 하반기이후 일본 국내산 공급량 증가로 수출 감소
- 김치: ('04) 102.7백만불 → ('05) 93.0 (△9.4%)
 - 그 동안 한류 등으로 수출이 증가되었으나 기생충알파동 이후 수출둔화
 - 김치: ('95) 51백만불 → ('00) 79 → ('04) 103 → ('05) 93
 - 한류로 대만·홍콩지역은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대일수출은 엔화가치 하락, 안전성 문제(기생충알) 등의 영향으로 감소
 - 대대만 수출 : ('04) 968천불 → ('05) 1,470 (51.9%)
 - 인삼: ('04) 89.2백만불 → ('05) 82.5 (△7.5%)
 - '90년 165백만불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최근에는 80백만불 수준유지
 - 인삼류: ('95) 140백만불 → ('00) 79 → ('04) 89 → ('05) 83
 - 국내 수요증가 및 환율하락으로 홍삼 수출이 감소한 반면, 기타 제품류는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전개로 미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 대베트남 수출: ('04) 1.9백만불 → ('05) 3.3 (73.7%)
 - 화훼류: ('04) 48.5백만불 → ('05) 52.1 (7.4%)
 - 대규모 수출단지 조성과 재배기술 발달 등으로 수출이 계속 증가
 - 화훼류: ('95) 6백만불 → ('00) 29 → ('04) 49 → ('05) 52
 -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심비디움 등 난초류 수출확대로 5천만불 수출달성
 - 난초: ('04) 10.2백만불 → ('05) 18.7 (83.3%)
 - 동남아산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유가·환율하락으로 어려움 가중
 - 장미: ('04) 11.6백만불 → ('05) 10.6 (△8.6%)
 - 국화: ('04) 9.3백만불 → ('05) 8.5 (△8.6%)
 - 백합: ('04) 13.3백만불 → ('05) 10.5 (△21.1%)

- 과실류: ('04) 85.7백만불 → ('05) 120.9 (41.1%)
 - 고품질 과일 생산과 대미 배 중·소과 수출, 적극적인 해외 판촉 등으로 수출 계속 증가
 - 과실류: ('95) 60백만불 → ('00) 45 → ('04) 86 → ('05) 121
 - 중국·일본산 과실류의 저가 공세 등이 수출확대의 제약요인
 - 배: ('04) 35.2백만불 → ('05) 56.1 (59.1%)
 - 사과: ('04) 5.2백만불 → ('05) 7.8 (50.6%)
 - 단감: ('04) 3.6백만불 → ('05) 5.6 (55.6%)
 - 감귤: ('04) 5.6백만불 → ('05) 3.4 (△39.5%)

- 돼지고기: ('04) 27.3백만불 → ('05) 34.3 (25.6%)
 - 돼지고기는 '99년 340백만불 최대 수출이후 '00.3월 구제역 발생에 의한 대일수출 중단으로 수출이 호전되지 않는 상태
 - 돼지고기: ('95) 90백만불 → ('00) 75 → ('04) 27 → ('05) 34
 - 최근에는 필리핀, 러시아 등 신규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회복추세

- 가금육: ('04) 3.5백만불 → ('05) 9.5 (173.8%)
 - 가금육은 한류에 따른 삼계탕과 대일 오리고기 수출이 크게 증가
 - 가금육: ('95) 1백만불 → ('00) 3 → ('04) 4 → ('05) 10
 - 닭고기: ('04) 2.3백만불 → ('05) 5.8 (152.2%)
 - 오리고기: ('04) 1.1백만불 → ('05) 3.7 (236.4%)

- 산림부산물: ('04) 67.0백만불 → ('05) 77.4 (15.5%)
 - 산림부산물 수출은 간밤 가공산업의 중국이전, 송이버섯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감소추세
 - 산림부산물: ('95) 209백만불 → ('00) 133 → ('04) 67 → ('05) 77
 - 밤: ('04) 41.7 → ('05) 38.1 (△8.6)
 - 송이버섯: ('04) 15.6 → ('05) 14.3 (△8.3)
 - 표고버섯: ('04) 4.6 → ('05) 4.9 (6.5)

- 가공식품: ('04) 1,437.3백만불 → ('05) 1,540.7 (7.2%)
 - 가공식품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4%씩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설탕, 껌, 라면 등에서 담배, 소주, 커피조제품 등으로 다변화
 - 가공농식품 : ('95) 952백만불 → ('00) 982 → ('04) 1,534 → ('05) 1,614
 - 수출품목:
 - ('95) 설탕 93백만불, 껌 70, 라면 68, 소주 30, 커피조제품 27
 - ('05) 담배 254백만불, 라면 136, 소주 116, 커피조제품 109, 설탕 94
 - 고추장·간장·된장: ('95) 8백만불 → ('00) 14 → ('04) 22 → ('05) 27

3.1.3 국가별 수출동향

최근 주요동향

- 일본은 채소, 과실은 증가했으나 김치, 인삼, 화훼 등 감소로 소폭 감소
 - ('04) 728.6백만불 → ('05) 713.3 (감 2.1)
- 미국은 인삼, 과실류는 증가했으나 라면 등 가공식품 감소로 소폭 감소
 - ('04) 284.7백만불 → ('05) 280.3 (감 1.5)
- 중국(홍콩포함)은 인삼류가 감소했으나 난초류와 가공식품 수출호조로 증가
 - ('04) 333.0백만불 → ('05) 354.9 (증 6.6)

표 3 국가별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2	2003	2004 (A)	2005 (B)	증감률 (B/A)	주요 수출품목
합 계	1,639.9	1,859.8	2,085.0	2,221.5	6.5	
일 본	590.0	657.5	728.6	713.3	△2.1	소주, 김치, 채소류(파프리카)
미 국	213.9	223.2	284.7	280.3	△1.5	인삼류, 밤, 난초, 면류
중 국	129.9	166.1	213.7	231.2	8.2	당류, 면류, 과자류, 밤, 난초
러시아	134.5	157.4	175.4	203.8	16.2	돼지고기, 면류, 소스류
홍 콩	106.7	99.2	119.3	123.7	3.7	당류, 인삼류, 맥주, 연초류
대 만	65.3	62.0	71.0	110.1	55.1	과실류, 인삼류, 커피류, 김치
ASEAN	85.3	81.4	79.7	97.7	22.6	면류, 커피류, 당류, 과실류
E U	35.2	52.5	64.5	67.5	4.7	연초류, 면류, 커피류, 선인장
기 타	279.1	360.5	348.1	393.9	13.2	

- 러시아(16.2%), 대만(55.1%), 기타국가는 과실, 가공품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 ('04) 738.7백만불 → ('05) 7873.0 (증 18.2)

국별 유형별 수출입 순위

표 4 농식품 합계 국별 수출입 순위

(단위 : 백만불)

'05 순위	수 출				수 입			
	국가명	금 액	비중	'04순위	국가명	금 액	비중	'04순위
	합 계	2,221.5	100.0		합 계	11,888.5	100.0	
1	일 본	713.3	32.1	1	중 국	2,216.5	18.6	2
2	미 국	280.3	12.6	2	미 국	2,198.5	18.5	1
3	중 국	231.2	10.4	3	호 주	1,359.5	11.4	3
4	러 시 아	203.8	9.2	4	뉴질랜드	679.6	5.7	5
5	홍 콩	123.7	5.6	5	브 라 질	582.1	4.9	4
6	U. A. E.	118.0	5.3	6	카 나 다	493.6	4.2	10
7	대 만	110.1	5.0	7	말레이시아	431.2	3.6	6
8	인도네시아	45.5	2.0	9	인도네시아	362.2	3.0	8
9	호 주	40.1	1.8	11	필 리 핀	281.4	2.4	14
10	이 란	31.5	1.4	8	아르헨티나	267.1	2.2	12
11	필 리 핀	27.8	1.3	12	영 국	259.3	2.2	11
12	카 나 다	26.8	1.2	10	태 국	238.0	2.0	9
13	싱 가 폴	21.8	1.0	13	프 랑 스	215.9	1.8	15
14	프 랑 스	17.9	0.8	15	일 본	200.1	1.7	13
15	베 트 남	17.3	0.8	18	러 시 아	176.7	1.5	16
16	말레이시아	15.2	0.7	17	네덜란드	157.9	1.3	17
17	키르기스	14.0	0.6	24	스 페 인	147.8	1.2	22
18	태 국	13.4	0.6	19	칠 레	143.8	1.2	19
19	몽 골	12.5	0.6	16	인 도	138.1	1.2	7
20	뉴질랜드	11.8	0.5	20	독 일	137.7	1.2	18
21	독 일	10.1	0.5	25	덴 마 크	129.7	1.1	21
22	벨 기 에	10.0	0.5	48	벨 기 에	108.1	0.9	20
23	사우디아라비아	8.1	0.4	22	이 태 리	98.1	0.8	24
24	영 국	8.0	0.4	14	베 트 남	81.6	0.7	23
25	카자흐스탄	8.0	0.4	28	과테말라	80.0	0.7	25
26	네덜란드	6.6	0.3	26	남 아 공	60.6	0.5	26
27	괌	5.7	0.3	29	핀 란 드	38.4	0.3	33
28	이스라엘	5.2	0.2	37	오스트리아	33.6	0.3	35
29	인 도	4.6	0.2	30	콜롬비아	32.5	0.3	40
30	스 페 인	3.9	0.2	39	대 만	31.3	0.3	27

표 5 농산물 합계 국별 수출입 순위

(단위 : 백만불)

'05 순위	수 출				수 입			
	국가명	금 액	비중	'04순위	국가명	금 액	비중	'04순위
	합 계	1,898.8	100.0		합 계	7,397.3	100.0	
1	일 본	620.5	32.7	1	중 국	1,757.0	23.8	2
2	미 국	237.6	12.5	2	미 국	1,553.6	21.0	1
3	중 국	184.5	9.7	3	호 주	615.1	8.3	3
4	러 시 아	149.4	7.9	4	브 라 질	552.5	7.5	4
5	홍 콩	118.3	6.2	5	필 리 핀	276.3	3.7	9
6	U. A. E.	117.8	6.2	6	카 나 다	269.8	3.6	14
7	대 만	98.1	5.2	7	아르헨티나	257.8	3.5	7
8	인도네시아	39.6	2.1	9	영 국	245.1	3.3	6
9	호 주	34.8	1.8	11	말레이시아	154.4	2.1	11
10	이 란	31.3	1.6	8	일 본	144.7	2.0	10
11	카 나 다	25.5	1.3	10	태 국	143.8	1.9	8
12	필 리 핀	22.0	1.2	13	인 도	132.5	1.8	5
13	싱 가 폴	20.4	1.1	12	스 페 인	124.1	1.7	18
14	말레이시아	14.4	0.8	16	인도네시아	114.5	1.5	13
15	키르기스	13.4	0.7	21	프 랑 스	114.2	1.5	12
16	태 국	12.4	0.7	17	독 일	83.5	1.1	16
17	베 트 남	11.9	0.6	22	과테말라	80.0	1.1	19
18	몽 골	11.8	0.6	15	네덜란드	79.5	1.1	15
19	뉴질랜드	9.9	0.5	19	이 태 리	76.3	1.0	21
20	벨 기 에	9.6	0.5	55	뉴질랜드	70.1	0.9	20
21	카자흐스탄	7.2	0.4	30	베 트 남	64.3	0.9	17
22	독 일	6.8	0.4	26	남 아 공	45.2	0.6	22
23	영 국	6.5	0.3	14	칠 레	44.3	0.6	27
24	네덜란드	6.1	0.3	24	콜롬비아	30.8	0.4	32
25	광	5.5	0.3	29	벨 기 에	27.1	0.4	26
26	이스라엘	5.2	0.3	36	그 리 스	24.6	0.3	23
27	프 랑 스	4.8	0.3	28	대 만	24.5	0.3	25
28	사우디아라비아	4.5	0.2	25	싱 가 폴	24.2	0.3	29
29	인 도	4.4	0.2	27	터 키	21.4	0.3	31
30	스 페 인	3.8	0.2	41	스리랑카	21.3	0.3	28

표 6 축산물 합계 국별 수출입 순위

(단위 : 백만불)

'05 순위	수 출				수 입			
	국가명	금 액	비중	'04순위	국가명	금 액	비중	'04순위
	합 계	172.7	100.0		합 계	2,360.6	100.0	
1	러 시 아	51.8	30.0	3	호 주	661.3	28.0	1
2	일 본	39.0	22.6	2	미 국	412.3	17.5	2
3	미 국	34.6	20.0	1	뉴질랜드	312.1	13.2	3
4	중 국	6.2	3.6	6	카 나 다	131.4	5.6	5
5	필 리 핀	4.9	2.8	4	덴 마 크	112.4	4.8	4
6	호 주	4.9	2.8	5	프 랑 스	100.0	4.2	6
7	사우디아라비아	3.6	2.1	8	칠 레	80.9	3.4	9
8	베 트 남	3.2	1.9	9	벨 기 에	79.5	3.4	8
9	홍 콩	3.2	1.9	12	네덜란드	75.5	3.2	7
10	대 만	2.9	1.7	7	중 국	71.2	3.0	11
11	독 일	2.3	1.3	10	일 본	48.4	2.1	10
12	뉴질랜드	1.8	1.0	11	오스트리아	27.5	1.2	14
13	인도네시아	1.2	0.7	18	독 일	25.8	1.1	12
14	태 국	1.0	0.6	17	헝 가 리	23.6	1.0	15
15	방글라데시	1.0	0.6	14	폴 란 드	21.6	0.9	17
16	싱 가 폴	0.9	0.5	19	스 페 인	20.5	0.9	24
17	영 국	0.9	0.5	13	브 라 질	20.0	0.8	19
18	카자흐스탄	0.7	0.4	15	멕 시 코	18.9	0.8	29
19	시 리 아	0.7	0.4	23	태 국	17.5	0.7	13
20	브 라 질	0.6	0.3	24	우루과이	16.7	0.7	21
21	덴 마 크	0.6	0.3	71	영 국	13.8	0.6	20
22	터 키	0.6	0.3	44	이 태 리	12.0	0.5	18
23	키르기스	0.6	0.3	25	러 시 아	10.5	0.4	16
24	카 나 다	0.6	0.3	16	아르헨티나	8.7	0.4	27
25	이 태 리	0.6	0.3	20	핀 란 드	7.1	0.3	25
26	말레이시아	0.5	0.3	31	싱 가 폴	4.7	0.2	23
27	몽 골	0.5	0.3	22	스 웨 덴	4.7	0.2	28
28	멕 시 코	0.5	0.3	21	인 도	3.7	0.2	30
29	요 르 단	0.4	0.2	30	아일랜드	3.7	0.2	26
30	이 라 크	0.3	0.2	59	대 만	3.1	0.1	22

표 7 임산물 합계 국별 수출입 순위

(단위 : 백만불)

'05 순위	수 출				수 입			
	국가명	금 액	비중	'04순위	국가명	금 액	비중	'04순위
	합 계	150.0	100.0		합 계	2,130.6	100.0	
1	일 본	53.8	35.9	1	중 국	388.3	18.2	1
2	중 국	40.5	27.0	2	뉴질랜드	297.4	14.0	2
3	프 랑 스	13.0	8.7	3	말레이시아	275.7	12.9	3
4	대 만	9.2	6.1	6	인도네시아	246.8	11.6	4
5	미 국	8.1	5.4	4	미 국	232.6	10.9	5
6	인도네시아	4.7	3.1	8	러 시 아	165.7	7.8	6
7	양 골 라	3.3	2.2	104	카 나 다	92.3	4.3	7
8	러 시 아	2.7	1.8	7	호 주	83.1	3.9	8
9	홍 콩	2.3	1.5	5	태 국	76.6	3.6	9
10	베 트 남	2.2	1.5	9	솔로몬군도	31.1	1.5	10
11	터 키	1.1	0.7	34	핀 란 드	29.5	1.4	13
12	독 일	1.0	0.7	28	독 일	28.4	1.3	14
13	필 리 핀	0.8	0.5	12	파푸아뉴기니	23.0	1.1	11
14	카 나 다	0.7	0.5	14	칠 레	18.6	0.9	12
15	스 웨 덴	0.6	0.4	15	베 트 남	16.9	0.8	22
16	영 국	0.6	0.4	13	남 아 공	15.1	0.7	23
17	카 타 르	0.6	0.4	30	스 웨 덴	13.7	0.6	20
18	네덜란드	0.5	0.3	17	미 얀 마	13.5	0.6	19
19	싱 가 폴	0.5	0.3	16	이 태 리	9.8	0.5	17
20	호 주	0.4	0.3	27	브 라 질	9.6	0.5	16
21	케냐	0.4	0.3	21	일 본	7.0	0.3	24
22	벨 기 에	0.4	0.3	22	에스토니아	6.0	0.3	26
23	멕시코	0.3	0.2	11	포르투갈	5.2	0.2	15
24	미 얀 마	0.3	0.2	38	필 리 핀	5.0	0.2	28
25	말레이시아	0.2	0.1	31	대 만	3.7	0.2	29
26	리비아	0.2	0.1	18	덴 마 크	3.4	0.2	36
27	이 란	0.2	0.1	20	터 키	3.2	0.2	34
28	몽 골	0.1	0.1	29	스 페 인	3.2	0.2	21
29	스 페 인	0.1	0.1	24	라트비아	3.1	0.1	32
30	U. A. E.	0.1	0.1	23	네덜란드	2.9	0.1	39

국가별 품목별 수출동향

1) 일본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농식품 합계	638.9 (461.1)	590.0 (452.9)	657.5 (462.3)	728.6 (498.1)	713.3 (483.6)	△2.1 (△2.9)
농산물	503.0 (361.1)	460.0 (369.2)	536.7 (391.0)	627.4 (430.0)	620.5 (416.9)	△1.1 (△3.0)
1 소주	87.3 (72.4)	90.1 (75.0)	101.8 (78.8)	120.2 (88.8)	103.4 (75.6)	△14.0 (△14.9)
2 김치	65.0 (22.2)	74.1 (27.1)	87.2 (30.6)	96.9 (32.4)	86.4 (29.7)	△10.8 (△8.5)
3 고추	37.2 (13.1)	34.3 (14.2)	47.7 (16.3)	52.5 (18.0)	61.4 (19.8)	16.8 (9.8)
4 기타설탕과자	37.2 (41.3)	31.5 (37.6)	30.2 (32.9)	34.6 (36.3)	38.5 (35.9)	11.1 (△1.1)
5 베이커리반죽	26.4 (61.0)	28.5 (67.7)	31.1 (66.7)	31.7 (63.5)	31.8 (63.7)	0.3 (0.4)
6 코코아분말	18.1 (29.9)	17.5 (28.8)	21.7 (31.1)	17.7 (27.0)	17.0 (26.3)	△3.9 (△2.4)
7 라면	5.4 (2.0)	6.8 (2.5)	7.8 (2.5)	12.3 (3.5)	14.5 (4.2)	17.7 (18.3)
8 기타채소	4.4 (1.1)	2.5 (1.2)	3.7 (1.7)	8.1 (3.5)	13.1 (4.4)	61.3 (24.6)
9 기타당	3.4 (8.7)	8.4 (21.9)	13.2 (32.1)	12.7 (29.2)	12.5 (28.9)	△1.8 (△1.3)
10 백삼정	10.3 (0.1)	10.1 (0.0)	10.7 (0.0)	11.5 (0.0)	11.3 (0.0)	△1.6 (△8.2)
11 장미	10.2 (2.1)	7.1 (1.4)	10.4 (1.8)	11.6 (2.2)	10.5 (2.1)	△9.1 (△6.0)
12 백합	4.9 (0.7)	7.0 (0.9)	9.5 (1.2)	13.3 (1.4)	10.5 (1.2)	△21.4 (△14.3)
13 껌	1.2 (0.2)	1.3 (0.3)	4.4 (0.5)	13.8 (1.0)	9.8 (0.8)	△29.3 (△24.0)
14 개 사료	8.2 (6.1)	8.9 (4.9)	7.1 (4.0)	8.0 (5.1)	9.1 (5.3)	13.8 (4.0)
15 인스탄트면	1.2 (0.3)	2.4 (0.6)	4.5 (1.3)	8.7 (2.1)	9.0 (1.8)	4.0 (△11.7)
16 기타곡물발효주	6.7 (11.3)	8.0 (13.2)	10.4 (17.1)	11.4 (18.7)	8.7 (13.4)	△23.5 (△28.3)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17 국화	7.3 (2.0)	7.2 (2.1)	8.4 (2.2)	9.3 (2.2)	8.5 (1.9)	△8.3 (△10.6)
18 토마토	14.5 (8.5)	6.9 (3.5)	7.1 (3.2)	8.5 (3.0)	7.0 (3.1)	△17.5 (2.2)
19 물	2.0 (6.5)	4.2 (12.3)	4.2 (10.6)	7.4 (16.3)	6.7 (13.8)	△9.6 (△15.6)
20 맥주	2.2 (4.1)	0.9 (1.6)	0.8 (1.4)	1.4 (2.1)	6.6 (8.8)	380.5 (329.0)
21 기타강골류	0.5 (0.2)	0.3 (0.1)	1.1 (0.4)	2.5 (0.9)	6.2 (2.2)	147.9 (161.2)
22 인삼음료	4.0 (0.4)	4.6 (0.4)	6.9 (0.4)	6.2 (0.4)	5.6 (0.3)	△10.3 (△18.4)
23 클로렐라	1.1 (0.1)	0.8 (0.1)	1.3 (0.1)	3.6 (0.4)	5.4 (0.6)	51.6 (56.9)
24 채소종자	6.8 (0.1)	5.6 (0.1)	4.2 (0.1)	4.7 (0.1)	5.0 (0.1)	7.7 (△19.5)
25 기타식물성액즙	0.6 (0.1)	1.0 (0.1)	1.4 (0.1)	0.6 (0.2)	5.0 (0.0)	697.0 (△93.4)
26 홍삼정	4.0 (0.0)	4.2 (0.0)	5.1 (0.0)	4.9 (0.0)	4.9 (0.0)	1.1 (7.7)
27 비스킷	1.1 (0.3)	2.2 (0.5)	2.4 (0.6)	3.5 (0.9)	4.9 (1.2)	41.4 (42.6)
28 단일과실조제품	0.9 (1.3)	2.0 (3.0)	2.9 (3.9)	3.9 (5.2)	4.8 (5.9)	21.8 (15.1)
29 기타조제식료품	5.6 (10.5)	5.1 (9.6)	6.6 (12.2)	6.3 (11.3)	4.6 (6.9)	△27.9 (△39.0)
30 고추장	2.3 (1.1)	2.2 (1.1)	3.2 (1.5)	4.2 (1.8)	4.1 (1.8)	△3.7 (1.5)
31 멜론	1.0 (0.5)	1.1 (0.6)	2.2 (0.7)	4.6 (1.4)	3.8 (1.3)	△16.5 (△10.2)
32 기타과실	1.1 (0.8)	1.4 (1.0)	2.0 (1.3)	3.1 (1.5)	3.6 (1.5)	15.1 (0.9)
33 백삼조제품	3.0 (0.1)	2.9 (0.1)	2.7 (0.1)	3.4 (0.0)	3.5 (0.0)	0.8 (△2.3)
34 딸기	10.9 (4.7)	5.7 (2.8)	3.8 (1.4)	3.6 (1.0)	3.4 (0.8)	△5.9 (△23.8)
35 기타식물성점질물	2.7 (0.3)	2.8 (0.4)	3.0 (0.4)	3.1 (0.4)	3.4 (0.4)	7.6 (7.7)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36 권련	0.0 (0.0)	0.0 (0.0)	0.5 (0.0)	2.1 (0.1)	3.4 (0.2)	61.8 (51.2)
37 기타음료	1.0 (0.4)	0.8 (0.5)	1.5 (0.9)	3.2 (2.5)	3.1 (2.9)	△4.1 (16.5)
38 냉면	0.9 (0.5)	1.1 (0.7)	1.4 (0.8)	1.7 (1.0)	2.7 (1.3)	56.1 (26.2)
39 기타베이커리제품	1.0 (0.6)	1.7 (1.0)	1.6 (1.1)	2.1 (1.1)	2.6 (1.5)	22.9 (34.9)
40 초코렛	1.7 (0.4)	4.2 (1.0)	3.7 (0.9)	3.4 (0.7)	2.4 (0.5)	△30.8 (△30.4)
41 커피조제품	0.6 (0.7)	1.0 (1.2)	0.9 (1.0)	1.8 (1.7)	2.3 (1.8)	31.5 (7.9)
42 기타파스타	1.8 (1.0)	1.4 (0.9)	1.8 (1.0)	2.6 (1.3)	2.0 (0.8)	△23.0 (△35.7)
43 혼합조미료	1.1 (0.3)	1.2 (0.3)	1.6 (0.4)	1.8 (0.4)	2.0 (0.4)	11.4 (2.1)
44 탁주	0.8 (0.8)	1.0 (1.3)	1.1 (1.6)	1.5 (2.1)	2.0 (2.8)	32.9 (33.4)
45 빵	0.8 (0.3)	1.5 (0.5)	2.2 (0.8)	2.7 (1.0)	1.9 (0.8)	△29.4 (△24.9)
46 홍삼조제품	2.3 (0.0)	3.1 (0.1)	0.8 (0.0)	0.6 (0.0)	1.9 (0.0)	223.9 (92.1)
47 기타주	0.3 (0.1)	0.5 (0.1)	1.1 (0.8)	2.0 (1.2)	1.8 (1.2)	△12.1 (△5.2)
48 기타사료용조제품	0.4 (0.2)	0.3 (0.1)	1.2 (0.9)	1.0 (0.4)	1.7 (0.5)	69.4 (6.0)
49 기타한약재	3.6 (0.2)	2.3 (0.2)	1.6 (0.1)	1.6 (0.1)	1.6 (0.1)	△1.0 (△2.4)
50 오이	11.4 (8.3)	5.0 (3.5)	3.6 (2.2)	2.2 (1.2)	1.4 (0.9)	△33.8 (△26.0)
51 홍삼분	2.5 (0.0)	1.5 (0.0)	1.5 (0.0)	4.1 (0.1)	1.4 (0.0)	△64.8 (△84.2)
52 가지	31.0 (2.2)	2.8 (1.7)	2.0 (1.0)	2.0 (0.9)	1.4 (0.7)	△32.4 (△30.5)
53 기타소스제품	1.5 (0.5)	0.5 (0.2)	0.6 (0.2)	1.2 (0.4)	1.3 (0.7)	10.5 (71.5)
54 조물제품	1.4 (1.6)	1.0 (1.2)	0.7 (0.4)	0.7 (0.3)	1.3 (0.6)	72.0 (106.5)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55 곡류조제품	0.4 (0.2)	0.8 (0.3)	1.1 (0.4)	1.7 (0.6)	1.0 (0.2)	△39.3 (△61.8)
56 기타곡물	0.1 (0.2)	0.5 (1.1)	0.7 (1.4)	1.1 (1.8)	1.0 (1.9)	△12.6 (0.8)
57 기타권련	0.0 (0.0)	0.2 (0.0)	1.9 (0.0)	0.5 (0.0)	0.9 (0.0)	94.6 (141.1)
58 캔디	0.4 (0.1)	0.8 (0.2)	0.9 (0.3)	0.9 (0.3)	0.8 (0.2)	△15.9 (△22.5)
59 차·마태조제품	0.2 (0.1)	0.4 (0.1)	0.9 (0.2)	0.7 (0.2)	0.8 (0.2)	5.6 (7.4)
60 약주	0.2 (0.1)	0.2 (0.1)	0.8 (0.2)	0.8 (0.2)	0.7 (0.4)	△2.5 (86.0)
61 대두유	0.8 (0.8)	0.7 (0.6)	0.6 (0.6)	1.2 (1.1)	0.6 (0.6)	△44.5 (△45.0)
62 백삼	1.3 (0.0)	1.0 (0.0)	1.0 (0.0)	1.1 (0.0)	0.6 (0.0)	△38.9 (△45.8)
63 기타버섯	4.8 (0.0)	5.2 (0.0)	8.9 (0.0)	1.0 (0.0)	0.6 (0.1)	△41.6 (68.9)
64 아이스크림	0.0 (0.0)	0.1 (0.0)	4.1 (1.6)	1.3 (0.4)	0.6 (0.1)	△56.2 (△62.7)
65 자당	0.6 (1.6)	0.4 (1.4)	0.5 (1.8)	0.6 (1.9)	0.5 (1.4)	△10.7 (△24.3)
66 호박	0.4 (0.3)	0.7 (0.8)	0.6 (0.7)	0.3 (0.3)	0.3 (0.2)	△11.6 (△20.7)
67 기타종자	0.6 (0.1)	0.5 (0.1)	0.5 (0.1)	0.2 (0.0)	0.1 (0.0)	△50.3 (△75.9)
68 구약구	0.7 (1.0)	1.5 (0.9)	1.2 (0.2)	0.0 (0.0)	0.0 (0.0)	- (-)
축산물	29.7 (45.9)	26.8 (40.6)	26.9 (34.4)	39.3 (34.4)	39.0 (37.6)	△0.8 (9.4)
1 기타 조제식품	19.1 (39.9)	15.6 (34.1)	16.6 (29.2)	28.3 (30.7)	24.5 (33.7)	△13.3 (9.7)
2 오리고기	1.2 (0.2)	3.4 (0.6)	2.0 (0.3)	0.5 (0.1)	3.7 (0.6)	609.6 (692.5)
3 닭고기	1.6 (0.6)	2.0 (0.9)	2.6 (0.9)	1.7 (0.4)	3.7 (1.0)	121.4 (143.7)
4 꿀	1.4 (2.1)	1.3 (2.1)	1.5 (2.1)	1.2 (1.8)	1.1 (1.5)	△11.6 (△12.2)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5 돼지고기	0.6 (0.1)	0.8 (0.1)	0.9 (0.1)	4.5 (1.0)	0.5 (0.1)	△89.0 (△87.3)
6 치즈	2.2 (0.7)	1.5 (0.5)	1.9 (0.6)	0.5 (0.1)	0.2 (0.1)	△49.9 (△62.3)
임산물	106.2 (54.1)	103.3 (43.0)	93.9 (36.9)	61.9 (33.7)	53.8 (29.1)	△13.0 (△13.9)
1 밤	71.1 (12.5)	51.3 (8.1)	43.8 (4.3)	17.6 (2.8)	14.8 (2.7)	△15.9 (△6.6)
2 송이버섯	0.1 (0.0)	22.6 (0.2)	17.7 (0.1)	15.5 (0.1)	14.1 (0.1)	△9.2 (17.3)
3 섬유판	11.9 (25.3)	11.9 (25.3)	10.9 (21.7)	11.3 (20.8)	10.0 (18.9)	△11.2 (△9.3)
4 침엽수제재목	4.2 (5.8)	2.8 (3.5)	3.5 (3.8)	4.2 (4.4)	4.4 (4.2)	4.8 (△3.8)
5 깔판류	4.0 (2.1)	2.1 (1.5)	2.1 (1.9)	2.0 (1.8)	2.6 (1.8)	25.7 (3.7)
6 표고버섯	0.0 (0.0)	2.3 (0.2)	4.0 (0.3)	2.2 (0.1)	1.7 (0.1)	△22.6 (△26.6)
7 건축용목제품	0.9 (0.2)	1.0 (0.5)	0.8 (0.3)	1.2 (0.4)	1.0 (0.2)	△17.0 (△32.9)
8 기타목제품	2.8 (0.8)	2.0 (0.6)	3.3 (1.0)	1.6 (0.4)	0.8 (0.1)	△50.6 (△77.0)
9 신변장식용품상자	1.5 (0.1)	0.9 (0.1)	1.1 (0.1)	0.9 (0.1)	0.8 (0.0)	△16.4 (△48.2)
10 부채	1.2 (0.0)	1.2 (0.0)	1.1 (0.0)	1.0 (0.0)	0.7 (0.0)	△25.2 (0.3)
11 합판	2.4 (3.0)	1.3 (1.3)	1.0 (0.7)	0.8 (0.4)	0.5 (0.2)	△33.5 (△49.6)

2) 미국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농식품 합계	172.6 (79.6)	213.9 (96.0)	223.2 (96.9)	284.7 (107.5)	280.3 (106.8)	△1.5 (△0.7)
농산물	147.7 (67.9)	184.6 (81.6)	191.8 (81.1)	221.7 (90.3)	237.6 (91.2)	7.2 (0.9)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1 라면	29.8 (12.0)	34.8 (14.0)	37.1 (14.0)	41.4 (15.0)	37.8 (13.0)	△8.8 (△13.3)
2 권련	14.0 (0.8)	23.5 (1.6)	27.4 (1.9)	36.4 (2.2)	35.6 (2.0)	△2.1 (△9.2)
3 배	13.2 (6.3)	15.5 (6.6)	11.8 (5.6)	15.4 (7.2)	22.6 (9.4)	46.3 (31.0)
4 기타파스타	3.7 (1.9)	7.3 (3.3)	7.4 (3.2)	8.6 (3.8)	9.7 (4.0)	12.2 (4.4)
5 비스킷	7.4 (2.9)	8.8 (3.3)	8.5 (2.8)	9.1 (2.8)	8.1 (2.2)	△11.0 (△21.9)
6 곡류조제품	4.6 (1.6)	5.5 (1.8)	6.6 (2.2)	7.4 (2.4)	7.5 (2.2)	0.7 (△7.7)
7 소주	4.2 (2.5)	5.1 (3.2)	5.4 (3.4)	5.6 (3.6)	7.0 (4.6)	23.8 (27.3)
8 기타음료	1.1 (1.2)	2.3 (2.4)	2.7 (2.9)	3.7 (3.8)	5.9 (5.6)	61.4 (47.7)
9 국수	4.3 (2.9)	5.6 (3.7)	5.1 (3.5)	6.1 (4.1)	5.7 (3.5)	△5.8 (△15.2)
10 기타베이커리제품	3.7 (1.9)	4.9 (2.3)	6.4 (2.9)	6.3 (2.8)	4.8 (1.8)	△24.1 (△36.1)
11 고추장	3.2 (2.3)	2.5 (1.8)	3.2 (2.1)	3.8 (2.4)	4.5 (2.6)	19.2 (6.5)
12 알코올성합성 조제품	0.6 (0.8)	2.1 (3.0)	2.8 (3.9)	3.8 (5.2)	3.9 (4.7)	2.1 (△8.7)
13 혼합조미료	2.2 (0.8)	2.7 (0.9)	2.8 (1.0)	3.1 (1.1)	3.7 (1.2)	20.2 (9.5)
14 조물제품	2.7 (0.1)	2.5 (0.1)	2.7 (0.1)	3.9 (0.1)	3.2 (0.0)	△17.7 (△66.0)
15 기타채소	2.9 (1.7)	2.8 (1.5)	3.3 (1.5)	2.9 (1.4)	3.1 (1.4)	6.6 (△1.2)
16 된장	1.7 (1.2)	1.3 (1.0)	1.9 (1.3)	1.8 (1.3)	2.7 (1.6)	44.8 (20.5)
17 기타식물성점질물	1.2 (0.2)	2.2 (0.3)	2.1 (0.3)	2.0 (0.3)	2.6 (0.3)	28.9 (3.3)
18 단일과실조제품	2.4 (2.8)	2.2 (3.0)	2.5 (3.2)	3.1 (3.4)	2.5 (2.9)	△18.5 (△13.9)
19 난초	1.0 (0.0)	1.1 (0.0)	1.5 (0.1)	1.9 (0.1)	2.5 (0.2)	33.0 (122.4)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20 물	1.9 (2.6)	2.6 (3.6)	1.9 (2.9)	2.6 (4.0)	2.4 (3.5)	△9.3 (△11.5)
21 캔디	2.6 (0.7)	4.0 (1.1)	2.4 (0.6)	2.7 (0.7)	2.3 (0.5)	△15.3 (△21.6)
22 기타과실발효주	0.3 (0.1)	0.4 (0.1)	0.6 (0.2)	1.9 (0.5)	2.1 (0.6)	14.5 (15.7)
23 녹차	0.3 (0.1)	0.5 (0.1)	0.7 (0.2)	1.1 (0.3)	2.1 (0.5)	91.4 (82.5)
24 빵	2.0 (0.8)	1.8 (0.7)	1.4 (0.5)	1.1 (0.4)	2.0 (0.6)	86.1 (59.3)
25 맥주	1.5 (1.8)	1.8 (2.2)	1.8 (2.3)	1.8 (2.5)	1.9 (2.5)	5.7 (0.1)
26 밀	1.0 (1.7)	1.2 (1.8)	1.1 (1.8)	1.7 (2.3)	1.9 (2.1)	13.7 (△8.2)
27 채소종자	0.8 (0.0)	1.7 (0.0)	1.6 (0.0)	2.2 (0.0)	1.9 (0.0)	△17.0 (△32.6)
28 기타소스제품	0.3 (0.2)	0.5 (0.2)	0.7 (0.3)	1.0 (0.4)	1.8 (0.7)	86.4 (56.2)
29 커피조제품	0.2 (0.1)	0.6 (0.2)	0.8 (0.4)	1.1 (0.5)	1.8 (0.7)	57.4 (38.9)
30 기타장	0.7 (0.3)	0.9 (0.4)	1.0 (0.5)	0.9 (0.4)	1.7 (0.5)	82.4 (32.3)
31 기타빙과	1.6 (0.8)	1.8 (0.8)	2.2 (1.0)	1.5 (0.6)	1.6 (0.6)	5.3 (△11.8)
32 인스탄트면	0.7 (0.5)	1.7 (0.9)	1.6 (0.8)	1.8 (0.8)	1.6 (0.6)	△12.8 (△27.3)
33 약주	0.2 (0.1)	0.8 (0.4)	2.0 (0.7)	1.3 (0.4)	1.5 (0.7)	11.0 (59.0)
34 간장	1.2 (1.2)	1.5 (1.3)	1.7 (1.4)	2.0 (1.9)	1.3 (1.4)	△34.2 (△27.2)
35 기타조제식료품	1.3 (0.9)	1.6 (1.0)	1.1 (0.8)	1.2 (1.2)	1.3 (1.3)	13.0 (11.5)
36 알로에조제품	0.8 (0.2)	1.4 (0.3)	1.0 (0.2)	0.9 (0.2)	1.3 (0.5)	43.8 (127.8)
37 사료첨가제	0.6 (0.2)	0.9 (0.5)	0.5 (0.2)	0.5 (0.2)	1.3 (0.3)	175.5 (115.7)
38 백삼조제품	0.8 (0.1)	1.2 (0.2)	1.1 (0.2)	1.4 (0.2)	1.2 (0.2)	△8.8 (△18.5)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39 김치	1.5 (0.6)	1.9 (0.8)	2.0 (0.8)	1.2 (0.5)	1.2 (0.5)	1.5 (△6.5)
40 껌	0.2 (0.1)	0.5 (0.1)	0.5 (0.1)	1.1 (0.2)	1.2 (0.1)	6.6 (△32.6)
41 홍삼조제품	0.2 (0.1)	0.5 (0.1)	1.3 (0.0)	0.7 (0.1)	1.1 (0.1)	69.0 (132.0)
42 베이커리반죽	0.1 (0.1)	0.6 (0.3)	0.7 (0.3)	1.0 (0.5)	1.1 (0.5)	8.5 (2.2)
43 초코렛	0.1 (0.0)	0.5 (0.1)	0.6 (0.2)	0.6 (0.2)	1.1 (0.3)	72.7 (48.3)
44 기타과실	0.7 (0.4)	1.5 (0.8)	0.9 (0.4)	0.8 (0.3)	1.0 (0.4)	31.6 (43.8)
45 인삼음료	0.6 (0.3)	1.1 (0.5)	0.6 (0.3)	0.9 (0.4)	1.0 (0.3)	10.8 (△14.3)
46 냉면	0.9 (0.5)	0.7 (0.5)	0.7 (0.6)	1.3 (0.8)	0.9 (0.6)	△32.8 (△24.9)
47 스프브로드	0.6 (0.2)	0.8 (0.2)	0.7 (0.2)	0.9 (0.3)	0.9 (0.2)	△8.0 (△42.0)
48 채소쥬스	0.3 (0.2)	0.5 (0.3)	0.6 (0.1)	0.3 (0.2)	0.8 (0.8)	165.7 (227.3)
49 혼합조제식료품	0.7 (0.3)	0.5 (0.3)	0.5 (0.2)	1.1 (0.2)	0.8 (0.1)	△23.7 (△52.6)
50 홍차	0.4 (0.1)	0.8 (0.2)	0.6 (0.3)	0.6 (0.2)	0.7 (0.2)	21.9 (1.4)
51 백삼분	0.1 (0.0)	0.1 (0.0)	0.6 (0.0)	1.2 (0.0)	0.7 (0.0)	△39.4 (△48.7)
52 기타한약재	0.3 (0.0)	0.4 (0.1)	0.9 (0.1)	0.5 (0.0)	0.7 (0.1)	46.5 (33.6)
53 기타당	0.3 (0.3)	0.4 (0.3)	0.9 (0.7)	0.6 (0.5)	0.4 (0.4)	△36.5 (△25.9)
54 선인장	0.5 (0.0)	0.5 (0.1)	0.5 (0.1)	0.5 (0.1)	0.4 (0.0)	△20.6 (△21.9)
55 기타곡물발효주	0.1 (0.0)	0.1 (0.1)	1.1 (0.5)	1.2 (0.6)	0.3 (0.2)	△75.8 (△67.0)
56 식혜	0.4 (0.4)	0.8 (0.5)	0.6 (0.5)	0.3 (0.3)	0.2 (0.3)	△8.5 (2.7)
57 배합사료	0.1 (0.1)	0.3 (0.5)	0.8 (1.0)	1.1 (0.7)	0.2 (0.2)	△78.1 (△72.3)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축산물	12.7 (6.1)	18.0 (7.3)	22.2 (8.9)	53.1 (9.5)	34.6 (9.5)	△34.9 (△0.4)
1 기타 조제식품	5.8 (1.3)	10.8 (1.7)	13.2 (2.0)	42.8 (2.6)	25.0 (3.3)	△41.5 (27.9)
2 젤라틴	2.7 (0.9)	2.5 (0.7)	3.3 (0.9)	4.2 (1.0)	3.4 (0.7)	△19.6 (△29.1)
3 발효유	2.8 (3.4)	3.0 (4.1)	3.8 (5.1)	3.2 (4.3)	3.2 (4.1)	2.2 (△3.7)
4 꿀	0.9 (0.4)	1.5 (0.7)	1.7 (0.9)	1.4 (0.7)	2.5 (1.2)	72.2 (72.6)
임산물	12.2 (5.5)	11.2 (7.2)	9.2 (6.9)	9.9 (7.7)	8.1 (6.1)	△17.8 (△20.4)
1 밤	3.9 (1.7)	2.4 (0.9)	1.1 (0.3)	2.2 (0.9)	2.2 (0.8)	0.0 (△7.3)
2 섬유판	0.5 (0.9)	0.6 (1.2)	0.7 (1.4)	1.8 (2.5)	2.0 (1.8)	11.8 (△26.5)
3 깔판류	1.5 (0.4)	1.1 (1.8)	0.8 (2.2)	0.8 (2.3)	0.9 (2.7)	15.0 (17.9)
4 기타목제품	1.6 (1.1)	3.0 (1.9)	2.9 (1.7)	1.6 (0.8)	0.6 (0.2)	△60.9 (△73.7)
5 신변장식품상자	1.2 (0.2)	0.7 (0.2)	0.5 (0.2)	0.8 (0.2)	0.3 (0.1)	△60.0 (△50.1)
6 이쑤시개	0.6 (0.2)	0.6 (0.2)	0.7 (0.2)	0.4 (0.2)	0.2 (0.0)	△65.2 (△69.7)
7 건축용목제품	0.6 (0.2)	0.6 (0.2)	0.7 (0.3)	0.4 (0.2)	0.1 (0.0)	△75.1 (△82.5)

3) 중국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농식품 합계	108.7 (167.3)	129.9 (162.2)	166.1 (189.8)	213.7 (229.6)	231.2 (201.4)	8.2 (△12.3)
농산물	68.4 (114.2)	95.6 (125.2)	116.8 (144.5)	151.0 (157.4)	184.5 (169.0)	22.2 (7.4)
1 자당	19.7 (69.1)	21.1 (80.1)	24.0 (98.1)	29.8 (116.1)	36.8 (120.4)	23.6 (3.7)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2 비스킷	1.7 (0.3)	0.5 (0.1)	2.0 (0.3)	11.7 (2.1)	18.3 (2.6)	56.5 (21.5)
3 난초	2.2 (1.0)	3.3 (1.3)	9.6 (3.0)	7.4 (1.6)	13.9 (3.6)	88.6 (127.9)
4 커피조제품	0.8 (0.4)	8.1 (0.8)	6.5 (1.3)	11.0 (2.0)	13.4 (2.2)	22.3 (13.6)
5 라면	2.9 (1.0)	3.3 (0.7)	12.9 (1.9)	11.3 (1.4)	12.6 (1.6)	11.0 (13.1)
6 껌	0.7 (0.2)	1.8 (0.7)	3.6 (1.4)	4.6 (1.2)	9.2 (2.0)	99.6 (67.4)
7 곡류조제품	1.1 (0.4)	0.5 (0.0)	0.8 (0.1)	2.1 (0.3)	7.7 (0.5)	258.6 (39.5)
8 권련	0.7 (0.0)	2.0 (0.1)	3.6 (0.2)	10.2 (0.5)	6.8 (0.4)	△33.7 (△20.0)
9 홍삼	2.5 (0.0)	2.6 (0.0)	2.0 (0.0)	5.0 (0.0)	4.1 (0.0)	△17.1 (△38.2)
10 캔디	0.3 (0.1)	0.7 (0.2)	1.8 (0.3)	3.2 (0.4)	3.9 (0.6)	23.0 (53.3)
11 채소종자	2.2 (0.1)	3.0 (0.1)	2.6 (0.1)	2.4 (0.1)	3.4 (0.1)	43.1 (46.6)
12 된장	0.2 (0.1)	0.6 (0.1)	0.9 (0.4)	1.1 (0.5)	3.1 (1.2)	176.5 (129.9)
13 기타채소	0.6 (0.1)	0.5 (0.2)	0.7 (0.2)	1.5 (0.5)	2.9 (1.1)	90.4 (100.9)
14 단일과실조제품	1.2 (1.2)	1.1 (1.7)	1.3 (2.1)	1.7 (2.6)	2.6 (3.7)	56.1 (40.6)
15 쇼트닝	1.8 (2.3)	2.1 (2.9)	3.0 (3.6)	2.9 (2.7)	2.6 (2.6)	△9.7 (△3.9)
16 소주	0.5 (0.4)	1.0 (0.8)	1.1 (0.8)	1.7 (1.3)	2.4 (1.9)	40.9 (47.0)
17 인스탄트면	0.7 (0.2)	0.5 (0.1)	0.8 (0.1)	2.0 (0.2)	2.3 (0.2)	17.4 (20.0)
18 혼합조미료	1.1 (0.8)	6.5 (0.9)	3.4 (0.7)	3.1 (0.7)	2.2 (0.5)	△29.7 (△32.8)
19 밀	2.3 (5.6)	1.1 (3.2)	1.8 (4.3)	2.1 (5.3)	2.1 (5.7)	3.2 (7.7)
20 기타음료	0.2 (0.1)	0.3 (0.3)	1.2 (0.6)	1.2 (0.8)	2.1 (1.2)	80.5 (51.9)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21 맥주	1.1 (2.0)	1.2 (2.4)	1.8 (3.6)	1.1 (1.9)	1.8 (2.3)	59.1 (19.4)
22 간장	0.8 (0.5)	1.3 (0.6)	1.3 (0.6)	1.2 (0.6)	1.7 (0.4)	46.5 (△20.2)
23 위스키	2.0 (0.1)	4.4 (0.5)	3.0 (0.3)	2.9 (0.4)	1.6 (0.1)	△47.0 (△62.8)
24 커피	0.6 (0.1)	3.2 (0.3)	1.1 (0.2)	0.7 (0.0)	1.5 (0.1)	123.5 (153.1)
25 기타소스제품	1.7 (0.5)	1.4 (0.2)	1.3 (0.5)	3.3 (0.5)	1.4 (0.4)	△57.9 (△16.1)
26 마요네스	0.1 (0.0)	0.2 (0.0)	0.6 (0.1)	0.7 (0.1)	1.2 (0.2)	70.2 (77.4)
27 기타베이커리제품	1.9 (0.7)	3.8 (0.5)	3.6 (0.4)	3.1 (0.5)	1.1 (0.2)	△63.6 (△67.9)
28 토마토	0.1 (0.0)	0.5 (0.3)	0.6 (0.1)	1.4 (0.2)	0.9 (0.2)	△38.4 (4.8)
29 옥수수유	0.2 (0.1)	0.4 (0.3)	0.6 (0.4)	0.8 (0.5)	0.5 (0.3)	△38.2 (△37.8)
30 기타파스타	0.4 (0.1)	0.5 (0.1)	1.1 (0.2)	2.0 (0.3)	0.3 (0.1)	△86.1 (△61.8)
31 백삼정	0.0 (0.0)	0.5 (0.0)	1.0 (0.0)	0.0 (0.0)	0.3 (0.0)	- (-)
32 기타설탕과자	0.0 (0.0)	0.1 (0.0)	0.7 (0.0)	0.2 (0.0)	0.2 (0.0)	△1.2 (44.7)
33 흡연용담배	0.4 (0.0)	0.1 (0.0)	0.7 (0.0)	0.0 (0.0)	0.1 (0.0)	- (-)
34 알코올성합성 조제품	5.9 (18.6)	4.2 (15.3)	3.0 (10.0)	0.1 (0.4)	0.1 (0.0)	△58.1 (△98.6)
35 국수	0.3 (0.1)	0.5 (0.1)	3.0 (0.3)	1.5 (0.1)	0.0 (0.0)	△99.7 (△97.4)
축산물	3.8 (1.0)	3.1 (1.0)	3.3 (1.4)	3.7 (2.3)	6.2 (6.1)	68.0 (168.7)
1 기타 조제식품	2.2 (0.4)	1.7 (0.3)	1.6 (0.3)	1.8 (0.6)	1.9 (0.3)	6.0 (△43.0)
2 조제분유	0.3 (0.1)	0.2 (0.1)	0.7 (0.1)	0.8 (0.1)	1.3 (0.2)	64.9 (51.8)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임산물	36.5 (52.1)	31.1 (36.0)	46.0 (43.9)	59.0 (69.9)	40.5 (26.3)	△31.3 (△62.4)
1 밤	3.1 (2.9)	8.9 (5.5)	21.6 (8.8)	21.3 (12.8)	20.7 (13.2)	△2.8 (3.1)
2 합판	20.3 (35.8)	12.0 (21.8)	15.3 (26.0)	20.9 (32.6)	4.4 (5.4)	△79.1 (△83.4)
3 기타목제품	0.3 (0.1)	2.5 (0.4)	1.9 (0.3)	2.5 (0.4)	2.7 (0.3)	8.0 (△25.8)
4 섬유판	4.2 (6.6)	2.6 (4.4)	2.4 (5.4)	6.5 (18.5)	1.6 (2.5)	△75.5 (△86.5)
5 침엽수제재목	0.4 (0.4)	1.5 (0.7)	1.1 (0.7)	1.8 (1.2)	1.1 (0.7)	△35.2 (△36.0)
6 열대산제재목	1.1 (0.4)	0.7 (0.4)	0.9 (0.6)	0.7 (0.7)	1.0 (0.6)	49.5 (△1.9)
7 기타단판	1.4 (1.1)	0.3 (0.1)	0.6 (0.1)	0.8 (0.4)	0.7 (0.2)	△14.0 (△44.0)
8 기타제재목	1.6 (2.5)	1.1 (1.3)	0.9 (0.8)	2.1 (1.8)	0.6 (0.5)	△70.1 (△73.1)

4) 유럽연합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농식품 합계	33.5 (16.5)	35.2 (26.4)	52.5 (29.4)	64.5 (26.5)	67.5 (24.5)	4.6 (△7.5)
농산물	27.9 (14.1)	31.1 (24.9)	34.0 (24.6)	45.5 (21.9)	46.5 (19.9)	2.0 (△9.1)
1 앞담배	5.6 (1.5)	3.6 (0.8)	4.9 (1.2)	8.1 (2.0)	14.5 (4.6)	78.4 (128.3)
2 라면	4.1 (1.7)	6.1 (2.8)	6.2 (2.5)	6.9 (2.8)	5.6 (2.1)	△20.0 (△24.4)
3 커피조제품	1.2 (0.3)	2.8 (0.8)	2.9 (1.1)	0.0 (0.0)	2.9 (0.4)	492,126.2 (79,254.1)
4 기타식물성점질물	3.1 (0.4)	3.4 (0.5)	3.7 (0.5)	3.4 (0.4)	1.8 (0.2)	△46.4 (△49.9)
5 캔디	0.9	1.1	1.0	1.4	1.7	25.2

(단위 : 백만불(천톤), %)

구 분	2001	2002	2003	2004(A)	2005(B)	증감율 (B/A)
6 기타파스타	(0.2) 0.7	(0.2) 1.0	(0.2) 1.2	(0.2) 1.1	(0.3) 1.5	(19.2) 35.2
7 백삼정	(0.4) 1.8	(0.6) 1.7	(0.7) 0.9	(0.6) 1.1	(0.8) 1.0	(36.6) △2.6
8 선인장	(0.0) 1.2	(0.0) 1.1	(0.0) 1.0	(0.0) 1.1	(0.0) 1.0	(2.8) △5.7
9 채소종자	(0.3) 0.6	(0.2) 0.4	(0.2) 0.6	(0.2) 1.0	(0.1) 0.6	(△26.9) △40.1
10 배	(0.0) 0.6	(0.0) 1.4	(0.0) 0.9	(0.0) 0.6	(0.0) 0.6	(△22.7) △14.2
11 김치	(0.4) 0.2	(0.9) 0.4	(0.6) 0.5	(0.4) 0.5	(0.3) 0.5	(△16.2) 11.0
12 백삼분	(0.1) 0.3	(0.2) 0.3	(0.2) 0.6	(0.2) 0.5	(0.2) 0.5	(△3.3) 6.7
13 권련	(0.0) 0.2	(0.0) 0.3	(0.0) 0.9	(0.0) 0.3	(0.0) 0.3	(△22.5) 23.2
14 기타설탕과자	(0.0) 0.9	(0.0) 0.7	(0.2) 0.7	(0.0) 0.5	(0.0) 0.2	(30.0) △51.5
	(0.1) (0.1)	(0.1) (0.1)	(0.1) (0.1)	(0.1) (0.1)	(0.0) (0.0)	(△61.2) (△61.2)
축산물	2.1 (0.9)	1.8 (0.7)	4.9 (1.7)	4.8 (1.5)	4.8 (1.0)	0.7 (△37.0)
1 젤라틴	1.7 (0.7)	0.9 (0.4)	3.3 (1.1)	2.7 (0.8)	2.2 (0.6)	△18.9 (△27.1)
2 돼지고기	0.0 (0.0)	0.0 (0.0)	0.9 (0.5)	1.4 (0.6)	0.8 (0.2)	△41.6 (△58.6)
3 기타 조제식품	0.3 (0.1)	0.1 (0.0)	0.5 (0.1)	0.4 (0.1)	0.4 (0.1)	△7.5 (41.9)
임산물	3.5 (1.5)	2.4 (0.8)	13.6 (3.1)	14.2 (3.1)	16.3 (3.7)	14.3 (18.1)
1 합판	0.3 (0.7)	0.0 (0.0)	7.4 (0.8)	10.9 (1.3)	12.9 (1.4)	18.3 (9.0)
2 깔판류	1.1 (0.2)	0.8 (0.5)	4.4 (1.9)	1.1 (1.3)	2.0 (2.0)	81.0 (55.1)

3.2 주요국가의 농식품 수입검사제도

3.2.1 일본

1) 검역제도

식물검역제도

식물수입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중요 해충인 지중해 과실파리 및 우리 미바에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금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은 식물검역소의 '식물수입 검사신고서'에 수출국의 식물방역기관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병해충 등이 부착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훈증,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물류는 식물방역법 규정에 의해 식물검역이 의무화되어있다.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 발송, 경유되어 수입되는 식물, 곤충, 세균등 유해 동식물 및 흙이 붙어있는 식물 등은 시험연구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금지품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 화물, 휴대품, 국제우편물 등의 운송형태 또는 수량의 다소, 토산물, 개인소비 등에 관계없이 전부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제재, 방부목재, 목공품, 죽제품 및 가구집기 등의 가공품, 감, 무화과, 매실, 죽순 등 건조시킨 과실은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식물류를 수입할 때에는 식물방역소 검사결과에 의해 발급된 '식물검사 합격증명서', '식물 수입인정증명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물,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규제대상 식물류는 용기포장에 식물방역소에서 받은 '식물검사 합격증인'을 세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후생성검역소 수입식품 감시담당으로 '식품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 검사 후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필'인이 압인되어 반입된다.

동물검역제도

○ 동물의 수입검사

수입항에 도착한 동물은 즉시 가축방역관이 행하는 임시선박검사를 받은

후 지정된 검사장소로 보내져 일정기간 계류되며, 이때 임상검사, 혈액검사, 혈청반응검사, 피내반응검사 등외에 필요에 따라 병원학적검사, 병리조직학적 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축산물의 수입검사

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동물검역소, 가축방역관이 지정한 보세창고, 또는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검사장소에서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필요한 경우는 검사재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가축전염병예방법)한다.

식육의 위생 및 안정성에 관한 검역은 일본후생성 산하 검역소에서 실시하며 행정검사는 서류심사 현물검사, 관능검사, 시료발취검사 등을 실시하는데 대부분 계속 수입이 되거나 과거 위반사례가 없을 때에는 서류검사로 처리된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식육 및 장기류를 원료로 한 식육제품
 - 수출국 정부기관의 식육검사등에 관한 위생증명서
- 가공식품으로 처음 수입된 것
 - 상품설명서, 원재료성분, 제조공정표
-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식품
 -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 동일식품 등을 계속 수입시
 - 검사성적서(후생성 지정 검사기관검사, 수출국공적기관검사)의 사본 및 최초에 제출한 서류로 검사에 합격한 것의 사본

수산물검사제도

수산물 부문의 통관제도는 세계 101개국과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2분류로 되어있다. 굴의 경우 수입승인 및 사전승인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특별한 규제는 없으나 타 품목과 같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산물을 수입시에는 수입신고서를 화물이 통관하게 되는 관할 검역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굴을 제외하고는 통관상 특별히 문제가 되는 점은 없는 것

으로 조사된다. 생굴에 대해서는 한국의 양식조합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면, 별도의 검사 이 곧바로 오전에(시모노세끼의 경우)통관이 되며 증명서가 없을 경우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냉동굴의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필요서류로든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생굴: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ill), 패독증명서(Certificate of Catching Area)
- 냉동굴: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ill), 후생성의 마비성 패독검사(각 수입시 실시)

2) 농수산물의 수입관련 법률

식물방역법

청과물이나 곡물 등의 식물을 매개로 하여 병해충이 일본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성의 식물방역소에서 '식물방역법'에 의거한 검사가 실시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축류 등의 동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매개로 하여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일본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검사가 실시된다.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내에 잔류하는 농약이나 항생물질 또는 수확 후 농약 등 농수산물의 화학물질 등의 잔류에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수산물, 축산물,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검사가 실시된다. 수입식품에 대하여도 동 법률에 근거하여 항구나 공항의 검역소에서 검역, 감시, 지도가 실시된다.

관세법

농수산물의 관세나 수입금지 농수산물의 관리는 재무성이 '관세법'에 의거

하여 실시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동 법률에 근거하여 수입의 가부를 판정한다. 이 때 앞에서 언급된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세법 이외의 농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법규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관하여 허가·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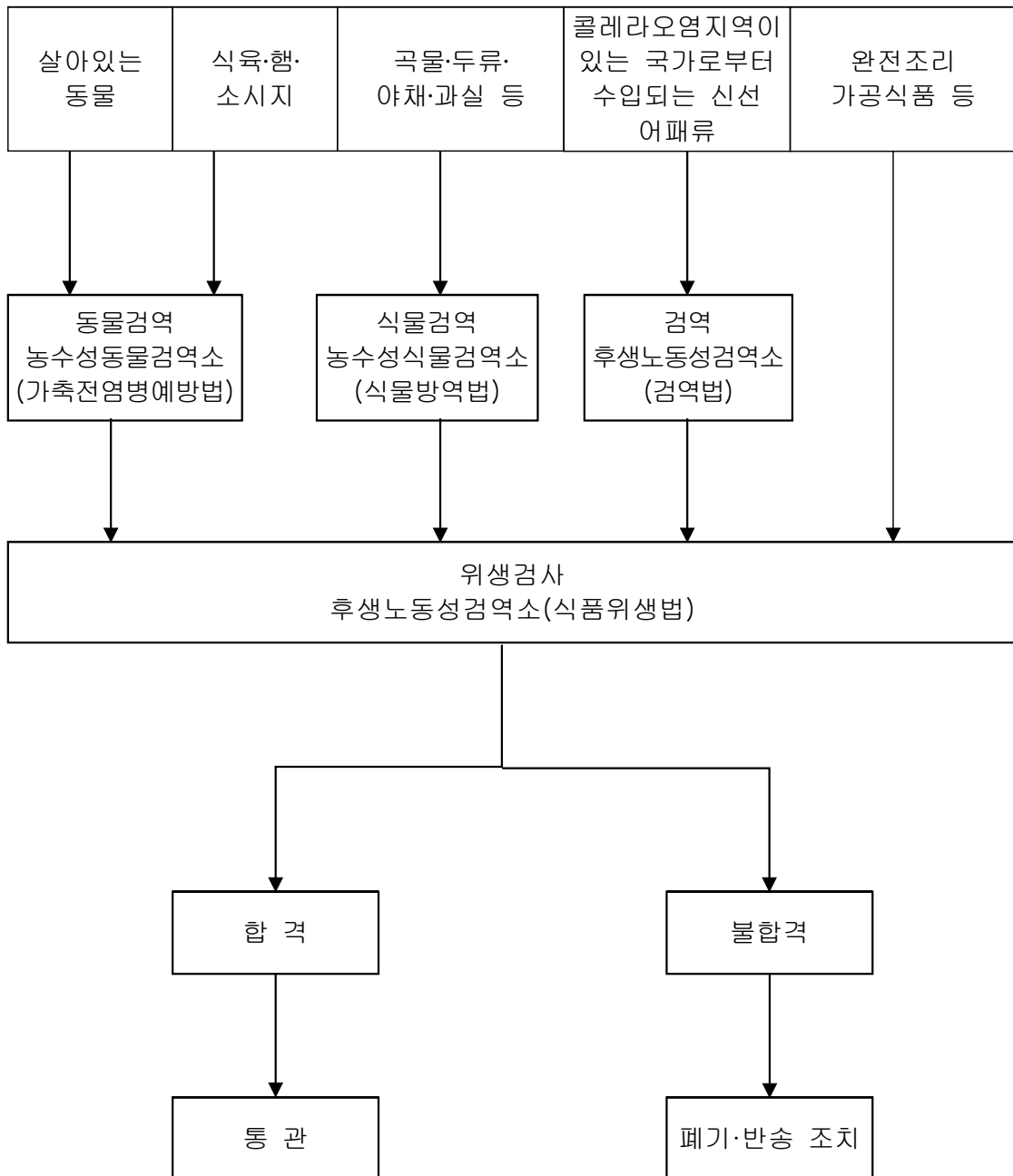


그림 4 농수산물의 수입 심사 및 검사 절차

검역법

검역소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검사 이외에, 콜레라 등 특별한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에 관하여 검역법에 의거한 검사도 실시한다.

기타 법률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법, JAS법)' 등에 따른 적절한 품질표시도 중요하다.

3.2.2 미국

1) 식물검역제도

관련법 체계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이며 구체적인 수입규제에 관한 사항은 해외검역공고 등을 통하여 규정되고 있다.

식물검역법

묘목(nursery stock)의 경우 농무성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제1조) 하다. 이때 묘목이란 야외에서 재배된 화훼묘목(florist's stock), 교목(tree), 관목(shrub), 덩굴(vine), 삽수(cutting), 접목(graft), 접수(scion), 접아(bud), 과수 및 관상수목의 핵자 및 종자 기타 번식용 식물 및 식물성 산물(제6조)을 말하며, 목초종자, 채소종자, 화훼종자, 화단용 식물, 기타 초본식물, 구근(bulb), 뿌리(제6조)는 묘목에서 제외된다.

상기 묘목이외의 식물류가 수입됨으로써 유해식물 병충해의 유입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포한다(제5조). 이때는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및 해당 국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전에 공고 및 공청회(public hearing)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에 분포하지 않거나 널리 분포하고 있지 않은 나무, 식물, 과실의 병이나 또는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묘목이나 기타

식물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국가로부터의 수입금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공포함(제7조)한다. 공고과정은 위의 제5조의 내용과 동일하다.

본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규칙(rule), 규정(regulation)을 제정 공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농무성 장관에게 위임(제9조)하였다.

해외검역공고(foreign quarantine notice) 제319.56호(생과실 및 채소류)

① 일반사항

- 미국¹⁾에 없거나 널리 분포하지 않는 과실 및 채소의 과실파리(fruit fly), 외파리, 유해 병해충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기타 해외국가에 존재할 때 이들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과실, 채소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는 경우 이들 해충의 미국내로 유입 우려되는 경우 상가지역으로부터 과실, 채소와 이들의 포장재로 쓰인 식물체의 수입 금지를 선언함

② 과실 및 채소의 껍으로의 수입과 관련한 행정지침

- 다음의 것은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독처리 없이 껍으로 유입가능
 - 보닌제도, Bolcano제도 및 유구열도산의 모든 열채류, 근채류
 - 일본 및 한국산: 파(allium), 아티초크(artichokes), 마나나, bell pepper, 양배추, 당근, 셀러리, 배추, 감귤류(citrus fruits), 가지, 포도, 상치, 멜론, 오크라, 파슬리, 완두, 감, 감자, 대황, 호박류, 핵과 및 인과(pome fruit), string beans, 고구마, 토마토, 순무잎, 순무, 수박
- 기타의 것은 본 공고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③ 과실 및 채소 수입에 대한 제한

- 건조, 경화, 가공된 것은 허가 없이 수입가능
 - 단, 병해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는 안전조치를 따른 후 허가를 받아야 함(필요사항은 공고)
- 별도의 검역규정이나 행정명령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과실, 채소는 다

1) 미국이라 함은 미국대륙, 괌,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및 버진아일랜드를 말한다.

음 조건을 충족할 때 지정된 항을 통하여 수입허가 가능

- 원산지에서 과실파리 및 외파리에 오염되지 않았을 때
- 허가서에서 규정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질 때
- APHIS가 규정한 조건, 절차에 따라 미검역관의 감독하에 소독이 될 수 있을 때

④ 도토리, 밤 수입에 적용되는 조건에 관한 행정지침

- 캐나다 및 멕시코산 이외의 도토리, 밤은 MB소독 조건부로 수입가능

⑤ 냉동과실 채소의 수입을 허가하는 행정지침

- 냉동처리라 함은 급속냉동(quick freezing), sharp freezing 및 냉동팩을 포함
 - 일반적으로 냉동이라 함은 초기에 0°F(-17.8°C) 전후에서 급속냉동 시켜 20°F(-6.6°C)에서 보관 운반하는 것을 말함
- 미국 도착시 검역관이 냉동상태에 있다고 판정하기 전까지는 선박 등으로부터 이동 불가
- 도착지검사에서 20°F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 검역관이 규정하는 안전조치에 따라 선박 등에 대기
 - 미 영역 외로 반출
 - 검역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처분
- 원산지에서 해당물품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냉동처리로도 병해충이 사멸되지 않았다고 검역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불가

⑥ 특정 수입과실 저온처리에 대한 행정지침

- 과실파리, 코드린나방,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허용을 위한 저온처리 지침

⑦ 호주(타즈마니아포함) 및 뉴질랜드산 사과, 배의 수입에 적용하는 조건

- 표본추출 결과에 따라 조건부여
 - Tortricidae가 없는 경우 현지에서의 안전조치가 행해진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가능

- Tortricidae가 있는 경우 : methyl bromide (MB) 훈증

⑧ 특정국가산 포장채배 포도의 훈증법을 규정하는 행정지침

- 다음 국가산 포장채배 포도는 허가서에 기재된 기타조건에 MB훈증 추가
 - 대상국가: 알제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리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시리아, 소말리아
-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국가산 포도는 저온처리 되어야 함

⑨ 일부 유럽국가산 사과, 배의 수입과 관련한 행정지침

- 수입가능 국가
 - 사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에이레, 스웨덴, 스위스, 서독
 - 배: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 현지검역비용 협약
 - 수출국 식물검역소와 APHIS간에 현지검역비용 협약을 맺은 경우만 수출 가능
 - 해당비용: 검역행정비용, 봉급, 여행비용, 임시비용
- 수출국의 책임
 - 개화기와 수확기 사이에 최소한 2회 조사 실시
 - 과수원에서 *Leucoptera manifoliella* 흔적 발견시 해당 과수원산은 선적거부됨
 - 기타 Pear Leaf Blister Moth 등 발견시는 주변 반경 1km내의 기타 과수원을 미 환경보호청에서 승인한 살충제로 소독해야 함
 - 승인된 선과장에서 작업검사
 - 검사물량: 한 팔레트(약 42상자)당 3개의 상자 또는 3개 Bin당 80개의 과실을 조사
 - 유충, 번데기 상태의 *Leucoptera manifoliella* 발견시 선적거부(해당 더미 및 여타분)

해외검역공고 제319.28(묘목, 식물체, 뿌리, 구근, 종자, 기타 식물성 산물)

① 금지대상 품목 및 지역

금지품목	금지사유	금지지역
○ <i>Rutaceae</i> 과의 <i>Aurantioideae</i> , <i>Rutoideae</i> , <i>Toadalioidae</i> 두과의 모든 속, 종, 변종에 속하는 모든 과실, 껍질	감귤궤양병 (<i>Xanthomonas citri</i> Dowson)	동남아시아(인도, 미얀마, 실론, 태국, 인도차이나, 중국 포함), 말레이열도, 필리핀군도, 오세아니아(호주 및 타즈마니아는 제외), 일본 및 부속도서, 대만, 모리셔스, 세일헬레스, 브라질, 파라과이
○ Citrus 속의 모든 종 및 품종의 과실 및 껍질 - 다음의 것 포함 · <i>C. aurantifolia</i> Swingle · <i>C. aurantium</i> L. · <i>C. hystrix</i> DC. · <i>C. limon</i> Burm f. · <i>C. paradisi</i> Macf. · <i>C. reticulata</i> Blanco · <i>C. sinensis</i> Osbeck · <i>Fortunella margarita</i>	Sweet orange scab (<i>Elsinoe australis</i> Bitano and Jeukins)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Citrus 속의 모든 종 및 품종의 과실 및 껍질 - 다음의 것을 포함 · <i>C. aurantifolia</i> Swingle · <i>C. auranticum</i> L. · <i>C. limon</i> Burm. f. · <i>C. medica</i> L. · <i>C. sineusins</i> Osbeck	<i>Cancrosis</i> B (세균병)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단 종자 및 가공된 껍질은 제외

- 종자의 경우는 해외검역공고 319.37호의 규정에 합치되어야 함

② 한국산 온주밀감은 다음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후 미국의 특정지역(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텍사스를 제외한 지역)내로 반입될 수 있음

<안전조치 내용>

- 대미 수출용 온주밀감은 한국검역소가 설정한 궤양병 무병 수출지역에서 생산·포장된 것이어야 함
 - 수출지역에는 온주밀감만 재배
 - 온주밀감 이외의 Citrus속 및 Poncirus속의 과실, 껍질, 식물, 순(bud wood)등 의 유입차단 조치 필요
 - 한·미의 식물병리학자에 의하여 궤양병 무병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함

- 한·미 합동검사 실시
 - 수확전, 수확시: 포장검사
 - 포장시: 선과장에게 과실검사
- 포장전에 과실표면소독처리(미 농무성 규정에 의함)
- 다음방법에 따라 수출지역산임이 확인되어야 함
 - 포장지 및 상자에 미국내의 '반입금지 지역명'을 인쇄
 - 한국 식물검역소의 증명서첨부 : 궤양병이 없음
- 미 도착항에서 미 농무성검역관에 의한 최종검사 실시

③ 기타

- 실험연구용 목적으로 농무성이 수입하는 것은 본 고시 적용에서 배제됨
- 위의 금지품목이라도 꺾음으로는 수입가능
- 상기 수입 가능한 경우에는 해외검역공고 제319.56호에 의한 허가 등의 적용을 받음
- 한국 현지검역에 필요한 제비용은 검역신청자가 지급

2) 검역절차

검역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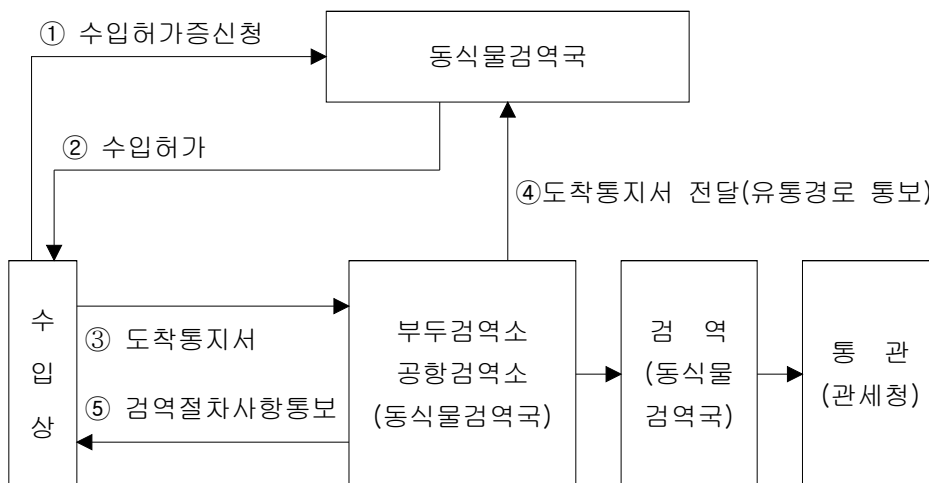


그림 5 식물 검역절차

3) 검역기관

미국에서 동식물의 검역 및 식품위생에 대한 업무는 농무부 산하의 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통관 관련 검사 업무는 911 이후 신설된 국토안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으로 이관되었다.

APHIS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 항만이나 국경선을 통한 외국 농산물의 해충과 질병 유입방지
- 유해 외국 농산물의 국내 반입에 따른 긴급조치 및 해소
- 국내의 가축질병과 식물 해충의 퇴치
- 국내의 동식물 질병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결함 해결
- 과학적인 식물위생 규격 설정에 의한 농산물 수출 촉진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천연자원, 국민보건및 안전에 대한 피해 예방
- 생명공학 및 유전자 조작기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

APHIS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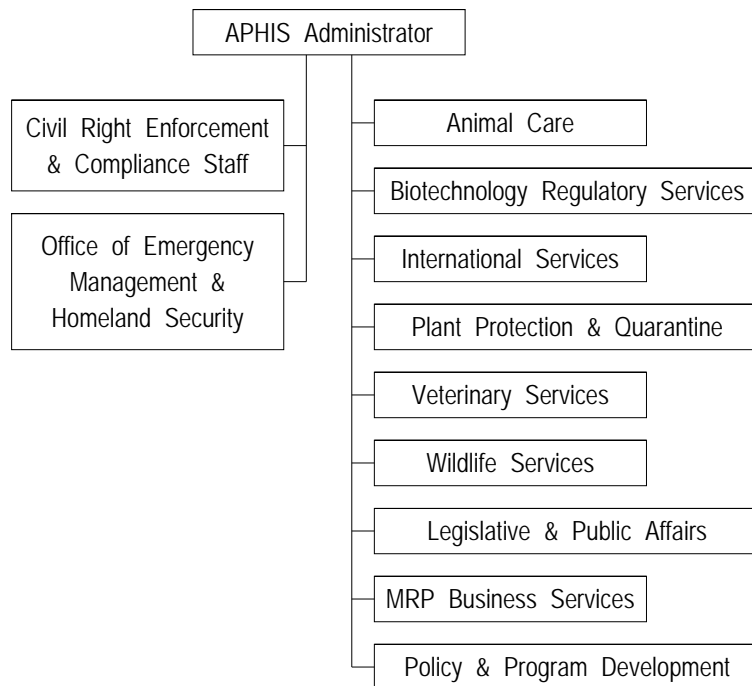


그림 6 미국 APHIS의 조직

APHIS 부서별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 Animal Care(AC)
 - 동물의 인도적 취급에 대한 표준 설정
 - 연구, 교육 및 협력을 통하여 이들 표준의 이행
- Biotechnology Regulatory Services(BRS)
 - 과학에 근거한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의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농업과 자연 보호
- International Service and Trade Support Team(IS/TST)
 - 미국의 농업보호를 위한 미국 외에서의 업무 및 농업무역 강화
 - 관련 외국과의 정보망 구축, 기술정보 교환 및 자료 제공
 - 미국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규제사항에 대한 외국기관과의 협정체결 및 운영관리 협의
- Plant Protection & Quarantine(PPQ)
 - 세계 각국으로 부터의 가축질병 및 식물해충의 유입방지
 - 공항 및 항만 등에서 여행객의 화물검사
 -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시 위생검사 증명서 발급 등
- Veterinary Service(VS)
 - 수입 가축 및 가공품의 검사를 통한 국내 가축의 건강보호
 - 수출되는 가축 및 가공품의 위생검사 증명서 발급 등
- Wildlife Service(WS)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천연자원의 훼손 방지
 - 희귀동물에 대한 보호
 - 야생 조류 및 동물에 대한 보호 등
- Civil Rights Enforcement and Compliance(CREC)
 - 모든 임직원과 외부에서 서비스 받는 민원인에 대한 지도력, 관리, 기술적 지원, 지침 등을 제공
- Legislative and Public Affairs(LPA)
 - APHIS를 위한 법률안 및 공공 업무 개발
 - 각종 공공자료의 가공 및 제공 등

- 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Business Services (MRPBS)
 -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AMS), the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APHIS), and the 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GIPSA)의 세 기구의 관리와 운영에 자원을 제공
-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and Homeland Security
 - 긴급사항과 국토안보에 대한 APHIS의 역량을 조정
- 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PPD)
 - APHIS에 관한 정책개발, 규칙제정, 정책분석 및 평가
 - 해충관리 정책에 관한 미생물적 위험요소 규정제정 및 관리
 - 환경정책에 관한 법규관리 및 요소 분석 등

4)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규정

USDA의 수입허가 없이 수입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Cannonball fruit, 코코아 야자열매(껍질 혹은 즙액이 없는 것), Corn smut galls(소비용의 신선한 것 또는 냉동된 것), *Cyperus corm*(방동사니속), 백합구근, Maguey잎, 버섯(신선한 것), 땅콩(생것, 단 중국, 필리핀, 태국으로부터 금지된 것은 제외), St Johnsbread, 타마린드 콩 꼬투리, 송로버섯, Water chestnut(마름), waternut
 - ※ 건조, 경화 및 가공 처리된 과일 및 채소류

USDA의 수입허가 후 수입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우엉뿌리, 마늘구경(건조, 상부 없는 것), 생강뿌리, 연뿌리, 호박잎, 무우뿌리(상부 없는 것), Sand pear(동양배: 현지검역 조건), 참깨잎, 시금치, 참마(MB훈증 조건), 취나물(잎, 줄기), 온주밀감(현지검역조건), 밤(MB훈증조건), 사과(저온+MB훈증조건), 토란뿌리(단, Guam제외), 딸기열매(단, 9.15일 이후 다음해 5.31일까지 반입되는 것에 한함), 고들빼기의 잎, 줄기, 뿌리, 더덕(뿌리), 도라지(뿌리), 쪽갓 등 국화속 식물, 가지, 참다래, 상치(잎), 쪽양파(구근), 두릅순, 들깨잎, 냉이(잎, 줄기), 근대(잎), 양젓냉이(잎, 줄기), 감(2003. 6. 25 수입확정안 공고)
 - ※ 냉동과일 및 냉동채소(모든 나라로부터 수입가능)

USDA의 수입허가 후 Guam 및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로 수입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Allium속(파, 마늘 등), 아티초크(영경귀과), 바나나의 과실과 잎, 깍지콩 (Bean, string : 꼬투리 혹은 껍질있는 것), bell pepper(피망), 양배추, 당근, 셀러리, 근대잎, 배추, 국화속식물의 잎과 줄기(쑥갓, 제충국 등), 감귤류 (citrus), 박 식물(cucurbit), 가지, 포도, 상추, Marsh mallow(양아욱)의 잎, 오크라(닥풀속), 파슬리, 완두콩(꼬투리 혹은 껍질이 있는 것), 후추잎, 들깨잎, 인과류의 과실(사과, 배 등), 감자, 대황, 핵과류의 과실, 고구마, 토마토, 순무의 잎, 줄기 및 뿌리, 제2)항 및 제4)항의 식물 중 '밤, '마'(수입 조건으로 소독처리를 요하는 과실 및 채소)를 제외한 식물

USDA의 수입허가 후 하와이 Honolulu로만 수출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타로(토란, 상부 없는 것), Sand pear(*Pyrus pyrifolia*)

한국산 수입제한품목 진행상황(2003. 7 현재)은 다음과 같다.

① 제주감귤

현 황	진 행 상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nt Quarantine Act of 1912에 의거, 감귤류 암종병의 미국내 전파 방지를 위해 한국산 감귤류의 미국 본토 수입 금지 ○ 감귤류 예외조항인 7CFR 319.28에 의해 제주산 감귤(Unshu oranges)은 재배환경, 검역, 포장 등 특정 조건 준수 시 본토의 경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텍사스, 애리조나 이외 전지역 수입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7.11 미농무부 서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병해충 위험경감 방안 협의 후 작업계획 작성, 제안규정을 공고하기 위한 절차개시, 병충해 위험평가(PRA) 종료 ○ 2002. 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생산지 수입허용 관련 PRA 초안 관보게재 ○ 2003.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수렴 마감 - 현재 수렴된 여론 검토중

② 후지사과

현 황	진 행 상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8월 한국산후지사과수입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온+MB훈증조건부” - 저온처리: 1.1도(섭씨)에서 40일간 - MB훈증: 48g/m/10도/12시간 ○ 상기요건은 훈증 시설 미비 등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수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12 한·미양국간 한국산 사과 수입 요건 작업계획 개정초안합의 ○ 2000. 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허용 안 관보게재 ○ 2000.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수렴 기간 만료 ○ 2000. 8.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수렴기간 연장 공고(10.23) - 미 사과협회 등 관련업계의 여론수렴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고 해당 단체 등은 의회를 통한 로비활동을 전개 - 미국 내 반대여론에 부딪쳐 최종 규정을 공고치 못하는 상황임

③ 포도

현 황	진 행 상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본토 수입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DA 수입 허가 후 Guam 및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로 수입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5월 수입허용 요청 ○ 98. 2월 포도애타개나방등 4종의 해충에 대한 추가자료 미국측에 제공 ○ 2000.10월 미국측의 한국산 포도에 대한 PRA 결과접수 ○ PRA관련 실행가능한 관리방안을 미측에 제안 ○ 현재 미국측 PRA는 완료 직전 단계인 Country Consultation

④ 밤

현 황	진 행 상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증조건 수입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한국, 미국)훈증소독으로 인한 상품성이 급격히 하락하여 유통상에 문제점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밤 검역 면제요청(20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미국측 입장 - 차선책으로 미국인 현지 검역시 미국내 검역면제가 가능하다는 통보(2000.6) - 2000.10월 미 검역관초청 공주,부여등 중부단지 검역실시 및 인증서발부 ○ 2001 국내에서 미 검역관에 의해 인증서가 발부된 경우 미지역 훈증면제

⑤ 박과류

현 황	진 행 상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본토 수입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DA 수입허가후 Guam 및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로 수입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10월 : 수박, 호박(squash), 오이, 참외 PRA 완료 ○ 2002년 25-27일 : 하와이 한미식물검역회의에서 2003년산 박과류의 대미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미국측 규정개정 합의 ○ 2003년 7월 현재 입법안 초안 준비 중

⑥ 기타 식물병해충위험평가(PRA) 단계 작물

- PRA의 단계
 - Pending: PRA 요청서 접수단계
 - Active: 분석가나 관계자의 분석 신청 단계
 - Country Consultation: PRA 검역문제관리소로 이관 및 상대국과 문서공유
 - Completed: 결과 관보게재
- Pending: 품목 없음
- Active
 - Apple (*Malus domestica*)
 - Chive-Wild (*Allium monanthum*)
 - Dropwort (*Oenanthe javanica*)
 - Garlic chives (*Allium sativum*)
 - Paprika (*Capsicum annuum*)
 - Pepper-Sweet (*Capsicum frutescens*)
 - Pepper (*Capsicum annuum*)
- Country Consultation
 - Cherry Tomato (*Lycopersicon esculentum*)
 - Grapes (*Vitis* spp.)
- Completed
 - Persimmon (*Diospyros kaki*): 2003. 6. 25 수입허용안 확정 공고
 - Unshu Orange (*Citrus unshiu*)

□ 신선과일의 수입요건

① 배

- 수출단지 지정 및 승인이 필요
- 승인된 봉지로 씌운 후 재배되어야 함
- 재배지 검사 실시
 - 봉지 씌운 직후: 한국 식물검역관 단독검사
 - 수확기: 한국과 미국의 식물검역관 공동검사
- 수확된 과실에 대한 한·미 식물검역관의 합동검사 실시 후 한국의 식물검역증 및 미국의 대외식물검역증이 첨부되어야 함

표 8 한국산 배 대미 수출검역 절차 및 내용

검역구분	내 용 요약
수출재배 단지확정	○ 재배단지 충족조건 - 타식물 격리, 지역표식, 병충해방제 실시 및 모니터링 - 신규 후보재배단지는 수출 계절 전 미국 APHIS가 현지 검사
재배단지승인	○ 생산자가 검사신청서를 관할 식검 출장소에 제출 - 검사일 30일전, 신청자는 재배지역에 표찰을 세워야 함
검사시기, 방법	○ 검사 시기는 과실봉지를 씌운 직후와 수확전에 함 - 봉지씌운 직후 검사: 국립 식물검사소 - 수확 전 검사: 국립 식물검사소와 APHIS 합동검사 ○ 재배지 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 식검
선과장검사	○ 식물병해충, 포장상자, 재배단지외 지역산 과실 혼합 여부 등에 관한 검사 실시 ○ 생산자는 선과장 지도, 평면도, 운영계획을 협력기관(농협)을 통해 식검과 APHIS에 제출 ○ 식검과 APHIS 공동 검사 실시 - 선과라인 더미당 6% 무작위 추출검사 ○ 수출선적상자에는 대미 수출승인표시가 되어야 함
검역증발급	○ 국립식물검역소는 적재선박별로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 APHIS는 대외지역 식물검역증 발급
통관항검사	○ 미국의 통관항에서는 증명서의 적절한 기재여부, 포장상자의 적절한 표시 여부 등을 검사

- 미국 수출단지 승인요건
 - 승인된 과수원은 수출전에 미국 검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30ha 이상으로 집단화 되고 200톤이상 수출이 가능해야 함
 -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함
- 미국의 규제대상 검역병해충(23종)
 - 애모무늬잎말이나방, 배꽃바구미, 콩가루벌레, 아세아잎말이나방, 감나무, 잎말이나방, 잎사과잎말이나방,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배명나방, 버들가지깍지벌레, 애기잎말이나방, 복숭아큰나방, *Myelois* spp.(명나방과), 갈색잎말이나방, 온실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spp.(가루 깍지벌레과), 복숭아거위벌레, 먼지응애, 벗나무응애, 검은무늬명, 잿빛무늬명, 윤문명

② 단감

- 2003. 6. 25 수입허용 확정안 공고
- 한국 식물검역관의 감 생산지 병해충 검사
- 수확후 및 수출품의 포장 전 병해충 검사 후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미 항구 도착 후 통관전 검사

③ 사과

- 한국에서 1.1℃에서 40일간 저온처리 후 미국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MB훈증(48g/m³/10℃ 이상/12시간 등)처리하여야함
- 한국의 식물검역소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을 첨부해야함

④ 감귤

- 수출단지 지정 및 승인이 필요
- 한·미 식물검역관에 의한 공동 재배지검사 실시
 - 낙화 후 검사는 신규지역 지정 시에만 공동검사
- 생육기간 중 감귤퀘양병 검정을 위한 박테리오파아지테스트(bacteriophage test)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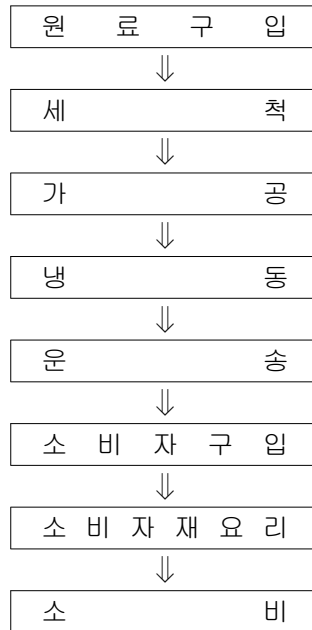
- 수확된 과실에 대한 한·미 식물검역관의 합동검사 실시
- 위생증 부기사항: 여기 선적된 한국산 과실은 감귤퀘양병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믿어지며, 미연방법규(CFR)319.28조 및 319.56조에 APHIS측이 명시한 모든 요건에 부합됨
- 미국 수출단지 승인요건
 - 온주밀감 이외의 다른 감귤나무가 없어야 함
 - 감귤퀘양병에 감염된 나무가 없어야 함
 - 온주밀감 대목 뿌리에서 뺀어나온 탱자속 식물체가 없어야 함
- 미국의 규제대상 검역병해충
 - 병원균(2종) : 감귤퀘양병, 흑반병
 - 해충(85종) : 각지벌레류(온실가루, 화살, 루비, 뽕밀), 진딧물류(꿀소리, 붉나무소리), 노린재류(풀, 갈색날개, 썩덩나무), 총채벌레(대만, 중국관, 싸리), 나방류(꿀굴, 왕담배, 차잎말이, 거세미, 밤, 우묵밤), 기타해충 등

5) HACCP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는 1960년 초 미국 NASA가 식품회사와 협조하여 우주선에 공급할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1997년 12월부터 미국 FDA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실행을 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요임무

- 미국 FDA에서는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모든 업체들이 자체 내에 HACCP 팀을 만들어 FDA에서 권장하는 HACCP 계획을 준수하기를 권장
- 업체내의 HACCP팀의 주임무는 아래와 같음
 - ① 각 업체에서 생산하는 주 품목에 따라 생산과정을 나타내는 도표 작성
 - ② 각 단계마다 위험요소(hazards)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위험 요소인지를 판단하여 위험 요소 목록을 작성함



③ 각 위험 요소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열거함.

1.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
2. 그 해결책의 담당자가 누구일 것이며 구체적인 해결순서는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열거 함.
3.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
4. 위험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점검 스케줄과 담당자
5. 정기 점검에 쓰일 점검방법
6. 담당자가 아닌 제 3자의 재확인 절차

④ 이러한 플랜이 제 때에 잘 지켜지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전체 프로그램 점검시기와 점검방법, 점검담당자를 선정한다. 이 전체 점검은 최소한 일년에 한번 실시되어야 함

⑤ 위에 해당되는 모든 임무는 자세하게 문서화하여 업체 내에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FDA에서는 각 업체들이 HACCP플랜뿐 아니라 그에 관련되는 모든 검사보고서나 자료들을 다 보관하기를 요구함.

⑥ 지나간 기록들을 다 보관하고 있어야 함. HACCP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FDA에서 검사를 요청할 경우 업체는 모든 해당서류를 다 제시할 수 있어야 함.

⑦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서류가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3.2.3 중국

수출입상품검사부서(이하 中國商檢部署라 약칭함)를 설립하여 전국 수출입 상품 검사업무를 주관 한다. 국가상검부서가 각지에 설치한 수출입상품검사 기구(이하 상검기구라 약칭함)는 관할지역의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관리한다.(2002년 4월 28일 개정)

1) 수입상품검사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상품검사종류표(이하 종류표)에 규정되어 있거나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하여 상품검사기구의 검사를 거쳐야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상품검사부서에서 수입상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류표에 포함된 상품은 모두 18종의 HS(Harmonized System)코드로 2,000여개이며, 종류표에 포함된 모든 수출입상품은 수출입통관 수속 전에 반드시 검사기구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수출입 물품, 비매용 전시품, 진열품, 보세물품, 수출용원자재, 샘플 또는 선물용, 면세품 및 기타 비교역성 물품은 별도로 규정하는 검사이외에 법정 상품검사는 면제하고 있다.

종류표에 포함된 수입상품의 수입자는 반드시 하역항 또는 도착지의 상품 검사기구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관은 상품검사기구가 해관 신고서에 날인한 '등록접수필' 인장에 근거 상품검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수입상품의 등록 수속후 수입자는 반드시 계약서 약정한 또는 상품검사기구가 규정한 검사지점, 시간 내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품검사기구에 검사 신청 하여야 한다.

수출입 상품검사를 실시한 상품이 만약 국가가 규정한 기타 관리통제, 예를 들어 허가증관리, 동식물검역, 식품검역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수출입물품의 통과시 반드시 관련 수출입 수속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상품중 국가가 규정한 수하인이나 송하인이 신청하고 국가상검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으면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수출입상품 의무검사실시라 함은 목록에 열거한 수출입상품의 국가기술규범화 강제성요구 합격여부를 확인하는 평가활동을 말한다. 합격평가절차에는 시료채취·검사, 평가·검증·합격보증, 등록·인가·비준 및 이들의 제반 조합을 포함한다.

수입상품의 검사는 수입상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통관지 상검기구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은 상검기구가 제시한 화물통관증명에 의하여 통관시킨다.

수입상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상검기구가 지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서가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필하여 검사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입상품을 제외한 수입상품 수하인은 수입상품의 품질이 불합격이거나 파손된 것을 발견하여 상검기구의 클레임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검기구에 검사를 신고하고 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수입상품과 대형의 플랜트설비에 대해서는 수하인은 대외무역계약 약정에 근거하여 수출국에서 선적전의 예비검사, 제조 감독 또는 선적감독을 약정하고 주관부서는 감독을 보장하여야 한다. 상검기구는 필요에 따라 검사 직원을 파견하여 검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고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수입상품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상검기구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화물가치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가짜를 혼합했거나 가짜를 진짜로 사칭하거나 저질품을 우량품으로 사칭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또는 불합격 수출입상품을 합격 수출입상품으로 사칭하는 경우 상검기구에서 수입 또는 수출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화물가치금액의 5%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출입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범위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종류표에 열거된 수출·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 부패하기 쉬운 식품류 및 냉동물품을 적재하는 선실, 컨테이너 등 운반 도구에 대한 적부 검사
- 상검기구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의 내용에는 상품의 품질, 규격, 수량, 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과 안전 및 위생에 대한 검사가 포함한다.

법정검사대상 수입물품이 도착하면 화물수취인은 하역항구(공항) 또는 도착 정류장의 상검기구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상검기구가 직하목록상에 “등기필”인(印)을 날인하여야만 세관은 그 ‘등기필’인을 근거로 통관시킨다.

수입계약서 또는 운송계약서 상에 수입물품의 검사지점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지점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지점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물품 하역항구(공항), 도착 정류장 또는 상검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벌크화물,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을 하역할 때 수량 또는 중량이 부족하거나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동 물품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하역항구(공항) 또는 도착 정류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화물수취인은 법정 수입검사 물품을 등록한 후 반드시 규정된 검사지점과 기한 내에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 등 필요한 증거서류를 지참하고 상검기구에 수입검사를 신청한 후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필하지 않은 물품은 판매 또는 사용될 수 없다.

상검기구의 검사 또는 추출검사 결과 불합격되어 상대방에게 이미 클레임을 제기해 놓은 물품으로서 교환 또는 반환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수취인은 일정 수량의 실물 또는 견본을 보류하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물품의 교환 또는 반환을 요구한 물품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하며 클레임이 종결되기 전까지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하역할 때 수입된 물품이 파손되어 있거나 수량 또는 중량의 부족을 발견하여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수취인은 신속히 그 항구에 소재하고 있는 상검기구에 검사증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2) 동·식물검역

중국의 검역제도는 '96년말까지 수출입상품검사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나 '97년 1월 1일부터는 국무원령으로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가 도입되어 모든 수입 동식물과 그 수송에 관련된 화물과 물품에 대해 반드시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전국 입출국 동식물 검역업무를 주관한다. 중

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국(이하 검역국으로 약칭함)은 전국 입출국 동식물 검역업무에 관해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검역신청시기는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관련제품 또는 각종 가축, 짐승 및 그 정액, 태반, 수정란 등은 입국 30일전에, 기타 동물을 수입할 때에는 입국 15일전에,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식물은 입국 7일전에 검역신청 하여야 한다.

동·식물 검역법에 따르면 동물, 동물제품, 식물, 식물제품, 기타 검역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물은 사육, 야생의 살아있는 동물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가축, 가금, 짐승, 뱀, 거북이, 물고기, 새우, 게, 조개, 누에, 벌 등이 있다. 동물제품은 동물이 아직 가공을 거치지 않았거나 가공을 거쳤지만 여전히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생피(生皮), 털류, 육류, 내장기관, 유지, 동물, 수산물, 우유제품, 가금알류, 혈액, 정액, 뼈, 발굽, 뿔 등이 있다.

식물은 재배식물, 야생식물 및 그 종자, 모종 및 기타 번식자료 등을 말한다. 식물제품은 식물이 아직 가공을 거치지 않았거나 가공을 거쳤지만 여전히 병해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곡물, 두류, 면화, 마류, 담배잎, 씨, 마른 과일, 채소, 과일, 생약재, 목재, 사료 등이 있다.

기타 검역물은 동물의 백신, 혈청, 진단액, 동식물성 폐기물 등을 말한다.

수입 금지품의 검역 심사는 국가 동식물 검역국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의 검역 심사는 식물검역조례에 규정된 기구에서 책임진다. 수입 금지품의 검역 심사는 국가 동식물 검역국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의 검역 심사는 식물검역조례에 규정된 기구에서 책임진다.

검역 심사 수속은 무역 계약 혹은 협의서 합의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식물 종자혹은 종묘 및 기타 번식 재료의 수입 시에는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하여 검역 심사 수속을 거쳐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사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휴대인이나 발송인이 해안에서 보충 검역 거쳐 검역합격 후 입국이 가능하다.

동물의 중국 통과시 화주 혹은 대리인은 반드시 사전에 국가 동식물 검역

국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국 혹은 지역 정부의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동시에 수입국 혹은 지역 정부의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동식물 입국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 동식물 검역국은 심사 동의 후 '동물 통과 허가증'을 발행한다.

금지수입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금지수출입 특수 허가 검역 심사 수속을 하여야 한다. 화주·소유주 혹은 대리인은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수량·용도·수입 후 방역 조치를 설명하여야 한다. 동시에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이 서명한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동식물과 이의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의 수입시 화주 혹은 대리인은 수입 전 혹은 수입과 동시에 수입하는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검사를 보고한다. 세관 검사 관리국 검역의 변경이나 도착지점 지정 시에는 화주 혹은 대리인은 관련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 이전 화물에 대해서는 화주 혹은 대리인은 수입시 수입되는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보고하며, 지정 운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지정 운수 지점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검사를 보고한다.

수입농산물 대한 상품검사는 동식물검역국에서 동일하게 주관한다.

- 과일에 대한 식물검역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금지국가에서 제외되어 PRA(pest risk assessment)등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 수입수산물은 동식물검역발행통지서와 식품검역합격증명서를 받아야 함

중국은 동식물검역법상의 검역제도와 농업부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휴대, 우편으로 수입 금지된 동물, 동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목록과 수입금지 식품품목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식량 및 농약의 수입은 국가계획위원회가 권한을 부여한 수입등록 기관에 의해 서명 발급되는 특정상품 수입등록 증명인 수입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중국정부는 '94년 4월 13일 '특정상품 수입자동등록 잠정조치'를 제정하여 대상품목에 대해 자국내 수요처가 확정되고 수입허가지역내에서 수입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수입등록을 허가해 줌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의 대상품목은 15종 449개 품목이며 곡물, 주류, 식물유, 과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일은 수입허가 관리대상품목은 아니고 '94년 수입할당 대상품목에서도 제외되었으나 특정상품자동등록관리제도를 통해 수입을 계속 규제하고 있다. 설탕, 소맥, 옥수수, 쌀 등 주요농산물은 수입허가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있다. 곡물은 비 쿼터 수입허가 관리품목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상품등기 증명을 발급 받은 후 다시 이 증서를 근거로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2001년부터 침엽수포장에 대해 수출전에 열처리를 실시하고, 처리한 증명서를 식물방역소가 교부하는 합격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동물검역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제1장 제4조에 따라 국경동식물검역기관은 검역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승선, 승차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음
- 항구, 공항, 기차역, 우체국 및 검역물 저장, 가공, 양식, 재배장소에 진입하여 검역을 실시 후 규정에 따라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음
- 검역상 필요할 경우 관련 생산, 창고 등 장소에 진입하여 전염병 상황에 대해 검사, 검역 감독 관리를 진행할 수 있음
- 검역물품 관련 운행일지, 선적서류, 계약서, 상품송장 및 기타 증명 서류의 열람, 복사 및 발취를 할 수 있음

수입동물이 검역에 합격하였을 경우 동식물검역기관은 격리검역기한 만료시 그 날로부터 화주 또는 대리인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 검역 발행통지서를 발급 후 통관한다. 가축의 품종이 많을 경우에는 동물격리검역장소에서 45일간 격리검역을 실시하며, 기타 동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30일간 격리검역을 실시한다. 수입동물이 검역을 거쳐 합격되지 않았을 경우 동식물검역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처리 통지서를 발급하고 아래와 같은 처리를 하며 또한 국가동식물검역기관에 통보한다.

- 1류 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된 동물이 검출되었을 경우 同行동물도 같이 반송되거나 전부 포살 또는 시체를 소멸시킴
- 2류 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된 동물이 검출되었을 경우 병에 걸린 동물

은 반송되거나 포살 및 시체를 소멸시킴

- 2류 전염병, 기생충병 이외의 기타 전염병, 기생충병이 검출되었을 경우 국가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그 위험도에 따라 대응 처리함

1류 전염병과 2류 전염병은 중국 농업부가 '92년 6월 8일 공포한 국내반입 동물의 1류 전염병, 2류 전염병 및 기생충병 목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1류 전염병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돼지수포병, 우역, 탄설병, 말콜레라, 우폐역, 오리콜레라, 말콜레라, 닭콜레라 등 15종류로 구분됨
- 2류 전염병은 탄저병, 광견병, 결핵, 노루유행성출혈열 등 97종류에 달함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처리 통지서가 발급되면 화주 혹은 그 대리인은 즉시 동식물 검역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동식물검역기관은 규정 혹은 실제지출에 따라 화주 혹은 그 대리인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한다. 처리비용에는 동물포살비, 동물해부검사비용, 동물시체 외부포장비, 소독비(장소사용료, 운송공구, 포장물 등), 운송비(인원, 차량), 시체 처리비용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수입된 동물제품이 검역에 합격되었을 경우 동식물검역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통행 통지서를 발급하고 화주 및 그 대리인은 이 증명서를 근거로 세관에 신청하여 수입수속을 끝낸 후 사용(가공)할 수 있다.

수입동물산품이 검역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동식물 검역기관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훈증, 소독, 살균을 거쳐 수입할 수 있을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의 가공소독 처리를 감독하고 합격 후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 통행통지서를 발급하여 통관시킴
- 소독살균처리를 진행할 수 없거나 소독살균처리를 해도 합격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처리 통지서를 발급하고 화주 및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반송처리하게 하며, 반송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폐기 처리됨

축산물인 경우 동식물검역통관증 이외에 식품수입검사증이 있어야 하며 검사기준은 동식물검역과 식품수입검사기준에 따른다.

식물검역

수입시 공항, 부두, 기차역에서 탑승, 승선, 승차하여 검역을 진행하는데 적재물품의 선창 혹은 차량 적재함 주변의 구석 및 포장물, 깔개, 잔여물 등 해충이 쉽게 잠복, 은신하는 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물품저장창고 및 장소를 검사하고 물품표면, 더미, 주위환경 및 포장외부에 해충 및 해충배설물, 분비물, 탈피·탈각, 충란, 즙 등 해로운 흔적이 있는가를 주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여객이 휴대한 식물 및 식물제품을 검사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장검사를 위주로 하고 해충유무에 대해 집중검사를 진행한다. 우선 식물 및 식물제품의 외부포장을 검사한 후 내부검사를 하며 위험성 병·해충, 잡초 또는 기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 검역에 합격된다.

검역처리는 수출입식물, 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적재용기, 포장물과 운송수단 및 차량, 전용 운송공구, 격리검역장소, 적재장소, 창고와 가공장소의 불합격에 대해 방제, 보호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병해충의 국경진출입을 금지한다.

수출입식물, 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통해 위험성 병해충, 잡초를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국경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처리 통지서를 발급하고 화주 혹은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유해제거, 반송 혹은 폐기처리를 하게 하며 유해제거 처리를 거쳐 합격된 물품은 수출입을 허가한다. 검역처리를 거친 후에도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출입을 불허하며 원천봉쇄 보관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지 못함. 현장에서 위험성 해충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농약을 뿌려 살포 방역해야 한다.

유해제거처리의 방법으로는 훈증, 소독, 냉처리, 열처리 등이 있으며, 제한 조치에는 항구이전 시 물품하역, 용도전환, 사용범위, 사용시간, 사용지점, 가공방식, 가공조건 등의 제한이 있다.

위법행위

다음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이 5천위안(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검역을 미 보고하거나 법에 의거 검역 심사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검역심사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경우
- 검역 신고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과 실지 제품이 다를 경우

아래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3천위안(元)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국·국경 통과를 하거나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운송도구에서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 독단적으로 목적지 항을 조정하거나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한 격리 장소에서 검역중인 동식물을 처리하는 경우
- 독자적으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포장을 뜯거나 동식물 검역 밀봉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 독자적으로 국경 통과 동물의 시체·배설물·갈래 재료 혹은 기타 폐기물을 버리거나, 운반수단 상의 하수·동식물성 폐기물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처리한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범죄성격이 현저히 경미하여 법에 의거 형벌처벌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중대한 동식물 전염행위를 야기시킨 경우
- 동식물 검역증서·인장·표지·밀봉표식을 위조·변조한 경우

수산물검역제도

수산물의 검역내용과 검역처리는 동식물검역제도와 식품위생검역 제도에 준한다.

3) 수입금지 품목 및 지역

중국 농림수산업의 생산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 중 중대한 식물전염을 초래하고 농림수산업에 심각한 재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련 법률, 법규, 정관을 공포하여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수입금지 품목이란 위험성 유해생물, 위험성 유해생물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매개체 등으로 다음의 것을 포함 하고 있다.

- 동식물 병원체(균종, 독종 등 포함)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 동식물 전염이 유행하는 국가와 지역의 관련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 동물시체
- 토양

이러한 규정중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해서 농업부는 '92년 6월 11일 공포한 휴대, 우편으로 수입금지된 동물, 동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과 '97년 7월 29일 수정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식물검역 수입 금지품목 목록에 의거 집행하고 있다.

<휴대, 우편으로 수입 금지된 동물, 동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

구 분	명 칭
동 물	닭, 오리, 거위, 금계, 부엉이, 비둘기, 메추리, 조류, 토끼, 쥐, 기니피그, 다람쥐, 개구리, 뱀, 거북이, 자라, 도매뱀, 악어, 지렁이, 달팽이, 어류, 새우, 게, 원숭이, 천산갑, 시라소니, 벌, 누에 등
동물제품	정액, 대반, 수정란, 장란, 생육류, 소시지, 햄, 절임육, 훈육, 계란, 수생동물제품, 신선우유, 유락, 크림, 버터, 유정분, 모피류, 강모류, 발굽 각류, 혈액, 혈분, 유지류, 장기류 등
기타검역물	종균, 종충, 세포, 혈청, 동물표본, 동물시체, 동물폐기물 및 병원체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

※ 휴대, 우편을 수입금지된 동물, 동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하여는 검역기관이 허가한 경우나 수출국 또는 지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있으면 통관 가능함

< 중국 식물검역 수입금지 품목목록 >

수입금지품목	금지사유 (위험성 병해충 전염방지)	금지국가 및 지역
옥수수 (<i>Zea mays</i>) 종자	옥수수 세균성 枯萎병균 <i>Erwinia stewartii</i> (E.F.SMITH) DYE	아시아: 베트남, 태국 유럽: 독립국가연합, 폴란드, 스위스, 이태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미주: 캐나다, 미국, 멕시코
대두 (<i>Glycine max</i>) 종자	대두 전염병균 <i>Phytophthora megasperma</i> (D) F. SP. GLYCINEA K. & E.	아시아: 일본 유럽: 영국, 프랑스, 독립국가연합, 독일 미주: 캐나다, 미국 대양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감자 (<i>Solanum tuberosum</i>) 球莖 및 기타 번식용	馬鈴薯黃矮病毒 POTATO YELLOW DWARF VIRUS 馬鈴薯掃頂病毒 POTATO MOP -TOP VIRUS 馬鈴薯金線虫 <i>Globodera rostochiensis</i> (WOLLEN) SKARBILOVICH 馬鈴薯白線虫 <i>Globodera rostochiensis</i> (STONE) MULVEY & STONE 馬鈴薯癌腫病菌 <i>Synchytrium endobioticum</i> (SCHILB) PERCIVAL	아시아: 일본, 인도, 파키스탄, 레바논, 네팔, 이스라엘, 미얀마 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립국가연 합,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 리아, 핀란드,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프랑 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아프리카: 튀니지, 알제리, 남아공, 케냐, 탄 자니아, 짐바브웨 미주: 캐나다, 미국,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 엘라,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 르, 볼리비아, 칠레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榆屬 (<i>Ulmus</i> SPP.) 苗, 插條	榆枯萎病菌 <i>Ceratocystis ulmi</i> (BUISMAN) MOREALL	아시아: 인도, 이란, 터키 유럽: 각국 미주: 캐나다
松屬 (<i>Pinus</i> SPP.) 苗, 接穗	松材線虫 <i>Bursaphelenchus xylophilus</i> (STEINE & BUHRER) NCKLE 松突圓蚧 <i>Hemiberlesia pitysoiphila</i> TAKAGI	아시아: 북한, 일본, 홍콩, 마카오 유럽: 프랑스 미주: 미국, 캐나다
고무 (<i>Hevea</i> SPP.) 芽, 苗, 씨	고무 남미 葉疫病菌 <i>Microcyclus ulet</i> (P.HENN.) VON ARX	미주: 멕시코, 중남미 각국

수입금지품목	금지사유 (위험성 병해충 전염방지)	금지국가 및 지역
담 배 (<i>Nicotiana</i> SPP.) 잎담배 번식재	煙霜梅毒病 <i>Peronospora hyoscyamt</i> DE BARY F. SP. TABACIA(ADAM.) SKALICKY	아시아: 미얀마, 이란, 예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유럽: 각국 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미주: 캐나다,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쿠바, 도미니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대양주: 각국
과일 및 가지, 고추, 토마토	地中海파리 <i>Ceratitis capitata</i> (WIEKEMANN)	아시아: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파키스탄, 이스라엘, 키프로스, 터키 유럽: 헝가리,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몰타,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그리스 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세네갈, BURKINA FASO, 말리, 기니, 시에라리온, 리비아, 가나, 베닌, 니제르, 나이지리아, 토나, 카메룬,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루안다, 부룬디, 자이르, 앙골라,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레위니옹, 짐바브웨,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미주: 미국(하와이 포함),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대양주: 호주
소맥(상품)	小麥矮腥黑穗病菌 <i>Tilletia controversa</i> KUEHN 小麥印度腥黑穗病菌 <i>Tilletia indica</i> MITRA	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네팔, 이란, 이라크,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독립국가연합,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알바니아, 유고,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아프리카: 리비아, 알제리 미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미국(와싱턴, 마이애미, 몬테나, 콜로라도, 아이다호, 유타주 등 TILLETIA INDICA MITRA발생지역)
식물병원체(중균, 종독, 해충, 유해생물체 및 기타유전자변환 생물재료)	<중국수출입동식품검역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	모든 국가 또는 지역
토양	상동	모든 국가 또는 지역

4) 검역절차 및 유형

검역법에 의해 중국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매우 광범위하며, 수입검역대상물이 수입금지 품목일지라도 실제 검역을 받지 않고 검역당국의 심사만으로 중국국경을 통과할 수도 있다. 검역검사만으로 국경을 통과하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검역심사의 수속은 무역계약 또는 협의서가 확정되기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수입동물, 동물제품에 대한 현장 검역절차

수입동물, 동물제품이 수입항구에 도착시 항구의 동식물검역기관은 수의 검역직원을 파견 탑승하여 수입동물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의 조짐 여부, 외상과 사망 유무에 대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수입동물, 동물제품의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

서류에는 수입허가증, 검역신청서, 수입국가의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동식물검역증서, 동물건강증서, 수의위생증명서, 동물제품 검역증, 동물제품 수출증서, 훈증소득증서 또는 수출국이나 지역의 수의위생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증명서류 등이 있다.

증명 서류의 선적서류, 계약서, 상업송장, 수입동물, 동식물산품종류, 수량, 산지, 포장, 표시 등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운송인 또는 호송인에게 수입동물의 운송 중 운행노선, 도중정착지 및 동물의 운송수단(선박, 비행기) 이탈현상 유무를 확인한다. 동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의 적재 창고, 상자, 사료, 사육용기, 동물하역인원과 모든 동물을 접촉한 사람도 검사한다.

현장 소독실시대상에는 수입동물, 동물제품 적재에 대한 운송수단, 포장용기, 포장물, 받침재료 등이 있다. 수입한 동물, 동물제품을 받아 가는 운송기구, 적재용기 등 수입동물에 대한 상, 하역 현장의 오염된 곳도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를 거쳐 완전히 합격된 것은 검역요원이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고 화주나 그 대리인은 이 증명서를 근거로 세관에 통관수속을 신청한다. 동식물 검역요원은 수입현장에서 채취한 동물제품 샘플을 실험실에 보내 검사할 수 있으며, 샘플 채취시 중화인민공화국 동물검역 샘플 채취에 의거

기재사항과 서류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샘플의 품종, 수량, 중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화주, 대리인은 이 증명서를 소지하고 세관에 가서 수입통관 수량 확인을 신청한다.

수입시 격리 검역할 필요가 있는 동물은 동식물검역요원의 감독 하에 지정 격리장소에서 격리검역을 실시한다. 수입동물의 현장 검역시 국가에서 규정한 1류전염병 및 기생충병에 감염된 조짐이 보이면 즉시 하역정지, 현장봉쇄를 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검역책임자, 국가동식물검역기관 및 해당 지방정부에 보고하고, 하역 현장에 대해 효과적인 소독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수입동물제품의 현장 검역시 부패, 변질 혹은 심각한 전염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수입을 거부하고 화주 또는 대리인에게 반송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만약 외부포장이 파손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화물담당자 또는 재포장 완료 후 수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절차 및 방법

공항, 부두, 기차역 등 입경처에서 탑승, 승선, 승차하여 검역을 진행하는 데 적재물품의 선창, 차량적재함 주변, 구석진 곳, 포장물, 깔개, 잔여물 등 해충이 쉽게 잠복, 은신할 수 있는 곳에 대해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물품저장창고 또는 장소를 검사하고 물품표면이나 주위환경 및 포장외부에 해충 및 해충배설물, 분비물, 탈피, 탈각, 충란 등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여객이 휴대 또는 우송한 식물 및 식물제품을 검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해충검사를 실시한다.

수입과일은 중국 수입식물검역대상 명단과 식물검역 쌍방협정에서 규정한 검역대상 또는 대외무역 계약에서 규정한 검역대상 병해충 및 잡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과일에 대한 검역은 주로 현장검사 위주로 실시하며, 필요시 일정량의 샘플과 현장검사 시 이상이 발견된 과일을 함께 실험실에 가져가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수입과일을 검역 시 상대방 국가의 전염상황을 파악하여 물품도착 상황을 종합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수입식물에 대한 육안검사

검사물품의 포장 및 박스를 개봉할 경우에는 육안 또는 확대경으로 검역

성 병해충, 잡초씨의 유무를 직접 관찰한다. 접목, 원목, 잎담배, 과실 등에 대해서는 뿌리, 가지, 줄기, 껍질층 내외, 잎, 발아부위와 과실표면, 꽃받침, 과실 줄기 등에 좀구멍, 벌레길, 충영, 충란, 병증, 병반, 종양 및 살아있는 벌레, 병영, 균핵, 잡초씨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면화씨 등에 대해서는 포장천의 내벽, 무명실 표층, 면화씨 이물 등 검역성 해충의 유무를 검사한다.

수입식물에 대한 환목체검사

환목체검사는 서로 다른 체눈 직경의 규격 환목체로 해충을 분리 검출하는 것이다. 곡물, 과립형 건과, 생약재 등 식물산품은 다른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 후 규격 환목체를 이용하여 회전법으로 선별검사하고 쳐서 나온 것과 남아있는 부분 중에서 해충, 균영, 잡초씨, 식물 殘體등을 검사하여 식별분류를 진행하고 필요시 지형관(指形管)에 넣어 실내감정을 한다.

현장샘플검사 및 채취

샘플 채취 건수규정은 다음과 같다.

- 수입과일: 육상운송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트럭의 각 부위 또는 적재도중 수시로 총건수의 1-3%를 채취검사하며, 해상운송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적재 창고별로 총건수의 0.2-3%를 채취·검사
- 씨앗류: 물품 총건수의 5-20% 채취·검사
- 곡물, 유료(油料), 콩류: 총건수의 0.1-5% 채취·검사, 산물포장 물품은 100kg을 한건으로 간주하여 계산
- 면마, 섬유류: 물품 총건수의 1-10% 채취·검사
- 건과, 건조야채, 신선과일, 채소류 : 물량 총건수의 0.2-5% 채취·검사
- 생약재, 잎담배류 : 물량 총건수의 0.5-5% 채취·검사
- 원목, 죽류 : 물량 총건수의 0.5-5% 채취·검사
- 검역항목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일정량의 대표샘플을 채취
 - 대추, 대추야자, 양파, 마늘, 건조야자, 종려나무씨는 2,000-2,500g 채취
 - 땅콩, 옥수수, 대두, 잠두, 강남콩, 피마씨는 1,000-1,500g 채취
 - 벼, 쌀, 밀류, 수수, 녹두, 팥, 면화씨는 1,000g 채취

- 조, 좁쌀, 참깨, 아마씨, 대마씨, 들깨씨, 겨자씨, 유채씨는 500g 채취
- 채소, 목포종자 및 낙엽송, 느릅나무 종자는 100g 채취
- 잎담배, 백양나무, 유칼립투스, 녹나무 등 작은 종자는 10-30g 채취

검역비용 납부요령 및 주의사항

검역신고시 우선 50%의 검역비를 납부하며, 검역신고 후 검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검역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30위안의 취소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미 검역준비가 되었을 경우 검역비 기준 50%를 수취하며 검역을 시작했을 경우 검역비 기준 100%를 수취한다.

검역이 합격된 수출물품에 대해 수입국의 검역요구 변화로 인해 포장을 바꿔야 할 경우 검역유효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검역비를 수취하며, 유효기한내에는 50%의 검역비를 수취한다.

동식물 검역기관에서 비용청구서를 발송한 후 20일 이내에 검역신고 업체 또는 개인은 검역비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매일 미납부한 검역비의 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부가한다.

5) 검역 위법행위 제재조치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국(이하 검역국)은 전국 입출국 동식물검역업무에 관해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96년 10월 22일 설립된 중국수출입검역연구센터의 기본임무는 유관수출입 식품의 법정 검역의무, 위탁검역, 지정검역과 중재검역을 접수 처리하는 것이지만, 수출입 식품의 품질, 영양, 안전, 위생의 검역기술과 검측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유관식품수출입 검역의 업종표준과 국가표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실시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음

- 경고: 경고는 경미한 위법행위를 범한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한 경계인데 비평교육의 역할도 있고 징벌성격도 있음
- 벌금: 벌금은 위법행위가 있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동식물검역의 처벌행위 중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음
- 영업허가증 취소: 등록증, 검역증 또는 동식물 및 동식물제품을 수입 경영할 수 있는 영업허가증을 취소

- 형사처벌: 위법행위가 엄중한 자는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그 책임을 추궁

3.2.4 유럽연합

1) 검역제도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농수산물에는 식물의 위생상태, 식품의 위생,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그리고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유럽연합 대처 강화

유럽연합 회원국의 검역에 관한 최고 중앙기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Food and Veterinary Office이며,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 및 동물의 복지 등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을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 3국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 감독한다. 실제 제품에 대한 검역은 회원국 검역당국에서 담당한다.

식물검역제도

식물의 병충해나 미생물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76년 12월 21일 유럽연합 규정 77/93/EEC에 명시,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식물검역국은 수입되는 식물들의 검사와 병리 유전인자 및 미생물의 발견 및 조절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물은 수출국의 공인 식물검역국의 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이 첨부되어야 하며 이 검역증을 근거로 하여 세관은 수입품의 통관을 허가하며, 수입품의 수취인은 이 사실을 식물검역국에 신고하여 수입검역 시행한다.

수입검역의 목적은 수입된 식물에 병이나 박테리아 등의 잔존여부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병이나 박테리아 등이 발견되는 경우 유해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시행한다.

식물검역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화훼, 구근, 과일, 종자, 묘목, 씨앗, 접목 목재 등이며 식물검역증의 발급에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수출국, 원산지 국가의 공인 식물검역국에서 발행
- 선적전 14일 이내에 발급

-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식어로 기재
- 도장이나 사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이핑할 것
- 식물학명 사용 및 식물원산지 기재
- 검역증명서 사본의 경우 'Copy' 혹은 'Duplicate'라고 스탬프를 하여야 함
- 식물검역국의 도장과 위임자의 이름, 사인 기재
- 삭제부분이 없어야 함

유럽연합내의 보호지역에 수출이 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해당 식물이 보호지역으로 수출된다는 사항 표시하여야 한다.

식물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가 부재인 경우에는 물품을 반송시키거나 수입자와 상의하여 폐기조치, 단, 수입업자는 수출국에 검역증명서를 재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며 재발급 검역증명서에 공식적으로 재검역증명 번호, 날짜 기재, 수출국의 식물검역국에 이에 대한 하자 요인을 통보한다.

동물 및 수산물 검역제도

유럽연합 회원국에 육류 및 수산물을 수출하려면 수출국의 수출업자/작업장은 해당국가의 검역당국에 생산 및 가공처리 과정 공개하여야 한다.

- 수출국의 당국은 검역관련 모든 사항(검역기관의 기능 포함)을 유럽연합 위원회에 보고
- 유럽연합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해당국에 책임자를 파견하여 수출업자/작업장 방문
- 책임자가 보고한 결과를 근거로 일정기간 혹은 영구 수출허가 발급
- 만일 검역제도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유럽연합 위원회는 제3국의 공식적인 검역기관에 검역 위임
- 제3국의 공인 검역기관은 해당국가의 수출업자/작업장이 내부검역을 철저히 시행하는지 감독할 책임 부여
- 또한 이 검역기관은 유럽연합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생산하는 해당국의 수출업자/작업장 리스트를 유럽연합 위원회에 제출
- 이러한 경우 제3국의 수출업자들에게 유럽연합 회원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유럽연합 등록번호 부여

육류의 경우 수출 국가는 유럽연합규정(97/222/EC와 98/246/EC)에 의한 '동물건강위생법' 및 97/569/EC와 98/346/EC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위생법'에 명시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에 한해 유럽연합으로 육류수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업체가 없다.

식품에 대한 검사제도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럽연합 규정(89/397/EEC)에 검역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으며, 이 규정에는 식품의 검사, 첨가제, 비타민 및 미네랄 요구량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검역대상은 생산에 이용된 원재료, 반가공품, 완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청결도, 보관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다.

시료의 분석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인 실험실에서 시행한다.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위생검사 부적합의 경우
 - 발신자에게 환송 조치
 - 검사기관 관리하에 폐기 조치
 - 검사기관 관리하에 제3국으로 방출 조치
- 품질검사 부적합의 경우
 - 발신자에게 환송 조치
 - 검사기관 관리하에 폐기 조치
 - 검사기관 관리하에 제 3국으로 방출 조치
 - 관련업자에 의해 재작업 가능

2) 수산물 검역

유럽연합에서는 국가군을 다음의 4가지로 나누어 구분을 두어 검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2번째 분류에 속하며 비교적 관대한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 유럽경제 구역 국가군: 유럽연합 회원국 외에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가 포함, 이들 국가는 유럽연합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로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것은 유럽연합 내부거래로 간주되며 '99년 1월 1일 부터 위생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 Perfect harmonized 국가군(유럽연합 영구등록 국가군): 유럽연합 위원회에 의해 특별 수입규정이 제정된 국가군으로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파로오제도, 필리핀, 감비아, 가나, 과테말라, 인디아, 인도네시아, 아이보리코스트, 일본,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로코,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페루, 러시아, 세네갈, 싱가포르, 대만, 탄자니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남아공, 한국
- Temporary harmonized 국가군(유럽연합 임시등록 국가군): 해당국가의 관련 기관이 유럽연합에 EU 91/493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보증을 제출한 경우로 유럽연합 영구등록 국가군에 들어가기 직전의 국가들이 해당
· 알제리, 앙골라, 안티구아 및 버뮤다,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베닌, 중국, 코스타리카, 사이프러스, 에리테리아,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가봉, 그린란드, 온두라스, Guinee Conaky, 헝가리, 홍콩, 이란, 이스라엘, 자메이카, 카메룬, 케냐,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말타,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니카라과, 뉴칼레도니아, 우간다,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 뉴기니, 폴란드, 루마니아, 솔로몬제도, 슬로베니아, 스리랑카, 수리남, 토고, 체코, 터키, 베트남, 베네수엘라, 미국, 짐바브웨, 스위스
- Not harmonized 국가군(미등록국가군): '98년 7월 1일 부터 국가군 4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

3) 한국산 농수산물 검역: 중개인을 통한 거래관습으로 인해 한국산 농수산물의 검역시 큰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5 호주

1) 수입허가(Import Permit)

수입제한품목이 수입되기 전에 반드시 호주 세관에서 제시하는 수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제도는 호주정부가 호주의 인간, 동식물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수입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호주의 수입을 관할하는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에서는 수입대상품목에 대한 위해도 관리 분석(Risk Management Analysis, RMA)을 실시하며, 시험결과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하다.

RMA는 수입예상 품목에 대하여 호주의 검역기관인 AQIS가 실시하는 조사방법으로 특정품목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는 1주일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새로운 품목에 대한 조사일 경우에는 12개월에서 15개월이 소요된다. 이기간 동안 AQIS의 담당자는 해당국가(품목의 원산지 등)를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출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RMA조사단계는 다음과 같다.

- ① AQIS에 조사요청/조사수락
- ② AQIS 직원이 품목에 대한 특별 연구 프로그램을 계획
- ③ 위해도 분석 진행: 품목의 원산지 병충해 조사, 수입에 따른 호주의 사람/동식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위생도 조사, 기타 위험률 심층 분석
- ④ 조사결과 및 AQIS의 조언을 책과 인터넷으로 발표
- ⑤ 수입여부 결정

AQIS는 현재 여러 국가의 농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여부에 대해서도 RMA를 실시하고 있다.

2) 검역제도

호주는 해외로부터 질병 및 병충해 도입을 막기 위하여 엄격한 검역규정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대부분의 식품류는 호주내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검역은 Quarantine Act 1908에 의거하여 AQIS가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는 AQIS의 검역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조리는 되었으나 통조림 처리되지 않은 식품은 뉴질랜드로 부터만 수입이 가능하며, 그 외 국가들로부터 수입은 수입허가 과정을 거친 후 가능하다.

수입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사항은 검역기관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망을 통하여 사례별로 알아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검역기관의 웹 사이트 주소²⁾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3) 검역절차 및 제도

검역절차

호주의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물품 반입시 호주 AQIS에 제반 선적서류 제시
- ② AQIS가 요구하는 소정의 양식 작성
- ③ AQIS의 검역관에 의한 검역실시(정밀검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검역관이 지정하는 특정 검역장소로 운반)
- ④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인도
- ⑤ 검역의 결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의 성질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기타방법에 의해 처리됨
- ⑥ 검역이 완료된 경우 검역기관은 확인서류 발급
- ⑦ 검역완료 후 수하인이 7일 이내에 물품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검역기관은 해당 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음

수입제한

AQIS는 특별히 수입금지지역을 정해 놓지 않고 있으나, 국가/지역별로 호주의 국민, 동·식물 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을 정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수입 금지품목이지만 특정품목을 재배, 생산하는 국가와 양국간의 관련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한데, 한국의 배, 필리핀의 망고 등은 호주의 pest risk 협정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산 식품류는 신선과일과 야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수입 전 AQIS의 엄격한 검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2) <http://www.affa.gov.au/>

표 9 품목별 검역제도

품 목	검 역 제 도
Poultry (가금류)	- AQIS에서는 조리된 통조림제품에 특별한 가공조건을 요구하여 왔으나, Bulletin Volume 10에 의하면, 현재 진행중인 마지막 테스트후 가공조건들의 완화가 예상됨 - Cooked uncanned poultry 제품은 뉴질랜드에서만 수입이 가능
Canned Meat Product (캔처리된 고기식품)	- 생선류가 아닌 육류를 5%이상 함유한 식품은 수입시 사전허가가 필요 - AQIS의 승인을 받은 가공공장에서 제조된 상품만 수입이 가능 - 육류는 열처리 되어야 하며, 공인된 밀폐용기에 담아야 함 - 도살된 가축은 도살 전후에 공인된 수의공무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함 - 매 선적분마다 공인된 수의사가 발행한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 소고기 성분의 맛이 함유된 라면 등 면류의 제품은 수입시 사전허가 필요
Dairy Products (낙농제품)	- 모든 유가공 및 유가공 제품을 10%이상 함유한 식품류는 AQIS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수출국을 구제역 발생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Cheese (치즈)	- 치즈는 처리방법에 기준을 두어, 72℃에서 15초간 저온살균하거나, 62℃에서 15초간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 2℃정도의 온도에서 90일 동안 저장해야만 ANZFA의 식품표준코드에 적합한 요건이 됨 - 구제역의 예방접종을 하고, 지난 24개월 동안 구제역의 발병한 사실이 없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제조 후 30일이 지나야 수입이 가능
Fish and Fish Products (어류 및 어류제품)	- 연어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산물에 검역상에 별다른 문제없음
Eggs and Egg Products (달걀 및 달걀함유제품)	- 계란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으며, 계란 함유량이 10%이상인 경우에는 AQIS의 수입허가가 필요
Animal bone (동물의 뼈)	- 동물뼈는 도착후 특별한 처리방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140℃ 온도에서 3시간 이상 열처리 받는 것을 포함함
Fresh Fruit and Vegetable (신선 과일 및 채소)	- 수입시 사전허가 필요 - AQIS의 Risk Management Analysis를 거쳐야 함
Frozen Fruit and Vegetable (냉동 과일 및 채소)	- 컨테이너가 -18℃ 상태로 운송된 제품만 수입가능
Grain (곡물)	- 곡물의 수분함량은 14% 이하여야 하며, 곰팡이 및 상처가 있거나 미성숙한 곡물은 Risk Category로 분류하여 검사함
Nuts (견과류)	- 볶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시 훈증(fumigation)을 실시해야 함
Rice (쌀)	- 청결도 및 Paddy Rice의 검사를 받은 후 수입가능 - 쌀 1Kg당 최대 가능한 Paddy Rice는 5개임
Spices (양념류)	- 소매 포장된 제품의 수입에는 검역검사가 필요 없으나, 벌크상태의 제품은 수입항 도착시 검역필요

4) 수입금지

다음의 병충해를 가지고 있는 식품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 Foot and mouth disease / Rabies / Newcastle disease / Avian influenza / Khapra beetle / Various species of exotic fly / Viral and fungal disease / Mango weevil 등(예: 식물성 생산품)

- 모든 과일과 야채 품목들은 수입 시 허가가 필요하며 AQIS의 RMA를 거쳐야 함
- 사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 배: 전 국가(한국산 배는 Pest Surveillance와 생산지역 관리프로그램을 거친 후, 개화시 AQIS의 조사를 거쳐야하며, 수확시기에 AQIS의 직원이 검역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
- 복숭아: 뉴질랜드산을 제외한 전 국가(한국산은 Pest Risk조사를 거쳐야 함)
- 오렌지: 미국을 제외한 전국가
- 단감: 미국(캘리포니아산에 한함)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국가
- 키위: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국가
- 바나나: 수입금지
- 매실: 뉴질랜드산을 제외한 전 국가
- 양잠: 전국가산에 대해 수입금지
- 땅콩: 경작용(종자용)은 수입금지
- 호프: 종자는 수입금지(가공생산을 위해서만 수입허용)
- 초목류(Plant의 경우): *Narcissus Fly*, *Cenud Musa*, *Xanthomonas campestris*, *Fire Blight*(고사병), *Pear Blight*(배고사병), *Cabbage Butterfly*(배추흰나방), *Pieris Rapae*, *Pseudomonas syringae*, *Corynebacterium flaccumfaciencens*, *Colletotrichum lindemuthianum*, *Mosaic*(모자이크병), *Narcissus Fly*, *Downy Mildew*(노균병), *Wood Wasps*(목재말벌)등의 질병 및 해충의 위험이 있는 식물은 수입금지(예,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계란의 수입은 금지(계란 함유량이 10% 이상인 식품의 경우 AQIS의 수입허가 여부에 따라 수입이 가능)
-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이 발병한 나라의 유제품 및 유가공 제품은 수입금지
-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는 완전 수입금지
- 돼지고기류는 사전에 수입허가가 필요
- 조리되지 않은 연어의 수입은 금지

3.3 WTO사무국의 각국 SPS조치 통보현황 분석

WTO 회원국은 SPS협정 제7조(투명성) 및 부속서 B에 의거하여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조치의 제·개정 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회원국들이 실시한 통보는 2003년 수정, 추신 및 개정을 제외한 통보문은 670건이 있었으며, 이중 긴급 사안에 대한 통보는 80건이었다. 또한 2004년에는 603건에 긴급 사안 162건, 2005년에는 646건에 긴급 사안 91건이 통보되었다³⁾. 2006년에는 12월13일까지(이 장에서 이후로부터는 2006년 이라 함은 1.1일부터 12.13일까지를 말함) 총 1,103건에 긴급 사안은 126건 통보되었다. 이 중 최초로 통보된 통보문은 일반 통보문 757건, 긴급 통보문 102건으로 총 859건이다. 따라서 2003년 이후 연간 6-7백건씩 통보되었으나 금년에는 1,100건이 넘어 급진적으로 통보문 수가 증가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74개 국가가 통보하였으며, 2006년에는 총 149개 WTO 회원국 중 50개국 이 이상을 통보하였다. 전체 통보문(수정, 추신 및 개정을 포함⁴⁾)을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으로 387건을 통보하였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농업용 화합물(각종 농약, 수의약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개별 농업용 화합물의 위해도 평가 및 개별 식품의 최대잔류허용량 결정 등을 별도로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업용 화합물의 안전성 재검토는 EPA의 식품품질법(Food Quality Protection Act)에 따라 10년 기약으로 실시하여 2006.8.3일 종료되었다. EPA는 애초 총 9,721종의 잔류허용량 재평가 계획이었으나 9,637종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3,200종을 취하하였으며, 1,200종을 개정하고, 5,237종에 대하여는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재검토는 15년 간격으로 종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아직 완료하지 못한 평가와 최종 결정되지 않은 화합물에 대한 조치의 결정이 완료되면 향후 상당히 이에 대한 통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전통적으로 유럽연합이 많은 통보를 하였으나, 2006년 브라질과 필리핀, 대만 및 콜롬비아가 2006년에 갑자기 많은 통보를 하였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는 2003, 2004년에 대비하여 2005년 이전 연평균 12건에서 2005년 이후로는 매년 전년대비 약 2-300%증가하였다.

3) 모든 통보문을 포함하는 경우 '03년 855건, '04년 904건, '05년 850건이 통보되었다.

4) 추가 - Addendum(Add.): 개정 - Revision(Rev.): 수정 - Corrigendum (Cor.)

한편 우리나라는 전체 31건 중 추가 7건으로 10위의 통보국이다.

신규 긴급 통보문은 필리핀이 17건을 통보하여 가장 많은 긴급조치를 도입한 국가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케냐(13건), 이집트(10건), 루마니아 및 아랍에미리트(각 9건)의 순으로 많은 긴급 통보를 하였다.

표 10 국가별 WTO SPS위원회 통보문 건수(2006.1.1 ~ 2006.12.13)

순위	국 가	총통보문	신규 통보문			기존 통보문 ¹⁾			총긴급 통보문 ³⁾
			소계	일반통보	긴급통보	추가 ²⁾	개정 ²⁾	수정 ²⁾	
	총 계 ⁴⁾	1,103	859	757	102	224	16	11	126
1	미국	387	293	292	1	91	2	4	2
2	브라질	130	103	103	0	26	1	1	0
3	유럽연합	46	20	20	0	26	0	0	0
4	칠레	45	42	40	2	3	0	1	2
5	캐나다	38	21	21	0	7	10	0	7
6	대만	33	30	30	0	3	1	0	0
6	필리핀	33	19	2	17	14	0	1	25
8	뉴질랜드	32	25	25	0	7	0	0	0
8	콜롬비아	32	18	13	5	14	0	0	6
10	한국	31	24	24	0	7	0	0	3
11	태국	25	19	14	5	6	0	0	5
12	이집트	23	18	8	10	5	0	0	10
13	인도	18	17	16	1	1	0	0	1
14	루마니아	17	16	7	9	0	0	1	10
14	호주	17	12	11	1	4	1	0	2
16	일본	16	16	16	0	0	0	0	0
17	스위스	15	14	14	0	1	0	0	0
18	페루	15	15	9	6	0	0	0	6
19	아르헨티나	13	13	12	1	0	0	0	1
19	케냐	13	13	0	13	0	0	0	13
21	아랍 에미리트	11	9	0	9	0	0	2	10
22	파라과이	9	9	9	0	0	0	0	0
23	과테말라	8	7	5	2	1	0	0	2
23	에콰도르	8	7	3	4	1	0	0	4
25	노르웨이	7	7	5	2	0	0	0	2
25	코스타리카	7	7	6	1	0	0	0	1
27	니카라과	6	6	6	0	0	0	0	0
27	중국	6	4	4	0	2	0	0	0
29	볼리비아	5	4	4	0	0	0	1	0
29	요르단	5	5	2	3	0	0	0	3
29	인도네시아	5	5	5	0	0	0	0	0
29	쿠바	5	5	4	1	0	0	0	1
33	네팔	4	3	2	1	1	0	0	1
33	불가리아	4	4	4	0	0	0	0	0
33	스리랑카	4	4	3	1	0	0	0	1
33	엘살바도르	4	3	2	1	0	1	0	1
33	오만	4	4	4	0	0	0	0	0
38	온두라스	3	3	3	0	0	0	0	0
39	도미니카공화국	2	2	2	0	0	0	0	0
39	몰도바	2	2	2	0	0	0	0	0

순위	국 가	총통보문	신규 통보문			기존 통보문 ¹⁾			총긴급 통보문 ³⁾
			소계	일반통보	긴급통보	추가 ²⁾	개정 ²⁾	수정 ²⁾	
39	스페인	2	2	0	2	0	0	0	2
39	싱가포르	2	2	0	2	0	0	0	2
39	아르메니아	2	2	2	0	0	0	0	0
39	자메이카	2	0	0	0	2	0	0	0
39	파나마	2	2	2	0	0	0	0	0
46	독일	1	0	0	0	1	0	0	0
46	마카오	1	1	0	1	0	0	0	1
46	말레이시아	1	0	0	0	1	0	0	1
46	베냉	1	1	0	1	0	0	0	1
46	홍콩	1	1	1	0	0	0	0	0

- 1) 기존통보문: 신규로 통보되지 않은 모든 일반 및 긴급 통보문으로 문서번호에 별도로 표시된 것임
- 2) 추가 - Addendum(Add.): 개정 - Revision(Rev.): 수정 - Corrigendum (Cor.)
- 3) 신규 및 기존 긴급통보문의 합
- 4) 신규통보문과 기존통보문의 합과 총통보문의 수의 차이는 대만(추가+개정 1건), 미국 (추가+수정 1건), 미국 (추가+개정 2건), 브라질 (추가+개정 1건), 칠레 (추가+수정 1건), 필리핀 (추가+수정 1건)의 7건의 통보문이 각각 산정되었기 때문임

통보문의 분야별로 보면 식품안전 61%, 식물보호 53% 및 국민보호 45%의 순이며, 동물보호 30%, 영토보호의 순이다. 그러나 미국이 농업용 화합물질에 대한 통보시 농약의 경우는 식품안전, 식물보호, 국민보호에 대부분 표시하여 식품안전(90%), 식물보호(88%), 국민보호(89%)로 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동물보호에도 표시하여 왜곡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를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 브라질, 필리핀의 순이었으며, 특히 필리핀은 전체 통보문의 94%를 동물보호에 관하여 통보하였다. 케냐의 경우는 비록 13개의 통보문을 회람하였으나 모두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였다.

표 11 분야별 WTO SPS 통보문의 수(2006.1.1 ~ 2006.12.13)

순위	국 가	통보건수	식품안전(%) ¹⁾	동물보호(%) ¹⁾	식물보호(%) ¹⁾	국민보호(%) ¹⁾	영토보호(%) ¹⁾
	총 계	1,103	675 (61)	329 (30)	580 (53)	494 (45)	97 (9)
1	미국	387	350 (90)	86 (22)	340 (88)	344 (89)	2 (1)
2	브라질	130	61 (47)	34 (26)	49 (38)	23 (18)	37 (28)
3	유럽연합	46	42 (91)	10 (22)	21 (46)	7 (15)	
4	칠레	45	3 (7)	12 (27)	31 (69)		1 (2)
5	캐나다	38	24 (63)	4 (11)	12 (32)	2 (5)	2 (5)
6	대만	33	18 (55)	5 (15)	10 (30)		
6	필리핀	33	6 (18)	31 (94)	1 (3)	3 (9)	1 (3)
8	뉴질랜드	32	6 (19)	9 (28)	22 (69)	5 (16)	5 (16)
8	콜롬비아	32	19 (59)	16 (50)	3 (9)	8 (25)	5 (16)
10	한국	31	19 (61)	4 (13)	11 (35)	3 (10)	
11	태국	25	11 (44)	9 (36)	6 (24)		
12	이집트	23	6 (26)	10 (43)	3 (13)	13 (57)	2 (9)
13	인도	18	13 (72)	1 (6)	7 (39)	4 (22)	5 (28)

순위	국 가	통보건수	식품안전(%) ¹⁾	동물보호(%) ¹⁾	식물보호(%) ¹⁾	국민보호(%) ¹⁾	영토보호(%) ¹⁾
14	루마니아	17	7 (41)	13 (76)		9 (53)	
14	호주	17	6 (35)	4 (24)	8 (47)		1 (6)
16	일본	16	13 (81)	3 (19)	3 (19)		
17	스위스	15	13 (87)	4 (27)		4 (27)	
17	페루	15	1 (7)	7 (47)	7 (47)	1 (7)	
19	아르헨티나	13	3 (23)	3 (23)	7 (54)	2 (15)	
19	케냐	13		13 (100)		13 (100)	
21	아랍 에미리트	11		10 (91)	1 (9)	10 (91)	
22	파라과이	9	4 (44)				5 (56)
23	과테말라	8	6 (75)	3 (38)	2 (25)	5 (63)	5 (63)
23	에콰도르	8	1 (13)	4 (50)	3 (38)	4 (50)	4 (50)
25	노르웨이	7	2 (29)	2 (29)	1 (14)	3 (43)	1 (14)
25	코스타리카	7	4 (57)	2 (29)	3 (43)	5 (71)	2 (29)
27	니카라과	6	1 (17)	3 (50)	2 (33)	4 (67)	2 (33)
27	중국	6	3 (50)		4 (67)	2 (33)	3 (50)
29	볼리비아	5	2 (40)	2 (40)	3 (60)		
29	요르단	5	4 (80)	4 (80)	1 (20)		
29	인도네시아	5	1 (20)	2 (40)	3 (60)	2 (40)	4 (80)
29	쿠바	5	3 (60)	5 (100)		5 (100)	
33	네팔	4	1 (25)	1 (25)	2 (50)	2 (50)	2 (50)
33	불가리아	4	2 (50)	2 (50)	2 (50)	2 (50)	2 (50)
33	스리랑카	4	4 (100)	1 (25)		1 (25)	
33	엘살바도르	4	2 (50)	2 (50)	2 (50)		1 (25)
33	오만	4	2 (50)		1 (25)	1 (25)	
38	혼두라스	3	2 (67)	1 (33)	2 (67)	1 (33)	2 (67)
39	도미니카공화국	2			2 (100)		2 (100)
39	몰도바	2	2 (100)			1 (50)	
39	스페인	2			2 (100)		
39	싱가포르	2		2 (100)			
39	아르메니아	2	2 (100)				
39	자메이카	2	1 (50)	1 (50)	1 (50)		
39	파나마	2		2 (100)	2 (100)	2 (100)	
46	독일	1	1 (100)				
46	마카오	1	1 (100)			1 (100)	
46	말레이시아	1	1 (100)	1 (100)		1 (100)	
46	베냉	1	1 (100)	1 (100)		1 (100)	1 (100)
46	홍콩	1	1 (100)				

1) 통보문의 목적은 통보문 양식 제7항의 표시 또는 사무국에서 매월 통보문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문서에서 확인하였으며, 하나의 통보문이라도 두 곳 이상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계상함, 단 추가, 개정, 수정의 경우에는 내용에서 1개의 목적만을 추정함: 식품안전 - "food safety": 동물보호 - "animal health", 식물보호 - "plant protection": 국민보호 - "protect humans from animal/plant pest or disease": 및 영토보호 - "protect territory from other damage from pests"임

동물보호에 관한 통보를 보다 세분해 보면, 미국 등이 회람한 화학물질에 관한 내용이 86건을 비롯하여 조류독감 69건, 구제역 27건, 광우병 21건 등이며, New cattle disease는 9건, 유전자변형생물 7건 등이 있다.

표 12 동물보호관련 통보문의 조치 목적

국 가 ¹⁾	통보건수	조류독감	광우병	구제역	Newcastle disease	화학물질
계	329	69	21	27	9	86
과테말라	3		2			
네팔	1	1				
노르웨이	2					1
뉴질랜드	9					2
대만	5	1		1		
말레이시아	1		1			
미국	86	1	1		2	76
베냉	1	1				
볼리비아	2					1
브라질	34	2		7	2	3
스리랑카	1	1				
스위스	4		1			
싱가포르	2			2		
아랍 에미리트	10	9		1		
아르헨티나	3		1	1		
에콰도르	4	2		1	1	
요르단	4	2	1	1		
유럽연합	10					1
이집트	10	2	1	1		
인도	1	1				
인도네시아	2					1
일본	3					1
자메이카	1		1			
칠레	12	2				
캐나다	4	1	3			
케냐	13	13				
코스타리카	2		1			
콜롬비아	16	1	3	6		
쿠바	5	2	2			
태국	9	3	1		3	
페루	7	2		3	1	
필리핀	31	22	2	3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니카라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엘살바도르, 파나마, 호주, 온두라스는 이들 질병 등에 대한 통보하지 않음

대상 동물별로 보면 우제류(소류)의 경우 64건, 돼지류 30건, 조류 96건, 수산물 19건을 비롯하여 벌 6건, 외래종 5건, 말, 개·고양이 등이 있다. 또한 일부 통보문은 특정 대상 동물을 지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제도 또는 검역, 위생증명서 등에 대한 제도의 개정에 대한 통보도 있다.

표 13 동물보호 목적 통보문의 보호 목적 동물에 따른 분류

국 가	통보건수	우제류	돼지류	조류	수산물
총 계	329	64	30	96	19
과테말라	3	3	1	1	
네팔	1			1	
노르웨이	2				1
뉴질랜드	9				
니카라과	3	3	3		
대만	5		1	1	
루마니아	13	3	2	5	
말레이시아	1	1			
미국	86	7	3	5	4
베냉	1			1	
볼리비아	2	1			
불가리아	2				
브라질	34	8	2	5	
스리랑카	1			1	
스위스	4		1	2	
싱가포르	2	2	1		
아랍 에미리트	10	1		9	
아르헨티나	3	2	1	1	
에콰도르	4	1	1	2	
엘살바도르	2			1	
요르단	4	2	1	2	
유럽연합	10				4
이집트	10	6		3	
인도	1			1	
인도네시아	2				1
일본	3				
자메이카	1	1			
칠레	12		1	4	2
캐나다	4	1		1	
케냐	13			13	
코스타리카	2	1			
콜롬비아	16	9	6	1	4
쿠바	5	2		2	1
태국	9	2		6	1
파나마	2				
페루	7	2	3	3	
필리핀	31	6	3	23	
한국	4				
호주	4			2	1
온두라스	1				

표 14 식물보호관련 통보문의 조치 목적 및 적용품목

국 가	통보 건수	포장 재	농약	외래 종	질병	해충	GMO	곡류	과실	두류	채소	종자	제도	기타
계	580	14	338	4	2	12	11	13	43	2	27	31	59	17
미국	340		312				7	2	7	1	4	2	3	2
브라질	49	2	2	1	1	2	1	1	9		8	5	11	6
칠레	31							4	6		7	8	4	2
뉴질랜드	22	2	1						8		2	1	3	5
유럽연합	21	1	20											
캐나다	12	1				1						3	3	
한국	11					1	2		1		2	1	2	
대만	10		1						5				4	
호주	8					2		2	3				1	
아르헨티나	7							2	2		2	1		
인도	7		1											6
페루	7										1	6		
태국	6					4							2	
중국	4	2				1								1
볼리비아	3									1		1	1	
에콰도르	3												2	1
이집트	3											1	2	
인도네시아	3	1											2	
일본	3			2		1								
코스타리카	3											1	2	
콜롬비아	3		1					2						
과테말라	2												2	
네팔	2												2	
니카라과	2	1											1	
도미니카공화국	2	1											1	
불가리아	2	1											1	
스페인	2				1				1					
엘살바도르	2			1							1			
파나마	2												2	
온두라스	2	1											1	
노르웨이	1												1	
아랍 에미리트	1								1					
오만	1											1		
요르단	1	1												
자메이카	1						1							
필리핀	1													

한편 580건의 식물보호 관련 통보문 중 농약 등 화학물질관련 통보가 가장 많이 되었으나 이는 미국이 농약에 대한 재검토에 따라 모든 농약에 대하여 식물보호를 함께 표시하였기 때문이다. 단일 사안으로는 IPPC에서 합의한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기준으로 총 16건⁵⁾이 회람되었으며, 해충, 유전자변형농산물관련, 해충 및 질병관련 및 외래종에 대한 통보가 있었다. 또한 대상 상품별로 보면 과실류, 채소류, 제도, 곡류 등이 많이 통보되었으며, 종자에 대한 내용도 많이 통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4 주요 국가/국제기구의 전파시스템 사례

3.4.1 미국

미국 농무성에서는 동·식물의 검역기관으로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ystem)⁶⁾를 운영하고 있다. APHIS에는 국제서비스 및 무역지원팀(International Services and Trade Support Team, IS/TST)이 있으며, APHIS의 TST는 SPS 조치와 협정, 위협평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모듈단위의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습 페이지를 구성하여 이를 이해당사자 및 관련 업체에 확산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온라인 학습 페이지의 첫 페이지는 SPS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다루고 있으며, Module 1은 WTO SPS협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림 7은 Module 1에 대한 구성 모습을 나타낸다. Module 2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SPS 협정을 미국이 어떻게 이해하고 실현하는지에 대한 주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수출입 업자가 어떻게 식물이나 동물, 또는 동식물을 수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림 8는 웹에서 서비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5) 오만과 에콰도르는 목재포장재 관련 조치를 식물보호로 보지 않고 국민보호 및 영토보호로만 통보하여 식물보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580건에는 포함되지 않음) 목재포장재 관련 통보의 수에는 포함하였다.

6) <http://www.aphis.usda.gov/is/s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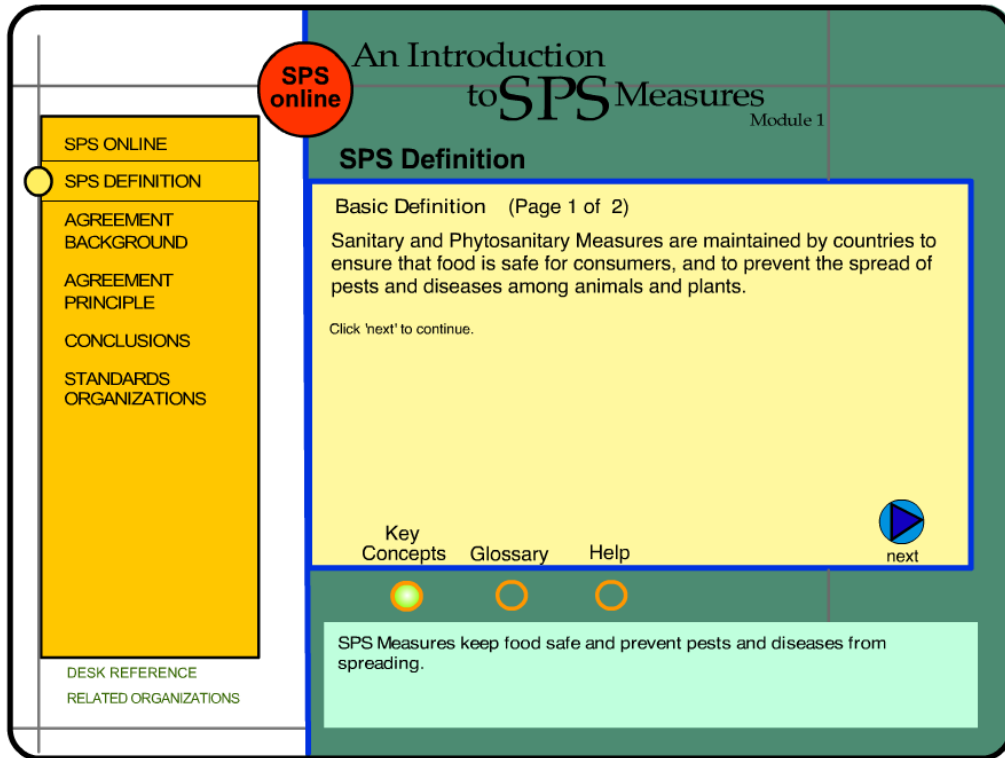


그림 7 APHIS의 Modu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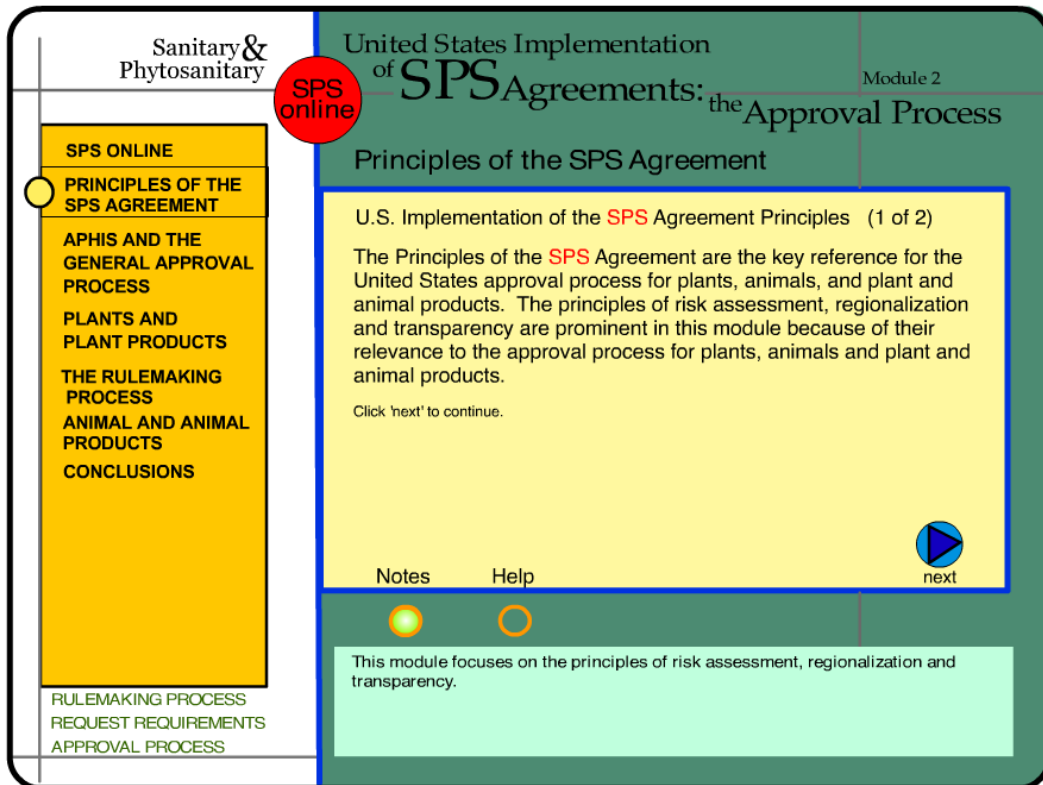


그림 8 APHIS의 Module 2

Module 3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농업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을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해당 담당자를 위한 위험평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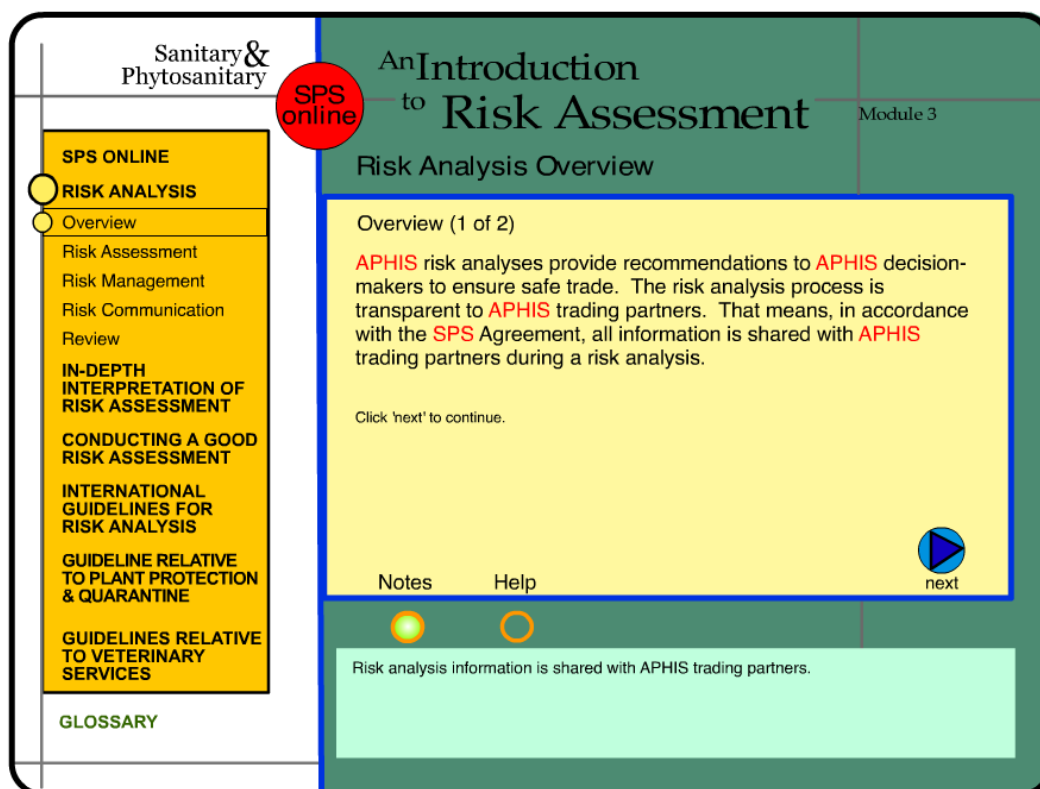


그림 9 APHIS의 Module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농무성에서는 WTO SPS 조치에 대한 자국 내 또는 자국 외 이해당사자를 위해 구체적인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국 내 위생 및 식물위생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WTO SPS 조치에 대한 자국 내 이해당사자나 해당 업체를 위한 통보문 전파시스템은 미약한 실정이며, 통보문 검색이나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TST는 무역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면서 국가의 생물학적 안보 (biosecurity)를 보장하는 APHI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물학적으로 건전

하고 일관된 무역정책에 대한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담당하고 있다.

TST는 APHIS본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현안을 확인하고 미국의 농업에 대한 생물학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한다. TST의 직원은 매일 농무성의 FAS(Foreign Agricultural Service)와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s)와 연락하고 있으며, 주요 무역현안에 대하여 매주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무장관의 SPS활동 팀에 제공되어 진다. 또한 매달 첫째 수요일에는 APHIS, FAS, USTR 등의 기관이 참여하는 SPS전략회의를 개최한다. TST의 업무는 동·식물분야의 무역정책연락관과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

TST는 SPS 이슈에 대하여 SPS관련 무역사안에 대한 부처내부 및 부처간 활동을 조정하는 의무가 있으며 또나 APHIS의 SPS조치가 국제무역규범(WTO 및 NAFTA 등)에 적합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TST는 SPS 위원회 논의결과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요약 소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술무역보고서(Technical Trade Report)를 부정기적으로 발간·공개하고 있다.

한편 농무성 FAS의 Forest and Fishery Products Division(FFPD)에서는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통보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수산물의 경우는 2006년까지도 제공하고 있으나 임산물의 경우는 2005년까지밖에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6.11월 농무성의 구조조정(reorganization)이 있어 업무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개선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모든 업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FFPD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중 WTO SPS 및 TBT통보문을 제공하는 인터넷 페이지가 있었으나 본 연구를 수행하는 기간에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이다.

◦ ABOUT US

- FFPD Home
- FFPD Contact List
- Industry Partners - American Forest and Paper Association: American Hardwood Export Council: American Plywood Association: Softwood Export Council: Southern Forest Products Association: Southern Pine Council: Alaska Seafood Marketing Institute: The Catfish Institute
- FAS EXPORT PROGRAMS - Cochran Fellowship Program: Emerging Markets Program: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 102/103: Export Enhancement Program: Exporter Assistance: Facilities

Guarantee Program: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Market Access Program: Supplier Credit Guarantee Program: Quality Samples Program

- E-mail FFPD
- FFPD Mission
- Search

◦ FOREST PRODUCTS

- What's New?
- Trade Data - U.S. Exports, Year-to-Date: U.S. Exports, Annual: U.S. Exports, Quarterly: U.S. Customs District Trade Data: FAS Forest Product Groupings (Defined), Export: FAS Forest Product Groupings (Defined), Import: FAS U.S. Trade Online Database: U.S. Trade Monthly Release Schedule: U.S. Census' Guide to Foreign Trade Statistics: U.S. Wood Product Exports Presentation: World's Leading Wood Product Exporters: World's Leading Wood Product Importers: PS&D Online Database: BICO Statistics Database: Tariff Schedules
- Country Reports from Attaches
- Market News
- Trade Policy - Country Standards - Related Notifications (2005년까지 각국의 조치에 대하여 정리 보고되어 있음): Federal Register Notices: FAS U.S. Agricultural Trade: Trade Policy Highlights: WTO SPS/TBT Notifications (연결 끊어져 있음)
- Publications - A Guide To Exporting Solid Wood Products: AG Exporter Forest Products Feature Articles: An Economic Overview of the U.S. Solid Wood Industry: Forest Products Presentations: Healthy Forests Restoration Act of 2003: Wood Products Outreach Brochure
- Coming Events
- Helpful Links - A Guide To Getting Started In Forest Products Exporting: American Association of Woodturners: American Hardboard Association: American Wood Council: American Wood Preservers Institute: APEC Tariff Database: CIA World Fact Book: Dictionary of Forestry: Doing Business with USDA's FAS: Export Trading Company Guidebook: Forest Products Society: Hardwood Plywood and Veneer Assn.: Healthy Forest: Healthy Forests Restoration Act of 2003: ICTSD: 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Forestry: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ry Research Organizations: International Wood Products Association: International Trade Links: Louisiana Forest Products Community: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National Agroforestry Center: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partments of Agricultur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Foresters: National Forest Foundation: National Hardwood Lumber Association: Northeastern Forest Experiment Station: Northeastern Research Station: USTR: Pacific Exchange Rate Service: Rural Business-Cooperative Service: STAT-USA/Internet: Southern Lumber Exporters Association: Tariff Database by Country: Tariff Database for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emperate Forest Foundation: Tropical Forestry and Timber Trade Statistics: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USAID: U.S. Customs Servic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USDA's AMS: USDA's APHIS: USDA Cooperative Forestry Offices: USDA's CSREES: USDA Forest Products Laboratory: USDA Forest Service: USDA Forest Service International Programs: USDA Pacific Northwest Research Station: USDA Rocky Mountain Research St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Department of State -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Western Wood Products Association

◦ FISHERY PRODUCTS

- What's New?
- Trade Data - Monthly Trade Data: Archived Trade Data (1998 - 2003): FAS U.S. Trade Online Database: FAS Fishery Products Exports Aggregations: U.S. Trade Monthly Release Schedule: U.S. Census' Guide to Foreign Trade Statistics: PS&D Online Database: Tariff Schedules: BICO Statistics Database
- Country Reports from Attaches
- Market News
- Trade Policy - Country Standards - Related Notifications (2006년까지 각국의 조치 변화 보고되고 있음): Federal Register Notices: FAS U.S. Agricultural Trad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Trade Policy Highlights: USDA's AMS: Country of Origin Labeling: WTO SPS/TBT Notifications (연결 끊어져 있음)
- Publications - Fishery Products Presentations: A Guide To Exporting Fishery Products: AG Exporter Fishery Products Feature Articles: Fishery Products Outreach Brochure
- Coming Events
- Helpful Links - Aquaculture Network Information Center: Doing Business with USDA's FAS: FAO of the UN-Fishery Department: Fish Trade Regulations on the Web: FDA Home Page: FDA: Center for Food Safety & Applied Nutrition: FDA/CFSAN Handout for Seafood Exporters to the EU: Inter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Economics and Trade: International Trade Sources: Maine Lobster Promotion Council: National Aquaculture Association: National Fisheries Institut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orthern Aquaculture: OECD's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Seafood Datasearch: Seafood Network Information Center: USAID: U.S. Customs Service: USDA's APHIS: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U.S. Joint Subcommittee on Aquacultur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3.4.2 호주

호주 농림부는 동·식물의 검역과 식품의 검사를 위한 기관으로 AQIS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⁷⁾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식물의

7) www.affa.gov.au

수입 허가여부를 위하여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Biosecurity Australia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 농림부의 홈페이지⁸⁾에 다음과 같은 Market Access & Trade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Free Trade Agreements (FTA)
 - Australia -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ustralia - US FTA: Thailand - Australia FTA: Singapore - Australia FTA
- Market Access
 - Market Access for Specific Commoditie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reaties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 Technical Assistance to Trading Partners: Australia-China Agricultural Cooperation Agreement (ACACA): Australia-Indonesia Working Group on Agriculture and Food Cooperation (WG AFC): Live Animal Trade Programme
- Overseas Network
 - Overseas Agricultural Staff contact details: Overseas Agricultural Staff Profiles: Australian Embassy, High Commissions and Consulate list
- Media Releases

이 페이지에는 기술적이 내용보다는 단순한 설명과 다른 인터넷 페이지와 연계가 위주이다.

호주 AQIS는 수입업자를 위한 ICON(Import Conditions) 데이터베이스와 수출업자를 위한 PHYTO(Plant and Plant Product Export Conditions),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이나 가공품등의 수출입을 위한 ANIMEX(Live Animal and Reproductive Material Export Conditions)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1) ICON(Import Conditions)

ICON 데이터베이스는 20,000여 종류의 식물, 동물, 미생물, 광물, 그리고 인간이 만든 다양한 상품 등을 호주로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가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수입조건을 서비스하고 있다. 즉, 특정한 상품에 대해 호주로 수입할 경우 검역이 필요한 제품인지, 아닌지, 또는 검역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취급방법에 대한 결정을 도와준다. 그림 10은 ICON 데이터베이스의 검색화

8) www.affa.gov.au

면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 11은 ICON을 통해 검색된 화면의 일부를 보이고 있다.

AQIS HOME **IMPORT CONDITIONS**

About ICON | **ICON Search** | ICON Alerts | ICON Help | E-mail us |

Import conditions search

ICON is AQIS's import conditions database. It contains the Australian import conditions for more than 20,000 plant, animal, microbial, mineral and human products.

To search ICON, enter the commodity into the appropriate field below. For a more specific search, also select the country of origin and/or the end use of the commodity.

Commodity:

From country:

For end use:

그림 10 ICON 데이터베이스의 검색화면

AQIS HOME **IMPORT CONDITIONS**

About ICON | **ICON Search** | ICON Alerts | ICON Help | E-mail us |

Results of your search on "rice" from "Korea, Republic Of (South Korea)" for "Human consumption" [New Search](#)

Found: 8 Showing: 1 - 8 [New Search](#)

Commodity	Country	EndUse
Banana leaves - Cooked or boiled	All countries	Human consumption
Processed cereal products	Khapra beetle countries	Human consumption
Rice - Black glutinous	All countries	Human consumption
Rice - Brown	All countries	Human consumption

그림 11 ICON 데이터베이스의 검색결과

2) PHYTO(Plant and Plant Product Export Conditions)

PHYTO는 과일, 양배추, 각종 종자, 쌀, 밀, 옥수수, 꽃, 목재 등을 포함하는 식물이나 식물가공품 등을 호주로부터 수출할 경우의 구체적인 수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검역이 필요한 제품인지, 아닌지, 또는 검역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취급방법에 대한 결정을 도와준다. 그림 12는 PHYTO 데이터베이스의 검색화면을 보이고 있다.

AQIS HOME **PHYTO**

PHYTO home | PHYTO search | What's changed | ecd

PHYTO alerts | PHYTO contacts | PHYTO documents | Help

PHYTO search

For help with searching, use [help](#).

Ente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riteria.

Country: All

Scientific name: [List generic names](#)

Common name:

Group: All

Form: All

Search all text:

Restriction text:

Additional declaration:

Treatments:

Restriction type: Market accessible Prohibited Either

Order results by: Country Conditions for end use
 Commodity Market accessible

Only search publicly available listings

그림 12 PHYTO 데이터베이스의 검색화면

3) ANIMEX(Live Animal and Reproductive Material Export Conditions)

ANIMEX 데이터베이스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이의 가공품 등을 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기 위한 조건과 더불어 수출하는 데 필요한 요구조건, 즉 질병여부, 검역과 취급방법, 건강증명서, 이동수단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13은 ANIMEX 데이터베이스의 검색화면을 보이고 있다.

ANIMEX search

ANIMEX is AQIS's live animal and reproductive material export conditions database.

To search ANIMEX simply select a country and/or species from the fields below. Searching can also be done by entering text in the free text field.

Country:

Species:

Free text:

그림 13 ANIMEX 데이터베이스의 검색화면

3.4.3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회원국 내의 산업을 보호와 수출 촉진을 위하여 MADB(Market Access Database)⁹⁾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 관련 상품을 수출할 경우 무역장벽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상호작용을 가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국의 수출입 업자가 실질적인 WTO SPS/TBT 통보문 조치 내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림 14는 MADB의 첫 화면을 나타내며, 유럽연합국이 아닌 다른 국가별 조치 현황, 상품그룹별 조치 현황, 그림 15 및 그림 16과 같이 상품코드별 SPS 통보문 현황, SPS 조치의 해결 현황 등으로 분류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14 MADB에서 서비스하는 내용

9) <http://madb.europa.eu/sps/index.html>



그림 15 조치별 SPS 조치 현황

**SPS Trade Barrier Report
for SPS Measure 0101 Foot and mouth disease**

Country Id	Product 2 digits	Product 4 digits	Measure SPS	Title	Last update
Japan	040090 02 MEAT AND EDIBLE MEAT OFFAL	0203	0101 Foot and mouth disease	Japan- Cooked pork meat	2004-09-10
Mexico	040008 02 MEAT AND EDIBLE MEAT OFFAL		0101 Foot and mouth disease	Mexico- Footh and Mouth Disease Meat	2004-05-13

그림 16 조치코드 0101의 SPS 조치 현황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다시 하위 분류로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 by third country - 국가별
- by product group(2 or 4 digits)
 - 00 All products(*7)
 - 01 LIVE ANIMALS(*81)
 - Entire chapter 01 LIVE ANIMALS(*81)

- 0101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2)
- 0102 Live bovine animals(*36)
- 0103 Live swine(*1)
- 0105 Live poultry,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ducks, geese, turkeys and guinea fowls'(*41)
- 02 MEAT AND EDIBLE MEAT OFFAL(*46)
 - Entire chapter 02 MEAT AND EDIBLE MEAT OFFAL(*46)
 - 0201 Meat of bovine animals, fresh or chilled(*5)
 - 0202 Meat of bovine animals, frozen(*10)
 - 0203 Meat of swine, fresh, chilled or frozen(*17)
 - 0207 Meat and edible offal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ducks, geese, turkeys and guinea fowls, fresh, chilled or frozen(*8)
 - 0210 Meat and edible offal,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edible flours and meals of meat or meat offal(*2)
- 03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1)
 - Entire chapter 03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1)
 - 0101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2)
- 04 DAIRY PRODUCE: BIRDS' EGGS: NATURAL HONEY: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6)
 - Entire chapter 04 DAIRY PRODUCE: BIRDS' EGGS: NATURAL HONEY: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6)
 - 0401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n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1)
 - 0402 Milk and cream,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3)
 - 0409 Natural honey(*1)
- 06 LIVE TREES AND OTHER PLANTS: BULBS, ROOTS AND THE LIKE: CUT FLOWERS AND ORNAMENTAL FOLIAGE(*7)
 - Entire chapter 06 LIVE TREES AND OTHER PLANTS: BULBS, ROOTS AND THE LIKE: CUT FLOWERS AND ORNAMENTAL FOLIAGE(*7)
 - 0601 Bulbs, tubers, tuberous roots, corms, crowns and rhizomes, dormant, in growth or in flower, chicory plants and roots (excl. bulbs, tubers and tuberous roots used for human consumption and chicory roots of the variety cichorium intybus sativum)(*1)
 - 0602 Live plants incl. their roots, cuttings and slips: mushroom spawn (excl. bulbs, tubers, tuberous roots, corms, crowns and rhizomes, and chicory plants and roots)(*3)
 - 0603 Cut flowers and flower buds 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 purposes, fresh, dried, dyed, bleached, impregnated or otherwise prepared(*3)
- 07 EDIBLE VEGETABLES AND CERTAIN ROOTS AND TUBERS(*3)
 - Entire chapter 07 EDIBLE VEGETABLES AND CERTAIN ROOTS AND TUBERS (*3)
 - 0702 Tomatoes, fresh or chilled(*2)
 - 0710 Vegetables, uncooked or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frozen(*1)
- 08 EDIBLE FRUIT AND NUTS: PEEL OF CITRUS FRUITS OR MELONS(*8)
 - Entire chapter 08 EDIBLE FRUIT AND NUTS: PEEL OF CITRUS FRUITS OR MELONS (*8)
 - 0805 Citrus fruit, fresh or dried(*2)
 - 0808 Apples, pears and quinces, fresh(*1)
 - 0809 Apricots, cherries, peaches incl. nectarines, plums and sloes, fresh(*1)
 - 0811 Fruit and nuts, uncooked or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frozen,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1)
- 12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MISCELLANEOUS GRAINS, SEEDS AND FRUIT: INDUSTRIAL OR MEDICINAL PLANTS: STRAW AND FODDER(*1)
 - Entire chapter 12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MISCELLANEOUS GRAINS, SEEDS AND FRUIT: INDUSTRIAL OR MEDICINAL PLANTS: STRAW AND FODDER (*1)
 - 1209 Seeds, fruits and spores, for sowing (excl. leguminous vegetables and sweetcorn, coffee, tea, mate and spices, cereals,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and seeds and fruit used primarily in perfumery, medicaments or for insecticidal, fungicidal or similar purposes)(*1)
- 13 LAC: GUMS, RESINS AND OTHER VEGETABLE SAPS AND EXTRACTS(*2)
 - Entire chapter 13 LAC: GUMS, RESINS AND OTHER VEGETABLE SAPS AND EXTRACTS (*2)
 - 1301 Lac: natural gums, resins, gum-resins, balsams and other natural oleoresins(*1)
- 15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1)
 - Entire chapter 15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 (*1)
 - 1509 Olive oil and its fractions obtained from the fruit of the olive tree solely by mechanical or other physical means under conditions that do not lead to deterioration of the oil,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1)
- 18 COCOA AND COCOA PREPARATIONS(*2)
 - Entire chapter 18 COCOA AND COCOA PREPARATIONS (*2)
 - 1806 Chocolate and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2)
- 20 PREPARATIONS OF VEGETABLES, FRUIT, NUTS OR OTHER PARTS OF PLANTS(*1)
 - Entire chapter 20 PREPARATIONS OF VEGETABLES, FRUIT, NUTS OR OTHER PARTS OF PLANTS(*1)
 - 2001 Vegetables,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prepared or preserved by

- vinegar or acetic acid(*1)
- 22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2)
 - Entire chapter 22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2)
 - 2201 Waters, incl. natural or artificial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not containing added suga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ice and snow(*1)
 - 2202 Waters, incl.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excl. fruit or vegetable juices and milk)(*1)
- 23 RESIDUES AND WASTE FROM THE FOOD INDUSTRIES: PREPARED ANIMAL FODDER(*1)
 - Entire chapter 23 RESIDUES AND WASTE FROM THE FOOD INDUSTRIES: PREPARED ANIMAL FODDER(*1)
 - 2301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eat or meat offal,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unfit for human consumption: greaves(*1)
- by SPS measure
 - 0101 Foot and mouth disease(*2)
 - 0102 Swine vesicular disease(*1)
 - 0105 Classical swine fever(*11)
 - 0108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46)
 - 0130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54)
 - 0132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1)
 - 0133 Infectious bursal disease (Gumboro disease)(*1)
 - 02 Plant health reasons(*3)
 - 0202 Ceratitis Capitata(*2)
 - 0203 Blue Malt(*1)
 - 0301 Contaminants (veterinary drugs, pesticides, hormones)(*4)
 - 0302 Food additives(*5)
 - 0303 Toxins(*1)
 - 0304 Disease causing organisms(*1)
 - 0401 Certification(*7)
 - 0403 Risk analyses(*2)
 - 0405 Import licence(*4)
 - 0406 Quarantine(*4)
 - 0407 Packaging materials(*1)
 - 0408 Non compliance International standard(*3)
 - 0409 Non recognition of regionalisation(*3)
 - 0410 Listing of Establishments(*5)

- 0411 Legislation(*2)
 - by third country vs product group 2 digits: 국가와 제품군의 표
 - by third country vs SPS measure: 국가와 SPS조치의 표
 - resolved SPS problems: 해결된 SPS조치의 문제점을 국가, 고유번호, 제품분류, 조치, 제목, 최종 update일자를 제공
 - contact: 의견 수렴 - feedback을 할 수 있는 e-mail 양식 제공
 - what's new: 지난 1개월간 새로 추가된 문제점 제공
 - More Information: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페이지로 이동
- ※ (*#)는 수록된 무역장벽 data의 수임

위의 각 항목에서 검색되는 각 사안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Sector(분야)
- Product group 2 digits(HS번호 2자리)
- Product Description(제품의 일반명, 대상제품명)
- Product group 4 digits(HS번호 4자리)
- SPS Measure(관련 SPS 조치)
- Third country(제3국 조치 유지국)
- Member state(문제 제기 회원국)
- Description of the measure(조치와 문제점에 대한 설명)
- Source of Complaint(이의 제기자)
- Commission services(담당자)
- State of play(수행한 조치)
- Analysis and proposal(분석 및 제안)

유럽연합은 SPS통보문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위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무역에 문제가 되는 제외국의 SPS조치만을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유럽연합의 경우 대부분 국민이 WTO의 언어(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WTO 홈페이지에서 직접 통보문을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통보문을 회람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4.4 중국

중국은 WTO SPS 및 TBT의 통보처 및 문의처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QSIQ)¹⁰⁾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WTO/TBT-SPS 국가통보자문센터(WTO/TBT-SPS 國家通報諮詢中心, TBT-SPS Notification and Enquiry of China)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WTO 통보문의 국내 확산을 위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¹¹⁾ 개설하고 있다 (그림 17).

이 홈페이지는 TBT-SPS자문, 수출입식품안전, 일본의 양성목록제도(positive list), 유럽연합의 환경규제인 REACH 제도 등에 대한 별도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7 WTO/TBT-SPS 국가통보자문센터 홈페이지

한편, 주요 메뉴로는 일간정보(每日資訊), WTO 통보문(WTO通報), 위험경보(風險預警), 시장진입(市場准入), 기술규범(技術法規), 표준(標準), 적합성평가(合格評定), 지식원지(知識園地)가 있으며, 검색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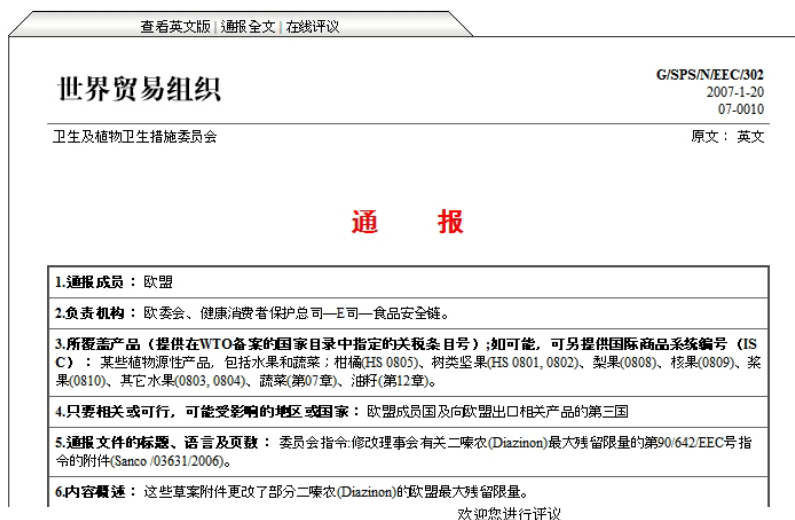
제공되는 통보문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통보문 양식을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문 양식(查看英文版), 통보전문(通報全文) 및 온라인 의견제출(在線評議)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영문양식 및 통보 전문

10) <http://www.aqsiq.gov.cn/>

11) http://www.tbt-sps.gov.cn/Pages/Channel_1/Class/Index.html

은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통보문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a) 통보문 제공 사례



b) 의견 제출 페이지



그림 18 제공 통보문과 온라인 의견 제출 페이지

제공되는 통보문은 자국어로는 자국과 제외국의 통보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 페이지는 제외국의 통보문은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자국의 통보문만을 TBT와 SPS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영문 페이지의 경우 통보문 이외에도 의견(Comment), 문의, 링크 등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의견의 경우 로그인을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타의 페이지인 통보문, 문의, 링크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3.4.5 IPFSAPH

IPFSAPH(International Portal on Food Safety, Animal & Plant Health)¹²⁾는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 의해 개발된 식품안전 및 동식물 위생에 대한 국제적인 포털 웹 사이트로서, 위생 및 식물위생 관련 국제표준 정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국가 또는 국가 간 식품안전 및 동식물 위생

12) <http://www.ipfsaph.org/En/default.jsp>

정보 공유를 위해 하나의 접근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 위생을 통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SPS 조치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국제 무역 파트너끼리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 ▼ [01] Live animals (8829)
- ▼ [02] Meat and edible meat offal (7142)
- ▼ [03] Fish, crustaceans, molluscs, aquatic invertebrates (1929)
- ▼ [04] Dairy products, eggs, honey, other edible animal products (2831)
- ▼ [05] Other products of animal origin (1169)
- ▼ [06] Live trees, plants, bulbs, roots, cut flowers etc (1173)
- ▼ [07] Edible vegetables, roots and tubers (4347)
- ▼ [08] Edible fruit, nuts, peel of citrus fruit, melons (5472)
- ▼ [09] Coffee, tea, mate and spices (812)
- ▼ [10] Cereals (1614)
- ▼ [11] Milling products, malt, starches, inulin, wheat gluten (535)
- ▼ [12] Oil seed, oleagious fruits, etc (1729)
- ▼ [13] Lac, gums, resins, vegetable saps and extracts (84)
- ▼ [14] Vegetable plaiting materials, and other vegetable products (28)
- ▼ [15] Animal, vegetable fats and oils, cleavage products, etc (822)
- ▼ [16] Meat, fish and seafood food preparations (2220)
- ▼ [17] Sugars and sugar confectionery (250)
- ▼ [18] Cocoa and cocoa preparations (115)
- ▼ [19] Cereal, flour, starch, milk preparations and products (187)
- ▼ [20] Vegetable, fruit, nut, etc preparations (557)
- ▼ [21]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339)
- ▼ [22]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894)
- ▼ [23] Residues, wastes of food industry, animal fodder (682)
- ▼ [24]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93)
- ▼ [25] Salt (52)
- ▼ [44] Wood and articles of wood (404)
- ▼ Applies to multiple commodities (13006)

그림 19 IPFSAPH에서 서비스하는 상품(commodity) 분류

[01] Live animals

▼ View **ALL records** (3926)
 ▼ View **Narrower topics**

<p>▼ Cross-Sectoral Issu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seases (2358)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Agreement (1187) Hygiene (733) Trade (664) Inspection (443) Control measures, general (264) Processing (245) Import (229) Animal feed (219) Transport (210) Health impact (175) Storage (175) Quarantine (161) Biological control (155) Certification (150) More... 	<p>▼ Count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plies to all countries] (794) France (220) United States of America (208) Belgium (171) Colombia (160) Spain (159) China (156) United Kingdom (141) Ireland (134) European Union (134) Peru (121) Argentina (113) Philippines (109) Chile (107) Italy (103) More... 	<p>▼ Information Typ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gislation/ Regulation (1946) Notifications (1281) Standards (251) Scientific evaluations (125) Official website (106) Communications (62) Official summaries (31) Scientific and technical papers (31) Reports (30) Trade Concerns (23) Manual/training materials (22) Disputes (6) Guidelines (4) Secretariat papers (3) Manual/training materials (3) More... 	<p>▼ Information Sour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OLEX (1470) WTO (1228) EURLX (458) OIE (406) FAO (171) EFSA (121) EU-SCADPlus (31) US Federal Register (8) USDA (6) US House of Representatives (5) APHIS (5) FSIS (4) Ukraine (4) JMPR (3) Codex (2) More...
--	---	---	---

Comments? Contact the webmaster at IPFSAPH@fao.org About the portal [login](#)
 Contains 29538 records International Portal on Food Safety, Animal and Plant Health © FAO, 2006

그림 20 IPFSAPH를 통해 검색된 레코드

그림 19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sation, WCO)에서 개발한 HS code에 의거하여 농산품 및 식품을 2, 4, 또는 6 자리 코드로 그룹화 하여 IPFSAPH에서 서비스하는 모습과 관련 정보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0은 그림 19에서 "[01] Live animals"를 선택했을 때 검색되는 각종 레코드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레코드는 live animal 관련 크로스섹터, 국가별, 정보타입별, 그리고 정보의 위치에 따라 그룹화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타 시스템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그림 21은 그림 20에서 "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를 클릭하면 검색되는 최종 화면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SPS 협정 및 통보문에 대한 정보의 종류(Notification, Addendum, Emergency, Equivalence, Supplement)와 목적, 그리고 통보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아울러 원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 IPFSAPH에서 검색된 레코드의 상세화면

3.4.6 WTO

WTO¹³⁾는 투명성의 강화를 위하여 발족 초기에는 회의의제 관련 문서의 상당량이 대외비로 다루어져 있었으나 수년전부터는 모든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문서 제출국이 대외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이 경우도 관련 회의 개최 후 3-6개월 이 경과하면 자

13) <http://www.wto.org>

동으로 공개하도록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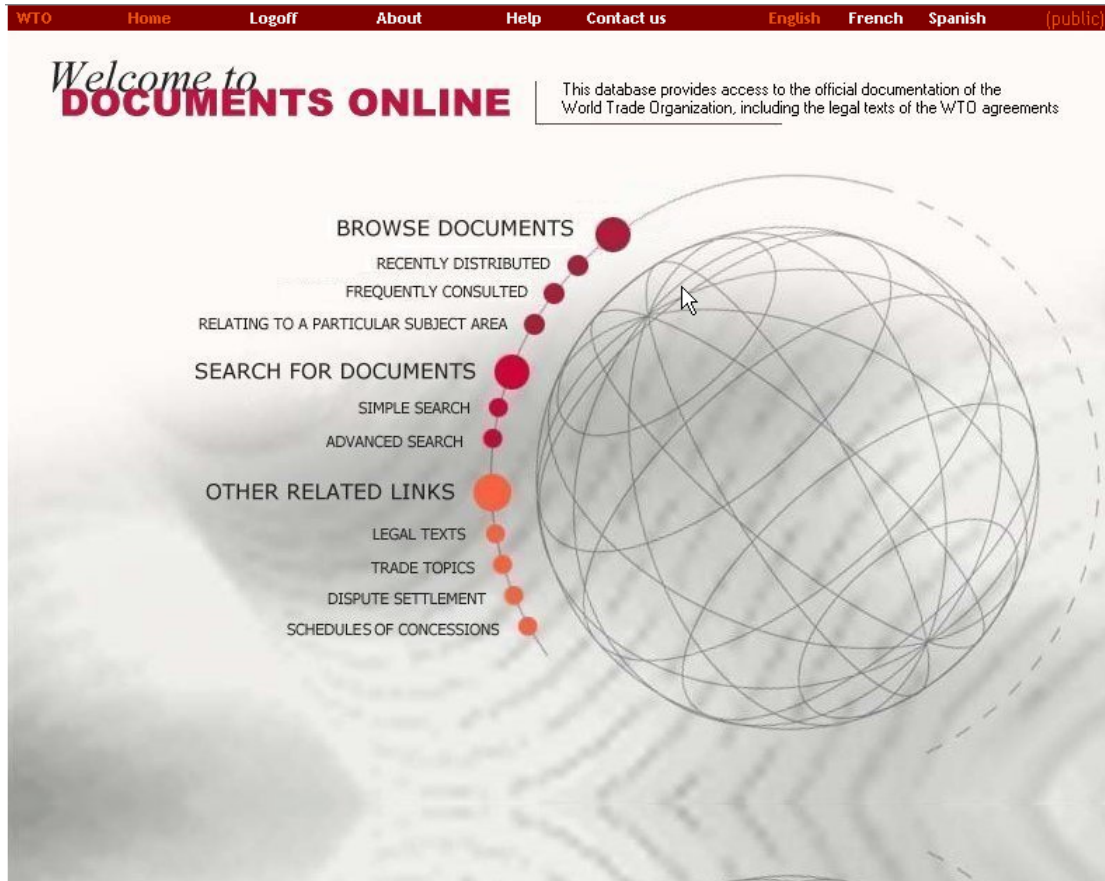


그림 22 WTO 문서 회람 페이지

이와 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WTO에서 회람되고 있는 문서는 그 양이 매우 많으며, 그 결과 WTO는 문서제공을 위한 별도의 URL을¹⁴⁾ 데이터 베이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WTO의 문서배포 첫 페이지는 그림 22와 같다.

이 URL로부터 SPS통보문은 검색(search)옵션에서 'G/SPS/N/국가코드' 등을 입력하여 선택할 수 있다. 한편 SPS사무국은 매월 회람된 통보문을 정리하여 하나의 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WTO의 SPS사무국은 SPS정보관리시스템(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개발 중이며, 2006년 중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목표로 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정보관리시스템은 각국의 통보문과 SPS 위원회에서 논의된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등을 포함한 관련 문

14) <http://docsonline.wto.org/>

서를 망라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찾기 기능을 포함하여 회원국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문서부호(예, G/SPS/N/국가명/일련번호)와 전체 WTO 문서 중의 일련번호(예, 00-0000)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현재는 내부 시험 운영 중이나 아직 공개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WTO 사무국은 주 2회 e-mail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SPS통보문과 각국이 제출한 문서 등을 송부하고 있다.

3.4.7 우리나라

미국이나 호주,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가 및 관련 기관에서 SPS 조치를 위한 통보문 전파시스템 사례와는 다르게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전파시스템 자체를 구축하고 있지 않으며, 관할 기관에서 단순히 이해당사자 또는 관련 업체에게 각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e-mail 서비스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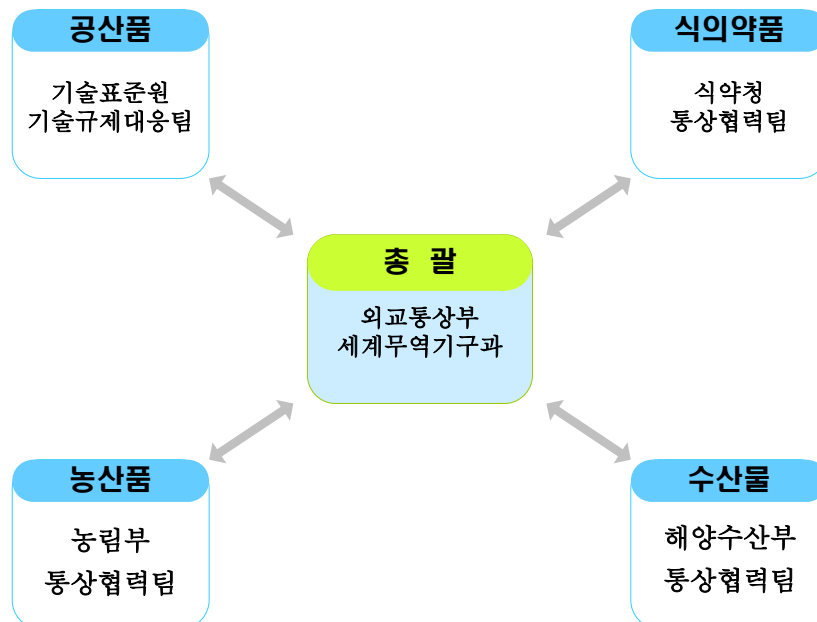


그림 23 국내 WTO TBT/SPS 공식 통보처 현황

아울러, 각 기관의 메인페이지에서는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없으며, 몇 단계 부 화면으로 내려가야만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자국민 또는 자국 내 농수축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 및 정보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한 사례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3은 국내 WTO TBT 및 SPS 공식 통보처 현황을 나타낸 것이며, 기술표준원을 제외하고는 SPS 조치를 위한 통보문 검색이나 전파시스템 사례가 미흡하다.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WTO TBT위원회의 문의처(enquiry point)로서 TBT통보문을 회람하고 있으며, SPS 통보문은 별도로 회람하고 있지 않고 있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SPS notifications. At the top, there is a breadcrumb trail: HOME > WTO농업협상 > SPS > SPS논의결과. Below this is a header with 'SPS' and a sub-header 'SPS 논의결과'. A brief description of the WTO Uruguay Round is provided. Below the header, there is a search bar with '총: 28 건 페이지수: 1/3' and a search button. The main content i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번호	제목	자료	담당부서	게시일
28	제28차 SPS 회의결과(통상협력과	2006-07-19
27	제27차 SPS 회의결과('03.6, G...		통상협력과	2006-07-19
26	제26차 SPS 논의결과(통상협력과	2006-07-19
25	제25차 WTO/SPS 회의결과('02...		통상협력과	2003-03-04
24	제23차 SPS회의결과('02.3, G/S...		통상협력과	2003-01-28
23	제24차 SPS회의결과('02.6 G/S...		통상협력과	2003-01-28
22	제22차 SPS회의결과('01.10 G/...		통상협력과	2003-01-28
21	제21차 SPS회의결과('01.7 G/S...		통상협력과	2003-01-28
20	제20차 SPS회의결과('01.3 G/S...		통상협력과	2003-01-28
19	제19차 SPS회의결과('00.11, G...		통상협력과	2003-01-28

그림 24 농림부의 SPS 조치 관련 서비스 사례

1) 농림부

농림부¹⁵⁾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해외농업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SPS 일반현황, SPS 결정문, SPS 논의 결과 및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SPS 조치를 위한 별도의 통보문 검색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그림 24와 같이 단순한 게시판을 통해 월단위로 일괄 제공하고 있다.

15) <http://www.maf.go.kr>

제공되는 통보문 또한 원본 형태의 영문으로 제공함에 따라 국내 이해당사자나 관련 업체에서 내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관심이 매우 많은 사람의 경우는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정보입수가 어려우며, 나아가 WTO에서 통보문을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은 일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수입국에서 도입 예정인 SPS 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는 다른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¹⁶⁾에서는 SPS 조치를 위한 통보문 전파를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공지사항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림 25 a)와 같이 그나마 최근 WTO SPS 관련 내용은 공지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게시판과는 별도로 2004년부터 매년 관련 연구사업을 통하여 3년간 관할 품목에 대한 SPS 및 TBT 통보문을 매주 별도로 요청한 관련 부서 및 협회 등에 e-mail을 통하여 통보문을 요약하여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사업을 통한 정보제공은 전혀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바람직하나, 2006년의 예를 보면 연중 약 이 천건(SPS통보문 1,200건, TBT 통보문 800건)이 회람되었음을 감안하고, 연구기간(5월부터 11월까지 약 6.5개월, 197일)을 감안할 때 연구기간이 아닌 12월 동안 회람되는 통보문(전체 통보문의 약 8%)은 전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전의 4.5개월(1월-5월, 전체 통보문의 약 38%)의 통보문은 통계 목적으로는 검토될 수 있었으나, 수출국의 의견 수렴 및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국내 홍보에 대한 목적은 달성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체 통보문 중 약 46%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문에 대하여 적절한 국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 관할 제품에 대한 WTO 통보문을 연구사업 형태로 회람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나,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사업 형태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16) <http://www.kfda.go.kr>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	WTO SPS 통보문 소개	통상정보담당관실	2003.12.16		990

a) 홈페이지

제목: WTO/SPS 통보문 송부(31)
첨부: sps_31.zip (47.7KB)

1)WTO/SPS 협정(위험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7조 및 부속서 B와
 2)WTO/SPS위원회 권장통보절차
 에 따라 회원국이 통보하며 WTO사무국에서 전달하는 각국의 식품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SPS 통보문을 요약하여 원문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의 추진에 참고하시고,

아울러 동 통보문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검토의견이 있을 시에는 통상협력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신후 엑셀문서를 활용하시면 원문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 WTO 홈페이지 : <http://www.wto.org/> 또는 <http://docsonline.wto.org/>

문서번호	분류	통보일자	통 보 내 용	통보국	의견제출기한
G/SPS/N/USA/1464	식품	2006/11/22	인간 섭취에 허용된 2차 직접 식품첨가물(secondary direct food additives) (21 CFR 173)에 예냉액 또는 냉각액에 함유된 cetylpyridinium chloride의 사용을 위한 개정안 탄원 고시	미국	2006/11/24
G/SPS/N/BRA/221	식품	2006/11/23	가향우유(flavoured milk)의 정의 및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기간 30일 고시	브라질	2006/11/21
G/SPS/N/BRA/222	식품	2006/11/23	조정 분유(modified dried milk)의 정의 및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기간 30일 고시	브라질	2006/11/21
G/SPS/N/BRA/233	식품	2006/11/23	유보조제(milk supplement)의 정의 및 정의의 기준 의견수렴기간 30일 고시	브라질	2006/11/21

- 통상협력팀

KFDA WTO Enquiry Point
 International Trade & Cooperation Team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194 Tongilro, Eunpyeong-gu
 Seoul, 122-704 Korea

b) e-mail

그림 25 식품의약품안전청의 SPS 통보문 전파 사례

3) 기술표준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¹⁷⁾의 기술규제대응팀은 우리나라의 TBT 문의처(enquiry point)로서 WTO SPS 통보문 관련 서비스 보다는 그림 26와 같이 WTO TBT 통보문의 검색 및 분석, 그리고 대응활동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7) <http://www.ats.go.kr/>

WTO/TBT 통보문은 WTO 회원국들이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기술규정, 표준, 검사 및 인증제도의 변동 사항” 을
 WTO/TBT 사무국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기술표준원은 WTO/TBT 협정에 의거 '96년 2월 공산품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WTO/TBT 공식질의처로 지정된 이후,
 국내 기술 규정안의 WTO 통보, 외국의 통보문의 접수 및 보급, 외국으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답변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원하시는 정보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키워드검색	<input type="text"/>
대분류	==선택==
세부분류	==선택==
지역	==선택==
국가	==선택==
통보번호	국가코드(입력예:KOR,JPN) <input type="text"/> 통보번호(정수값입력) <input type="text"/>
강제시행일	<input type="text"/> 이후 <input type="text"/> 이전
통보일	<input type="text"/> 이후 <input type="text"/> 이전

그림 26 기술표준원의 WTO TBT 통보문 검색시스템 사례

기술표준원은 TBT 통보문을 일괄 접수하여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한 후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국가별, 지역별, 기간별, 품목별로 검색할 수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2005년 12월 현재 1995년 이후 각국에서 송부한 6,700건 이상의 통보문 내용이 수집되어 있다. 통보문 내용은 한국표준협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품질경영'지에 소개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매주 발행되는 기술표준원 뉴스레터에 각국의 통보문을 게재하고,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정보 검색을 위해 상시 홈페이지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강제규제조치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림 27과 같이 TBT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06년 내로 정상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TBT 자동경보시스템은 TBT 통보문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자동 e-mail 통보 시스템이며, 외국의 규제당국이 수출기업의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하면 그 통보문을 자동으로 수출기업의 e-mail로 푸시(push)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TBT 자동경보시스템에서 구체적으로 서비스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기업의 관심분야에서 제안된 강제규제 변동사항의 자동 통보
- 강제규제조치(안)의 전체 원문 신청 및 수령
-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

TBT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

HOME > 기술규제 대응 > TBT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

아이디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중복확인"/>
비밀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비밀번호 확인"/> <input type="text"/>
이름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실명확인"/>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휴대폰"/>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이메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직접입력"/> ▼
주소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우편번호"/>
관심분야	<p>※ 원하시는 분야를 선택하시면, 세부 분야가 나옵니다. (복수선택가능)</p> <p>[대분류] 에너지물류 전기전자 기계건설 화학세라믹 정보디지털 문화서비스 바이오환경 소재나노 기타 식의약품 농산품 해수산품</p> <p>[세부분류]</p> <p><input type="checkbox"/> 농산품(곡물, 과채류) <input type="checkbox"/> 임산물(과실류) <input type="checkbox"/> 축산물(육류, 가공류, 달걀 등)</p>	
<input type="button" value="등록하기"/> <input type="button" value="취소하기"/>		

그림 27 기술표준원에서 구축 중인 TBT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

기술표준원에서의 TBT 통보문 처리절차는 그림 28과 같이 WTO TBT협정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WTO/TBT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TBT 운영위원회와 유관기관, 단체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질적인 통보문을 검토하는 8개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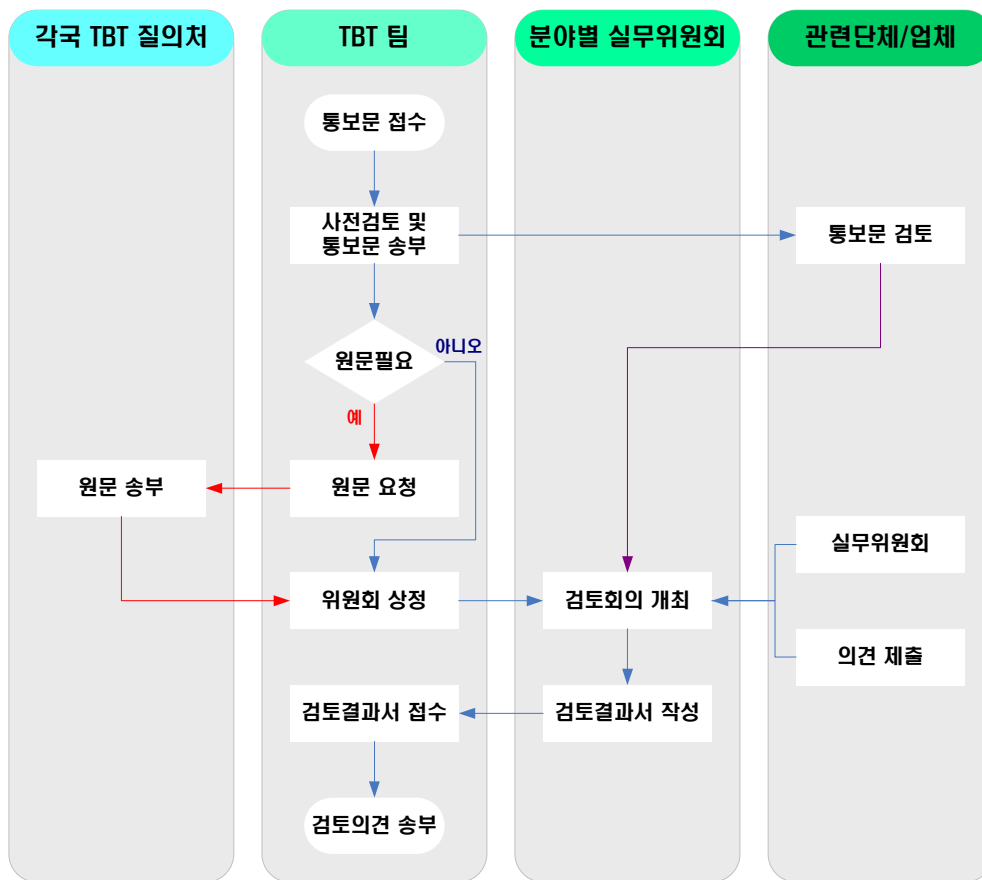


그림 28 기술표준원의 TBT 통보문 처리 절차

4) 농산물유통공사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¹⁸⁾는 농수산물무역정보¹⁹⁾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무역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무역정보

- 무역뉴스: 해외aT센터뉴스, 해외뉴스, 국내뉴스, 일본청과물시황, 포토뉴스
- 무역자료: 해외자료, 국내자료, 국가개황, 발간책자, 월간무역정보, 수출입뉴스, 해외농업정보조사위원회제공자료
- 지원사업: 지원사업동향, 지원사업신청
- 통합검색

○ 수출지원정보:

- 지원조직: 공사지원조직, 지자체, 해외aT센터, 해외농업정보조사위원

18) <http://www.at.or.kr/>

19) <http://www.kati.net/index.jsp>

- 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내용,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동향
- 지원사업일정: 외부링크
- 수출지식뱅크
- 유관기관통합무역정보
- 수출분야 전문가정보
- 수출지원정보
 - 수출입통계: 수출입품목분류방법, 수출입통계, 해외수출입통계, 월별수출입동향, FAO세계교역통계
 - 가격통계: 일본청과물시황, 해외도소매가격, 해외도소매시장, 해외원자재시황, 국내가격정보
 - 생산통계: 국내생산통계, 파종 수확정보, 해외생산통계, 농수산물수출입현황
- 수출마케팅정보
 - 원예전문생산단지: 원예전문생산단지, 정보화시범단지
 - 국내수출업체: 국내수출업체, 캐릭터/브랜드사용업체, 국내수출업체 상품홍보
 - 국내수출단체
 - 포장디자인: 국내수출포장디자인, 해외지역별디자인경향
 - 이미지뱅크
 - 해외거래알선: AgroTrade, 오늘의 Buying 오피
 - 해외바이어
 - 해외상품: 해외우수상품: 해외신상품: 해외박람회출품상품
 - 해외 식당 및 식품점: 해외식당, 해외식품점
- 수출실무정보:
 - 절차설명
 - 무역서식: 수출일반서식, 공사관련서식
 - 환율: 환변동보험가입지원안내, 환율동향뉴스, 환율변동예측정보, 주요국 환율변동추이
 - 보험
 - 안전성

- 검역: 수출식물 검역절차, 주요국 식물검역제도
 - 운송: 내륙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 관세
 - 관련법규
 - 국내외경제뉴스: 국제뉴스, 산업뉴스, 경제뉴스, 금융뉴스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고객의 소리
 - 수출상담실: 이용안내, 삭제메뉴, 담당자, 담당자, 질의응답
 - KATI 활용사례
 - KATI 개선의견
 - KATI 개선 산학협동안내
 - FAQ

3.5 통보문 및 조치의 분류

3.5.1 WTO 통보문의 분류

WTO SPS 조치를 위한 통보문 검색 및 전파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SPS 통보문의 템플릿을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DB 테이블 항목과 더불어 각각의 분류를 코드화해야 한다.

WTO SPS 통보문의 템플릿은 표 15와 같이 크게 5가지로 분류되며²⁰⁾, 각각의 통보문은 개정(revision, Rev.), 추가(addendum, Add.), 수정(Corrigendum, Corr.)로 다시 분류된다.

- 정규 통보문(regular notification)
- 긴급 통보문(emergency notification)
- 동등성 인정 결정 통보문(notification of determination of the recognition of equivalence)
- 특별 및 차등 대우 통보문(notification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번역문에 관한 통보문(notification on availability of translations)

20)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ps_e/sps_e.htm 참조

표 15 SPS 통보문 종류 및 분류기호

통보문 종류	통보문 분류 기호
① 정규 통보문	G/SPS/N/COUNTRY/#
	G/SPS/N/COUNTRY/#/Rev.#
	G/SPS/N/COUNTRY/#/Add.#
	G/SPS/N/COUNTRY/#/Corr.#
② 긴급 통보문	G/SPS/N/COUNTRY/#
	G/SPS/N/COUNTRY/#/Rev.#
	G/SPS/N/COUNTRY/#/Add.#
	G/SPS/N/COUNTRY/#/Corr.#
③ 동등성 인정 결정 통보문	G/SPS/EQV/N/#
④ 특별 및 차등 대우 통보문	G/SPS/N/COUNTRY/#/Add.#
④ 번역 가능에 관한 통보문	G/SPS/N/COUNTRY/#/Suppl.#

각각의 통보문의 세부적인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정규 통보문과 긴급 통보문의 경우에는 표 16의 a), b)과 같이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등성 인정 결정 통보문은 표 16의 c)와 같이 7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한편, 특별 및 차등 대우 통보문과 번역 가능에 관한 통보문의 형식은 특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SPS 통보문의 형태는 비교적 정규화된 형태로 통보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SPS 조치를 위한 통보문 검색 및 전파시스템 구축 시 이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WTO에서는 SPS 통보문을 단순히 MS-WORD 문서로 배포하기 때문에 향후 통보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MS-WORD 문서에서 자동으로 각각의 항목을 분리하여 추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²¹⁾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통보문이 WTO 공식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국내 이해당사자 및 관련 업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WTO사무국은 세 개의 언어 중 어느 하나로 통보되면 이를 다른 두 가지 언어로 번역하여 일부 기간 후 원래 언어와 함께 회람하고 있다.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통보된 긴급을 요하는 통보문의 경우는 사무국의 번역을 기다리지 않고 빠른 번역을 위한 이들 언어의 전공 번역이 가능한 인력 또는 영어로의 적절한 기계번역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21) Microsoft InfoPath 2007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지원하고 있음.

표 16 SPS 통보문의 구성 요소

a) 정규 통보문

1.	Member notifying
2.	Agency responsible
3.	Products covered
4.	Regions or countries likely to be affected
5.	Title, language and number of pages of the notified document
6.	Description of content
7.	Objective and rationale
8.	Existence of international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9.	Relevant documents and language(s) in which these are available
10.	Proposed date of adoption
11.	Proposed date of entry into force
12.	Final date for comments and agency or authority handling comments
13.	Text available from :

b) 긴급 통보문

1.	Member notifying
2.	Agency responsible
3.	Products covered
4.	Regions or countries likely to be affected
5.	Title, language and number of pages of the notified document
6.	Description of content
7.	Objective and rationale
8.	Nature of the urgent problem(s) and reasons for urgent action
9.	Existence of international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10.	Relevant documents and language(s) in which these are available
11.	Date of entry into force/period of application
12.	Agency or authority designated to handle comments
13.	Text available from :

c) 동등성 인정 결정 통보문

1.	Member notifying
2.	Title of the text stating the determination of the recognition of equivalence
3.	Parties involved
4.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determination of the recognition of equivalence and any associated procedures or regulations
5.	Products covered
6.	Description of measures recognized to be equivalent
7.	Further information available from :

긴급 통보문이 아닌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영어 번역본을 활용하여 SPS 통보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한글, 영문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초 통보문 이후의 추가(Add.), 개정(Rev.), 수정(Corr.), Suppl. 등의 통보문은 아직 양식화되어있지 않으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여 한 쪽에 3개 언어로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나아가 통보된 조치의 원문을 제공하는 경우 원문이 영문인 경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번역이 가능하나, 기타 언어로 원문이 제공되는 경우는 국내에서 번역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5.2 WTO의 SPS조치 분류

WTO SPS협정에서 SPS조치란 회원국 영토내의 1)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²²⁾, 2)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²³⁾, 3)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²⁴⁾와 4)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²⁵⁾의 목적을 갖는 조치로 정의하였다.

한편, WTO SPS협정에 근거하여 SPS위원회에서 개발한 WTO SPS 일반 통보문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이 양식에는 통보국, 관할기관, 관련품목²⁶⁾, 영향 받는 지역, 조치의 제목과 언어, 쪽수, 주요내용, 목적, 국제표준 유무, 관련문서 공개장소, 공포일, 발효일, 의견접수기간 및 제출처, 문서 제공처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통보문으로부터 일차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는 통보국과 관할기관, 조치의 제목과 주요내용, 조치의 목적, 국제표준의 존재 여부, 의견 수렴기한 및 제출처, 문서 제공처 등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22)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23)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24)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또는

25)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26) WTO에 통보된 양허관세 계획에 따른 관련품목의 세번 및 가능한 경우 IC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Standards)번호 제공

표 17 정규 SPS 통보문의 세부 구성 요소

World Trade Organization

G/SPS/N/COUNTRY/
date of distribution
(##-####)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riginal:

NOTIFICATION

1.	Member to Agreement notifying: If applicable, name of local government involved:
2.	Agency responsible:
3.	Products covered (provide tariff item number(s) as specified in national schedules deposited with the WTO: ICS numbers should be provided in addition, where applicable):
4.	Regions or countries likely to be affected, to the extent relevant or practicable:
5.	Title, language and number of pages of the notified document:
6.	Description of content:
7.	Objective and rationale: <input type="checkbox"/> food safety, <input type="checkbox"/> animal health, <input type="checkbox"/> plant protection, <input type="checkbox"/> protect humans from animal/plant pest or disease, <input type="checkbox"/> protect territory from other damage from pests
8.	International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input type="checkbox"/>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input type="checkbox"/>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input type="checkbox"/>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nput type="checkbox"/> None If an international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exists, give the appropriate reference and briefly identify deviations:
9.	Relevant documents and language(s) in which these are available:
10.	Proposed date of adoption:
11.	Proposed date of entry into force:
12.	Final date for comments: Agency or authority designated to handle comments: <input type="checkbox"/> National notification authority, <input type="checkbox"/> National enquiry point, or address, fax number and E-mail address (if available) of other body:
13.	Texts available from: <input type="checkbox"/> National notification authority, <input type="checkbox"/> National enquiry point, or address, fax number and E-mail address (if available) of other body:

그러나 실제 통보문에서 관련 품목을 HS code로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일반적인 용어(예, 란 및 란 가공품, 식육제품, 유 및 유제품, 사료 첨가물 등)로만 품목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조치의 목적과 정당성(objective and rationale)으로 식품안전(food safety), 동물건강(animal health), 식물보호(plant protection), 동물 또는 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국민의 보호(protect humans from animal/plant pest or disease) 및 해충의 다른 피해로부터 국토보호(protect territory from other damage from pests)의 5종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SPS 조치의 분류는 통보국가, 대상품목 및 조치의 목적의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매년 WTO SPS위원회 사무국은 SPS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한 종합보고서²⁷⁾를 제출하고 있다. 2006년의 보고서는 논의사항을 식품안전, 식물보호, 기타사안(인증요건 또는 번역)과 동물건강 및 인수공통전염병(zoonoses)로 일차적인 구분을 하고 있다. 또한, 동물건강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하여는 2차 구분으로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 소해면상뇌증(광우병,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을 포함하는 전염성해면상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s),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및 기타 동물건강사안(other animal health concerns, OAH)으로 분류 다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5.3 OIE의 분류

세계수역사무국(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은 육상동물보건규정(th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육상동물의 진단 시험과 백신 지침(the Manual of Diagnostic Tests and Vaccines for Terrestrial Animals), 수생동물보건규정(the Aquatic Animal Health Code) 및 수생동물의 진단 시험 지침(the Manual of Diagnostic Tests for Aquatic Animals)을 동물의 안전을 위한 국제표준으로 개발하였다. 육상동물보건규정은 4부(part) 27개 section, 153개 장 또는 부록(chapter/appendix)로 되어 있다. 가축의 질병은 복합질병, 소, 양 및 염소, 말, 돼지, 조류, 토끼, 벌 및 기타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표 18 육상동물보건규정

Part	Section	장/부록	제목
1	GENERAL PROVISIONS		
	1.1.		GENERAL DEFINITIONS AND NOTIFICATION OF ANIMAL DISEASES
		C. 1.1.1.	General definitions

27) WTO, 2006, SPECIFIC TRADE CONCERNS (G/SPS/GEN/204/Rev.6)

Part	Section	장/부록	제목
	1.2.	C. 1.1.2.	Notification of diseases and epidemiological information
			OBLIGATIONS AND ETHICS IN INTERNATIONAL TRADE
		C. 1.2.1.	General obligations
		C. 1.2.2.	Certification procedures
	1.3.		RISK ANALYSIS
		C. 1.3.1.	General considerations
		C. 1.3.2.	Guidelines for import risk analysis
		C. 1.3.3.	Evaluation of Veterinary Services
		C. 1.3.4.	Guidelines for the evaluation of Veterinary Services
		C. 1.3.5.	Zoning and compartmentalisation
		C. 1.3.6.	Guidelines for reaching a judgement of equivalence of sanitary measures
	1.4.		IMPORT/EXPORT PROCEDURES
		C. 1.4.1.	Animal health measures applicable before and at departure
		C. 1.4.2.	Animal health measures applicable during transit from the place of departure in the exporting country to the place of arrival in the importing country
		C. 1.4.3.	Border posts and quarantine stations in the importing country
		C. 1.4.4.	Animal health measures applicable on arrival
		C. 1.4.5.	International transfer and laboratory containment of animal pathogens
		C. 1.4.6.	Quarantine measures applicable to non-human primates
	1.5.		RISK ANALYSIS FOR BIOLOGICALS FOR VETERINARY USE
		C. 1.5.1.	General considerations
		C. 1.5.2.	Risk analysis for veterinary vaccines
		C. 1.5.3.	Risk analysis for biologicals for veterinary use other than vaccines
2			RECOMMENDATIONS APPLICABLE TO SPECIFIC DISEASES
	2.1.		OIE LISTED DISEASES
		C. 2.1.1.	Criteria for listing diseases
	2.2.		MULTIPLE SPECIES DISEASES
		C. 2.2.1.	Anthrax
		C. 2.2.2.	Aujeszkys disease
		C. 2.2.3.	Echinococcosis/hydatidosis
		C. 2.2.4.	Leptospirosis
		C. 2.2.5.	Rabies
		C. 2.2.6.	Paratuberculosis
		C. 2.2.7.	Heartwater
		C. 2.2.8.	New world screwworm (<i>Cochliomyia hominivorax</i>) and old world screwworm (<i>Chrysomya bezziana</i>)
		C. 2.2.9.	Trichinellosis (<i>Trichinella spiralis</i>)
		C. 2.2.10.	Foot and mouth disease
		C. 2.2.11.	Vesicular stomatitis
		C. 2.2.12.	Rinderpest
		C. 2.2.13.	Bluetongue
		C. 2.2.14.	Rift valley fever
		C. 2.2.15.	Japanese encephalitis

Part	Section	장/부록	제목
		C. 2.2.16.	Tularemia
	2.3.		CATTLE DISEASES
		C. 2.3.1.	Bovine brucellosis
		C. 2.3.2.	Bovine genital campylobacteriosis
		C. 2.3.3.	Bovine tuberculosis
		C. 2.3.4.	Enzootic bovine leukosis
		C. 2.3.5.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infectious pustular vulvovaginitis
		C. 2.3.6.	Trichomonosis
		C. 2.3.7.	Bovine anaplasmosis
		C. 2.3.8.	Bovine babesiosis
		C. 2.3.9.	Bovine cysticercosis
		C. 2.3.10.	Dermatophilosis
		C. 2.3.11.	Theileriosis
		C. 2.3.12.	Haemorrhagic septicaemia (<i>Pasteurella multocida</i> serotypes 6:b and 6:e)
		C. 2.3.13.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C. 2.3.14.	Lumpy skin disease (caused by group III virus, type Neethling)
		C. 2.3.15.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2.4.		SHEEP AND GOAT DISEASES
		C. 2.4.1.	Ovine epididymitis (<i>Brucella ovis</i>)
		C. 2.4.2.	Caprine and ovine brucellosis (excluding <i>Brucella ovis</i>)
		C. 2.4.3.	Contagious agalactia
		C. 2.4.4.	Caprine arthritis/encephalitis
		C. 2.4.5.	Maedi-visna
		C. 2.4.6.	Contagious caprine pleuropneumonia
		C. 2.4.7.	Enzootic abortion of ewes (Ovine chlamydiosis)
		C. 2.4.8.	Scrapie
		C. 2.4.9.	Peste des petits ruminants
		C. 2.4.10.	Sheep pox and goat pox
	2.5.		EQUINE DISEASES
		C. 2.5.1.	Contagious equine metritis
		C. 2.5.2.	Dourine
		C. 2.5.3.	Equine encephalomyelitis (Eastern and Western)
		C. 2.5.4.	Equine infectious anaemia
		C. 2.5.5.	Equine influenza
		C. 2.5.6.	Equine piroplasmosis
		C. 2.5.7.	Equine rhinopneumonitis
		C. 2.5.8.	Glanders
		C. 2.5.9.	Horse pox
		C. 2.5.10.	Equine viral arteritis
		C. 2.5.11.	Horse mange
		C. 2.5.12.	Venezuelan equine encephalomyelitis
		C. 2.5.13.	Epizootic lymphangitis
		C. 2.5.14.	African horse sickness
	2.6.		SWINE DISEASES

Part	Section	장/부록	제목
		C. 2.6.1.	Atrophic rhinitis of swine
		C. 2.6.2.	Porcine brucellosis
		C. 2.6.3.	Enterovirus encephalomyelitis (previously Teschen/Talfan disease)
		C. 2.6.4.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C. 2.6.5.	Swine vesicular disease
		C. 2.6.6.	African swine fever
		C. 2.6.7.	Classical swine fever
	2.7.		AVIAN DISEASES
		C. 2.7.1.	Infectious bursal disease (Gumboro disease)
		C. 2.7.2.	Marek's disease
		C. 2.7.3.	Avian mycoplasmosis (<i>Mycoplasma gallisepticum</i>)
		C. 2.7.4.	Avian chlamydiosis
		C. 2.7.5.	Fowl typhoid and pullorum disease
		C. 2.7.6.	Avian infectious bronchitis
		C. 2.7.7.	Avian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C. 2.7.8.	Avian tuberculosis
		C. 2.7.9.	Duck virus hepatitis
		C. 2.7.10.	Duck virus enteritis
		C. 2.7.11.	Fowl cholera
		C. 2.7.12.	Avian influenza
		C. 2.7.13.	Newcastle disease
	2.8.		LAGOMORPH DISEASES
		C. 2.8.1.	Myxomatosis
		C. 2.8.2.	Rabbit haemorrhagic disease
	2.9.		BEE DISEASES
		C. 2.9.1.	Acarapisosis of honey bees
		C. 2.9.2.	American foulbrood of honey bees
		C. 2.9.3.	European foulbrood of honey bees
		C. 2.9.4.	Varroosis of honey bees
		C. 2.9.5.	<i>Tropilaelaps</i> infestation of honey bees
	2.10.		OTHER DISEASES
		C. 2.10.1.	Zoonoses transmissible from non-human primates
		C. 2.10.2.	<i>Salmonella enteritidis</i> and <i>Salmonella typhimurium</i> in poultry
3	APPENDICES		
	3.1.		DIAGNOSTIC TESTS FOR INTERNATIONAL TRADE PURPOSES
		A. 3.1.1.	Prescribed and alternative diagnostic tests for OIE listed diseases
	3.2.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SEMEN
		A. 3.2.1.	Bovine and small ruminant semen
		A. 3.2.2.	Porcine semen
	3.3.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EMBRYOS/OVA
		A. 3.3.1.	<i>In vivo</i> derived embryos
		A. 3.3.2.	<i>In vitro</i> fertilised bovine embryos/ <i>in vitro</i> maturing oocytes
		A. 3.3.3.	Micromanipulated bovine embryos
		A. 3.3.4.	Laboratory rodent and rabbit embryos/ova

Part	Section	장/부록	제목
		A. 3.3.5.	Categorisation of diseases and pathogenic agents by the International Embryo Transfer Society
	3.4.		BIOSECURITY IN ESTABLISHMENTS
		A. 3.4.1.	Hygiene and disease security procedures in poultry breeding flocks and hatcheries
		A. 3.4.2.	Hygiene and disease security procedures in apiaries
	3.5.	A. 3.4.3.	Hygiene precautions, identification, blood sampling and vaccination
			IDENTIFICATION AND TRACEABILITY OF LIVE ANIMALS
	3.6.	A. 3.5.1.	General principles
			INACTIVATION OF PATHOGENS AND VECTORS
		A. 3.6.1.	General recommendations on disinfection and disinsectisation
		A. 3.6.2.	Foot and mouth disease virus inactivation procedures
		A. 3.6.3.	Procedures for the reduction of infectivity of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s
		A. 3.6.4.	Classical swine fever virus inactivation procedures
		A. 3.6.5.	Guidelines for the inactivation of the avian influenza virus
		A. 3.6.6.	General guidelines for the disposal of dead animals
	3.7.		ANIMAL WELFARE
		A. 3.7.1.	Introduction to the guidelines for animal welfare
		A. 3.7.2.	Guideline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sea
		A. 3.7.3.	Guideline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and
		A. 3.7.4.	Guideline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air
		A. 3.7.5.	Guidelines for the slaughter of animals
		A. 3.7.6.	Guidelines for the killing of animals for disease control purposes
	3.8.		GENERAL GUIDELINES AND SURVEILLANCE FOR SPECIFIC DISEASES
		A. 3.8.1.	General guidelines for animal health surveillance
		A. 3.8.2.	Surveillance for rinderpest
		A. 3.8.3.	Surveillance for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A. 3.8.4.	Surveillance f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 3.8.5.	Factors to consider in conducting th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risk assessment recommended in Chapter 2.3.13.
		A. 3.8.6.	Principles for recognising a country or zone historically free from scrapie
		A. 3.8.7.	Guidelines for the surveillance of foot and mouth disease
		A. 3.8.8.	Guidelines for the surveillance of classical swine fever
		A. 3.8.9.	Guidelines for the surveillance of avian influenza
	3.9.		ANTIMICROBIAL RESISTANCE
		A. 3.9.1.	Guidelines for the harmonisation of nation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and monitoring programmes
		A. 3.9.2.	Guidelines for the monitoring of the quantities of antimicrobials used in animal husbandry
		A. 3.9.3.	Guidelines for the responsible and prudent use of antimicrobial agents in veterinary medicine
		A. 3.9.4.	Risk assessment for antimicrobial resistance arising from the use of antimicrobials in animals
	3.10.		ANIMAL PRODUCTION FOOD SAFETY
		A. 3.10.1.	Guidelines for the control of biological hazards of animal health and public

Part	Section	장/부록	제목
			health importance through ante- and post-mortem meat inspection
4			MODEL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S
	4.1.		MODEL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S FOR LIVE ANIMALS
		A. 4.1.1.	Model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for dogs and cats originating from rabies infected countries
		A. 4.1.2.	Model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for domestic or wild animals of the bovine, bubaline, ovine, caprine or porcine species
		A. 4.1.3.	Model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for semen of animals of the bovine, bubaline, equine, ovine, caprine or porcine species
		A. 4.1.4.	Model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for equines
		A. 4.1.5.	Model passport for international movement of competition horses
		A. 4.1.6.	Model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for birds
		A. 4.1.7.	Model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for day-old birds and hatching eggs
		A. 4.1.8.	Model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for rabbits
		A. 4.1.9.	Model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for bees and brood-combs
	4.2.		MODEL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FOR PRODUCTS OF ANIMAL ORIGIN
		A. 4.2.1.	Model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for meat of domestic animals of the bovine, bubaline, equine, ovine, caprine or porcine species or of poultry
		A. 4.2.2.	Model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for products of animal origin destined for use in animal feeding, or for agricultural or industrial or pharmaceutical or surgical use

한편, OIE는 이러한 표준 이외에도 정보 수집 대상 질병을 다음의 표와 같이 2005년에 정하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통보, 반기별 보고 및 연간 설문지 등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경보(alert message), 구간 질병발생정보(weekly disease information) 및 Handistatus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표 19 OIE 통보 질병 목록

다종간 질병	소 질병(Cattle diseases)
- Anthrax	- Bovine anaplasmosis
- Aujeszky's disease	- Bovine babesiosis
- Echinococcosis/hydatidosis	- Bovine brucellosis
- Heartwater	- Bovine genital campylobacteriosis
- Leptospirosis	- Bovine tuberculosis
- Q fever	- Bovine cysticercosis
- Rabies	- Dermatophilosis
- Paratuberculosis	- Enzootic bovine leukosis
- New world screwworm (<i>Cochliomyia hominivorax</i>)	- Haemorrhagic septicaemia
- Old world screwworm (<i>Chrysomya bezziana</i>)	-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infectious pustul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ichinellosis - Foot and mouth disease - Vesicular stomatitis - Lumpy skin disease - Bluetongue - Rift Valley fe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vulvovaginitis - Theileriosis - Trichomonosis - Trypanosomosis (tsetse-transmitted) - Malignant catarrhal fever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Rinderpest -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p style="text-align: center;">양 및 염소 질병(Sheep and goat disea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vine epididymitis (<i>Brucella ovis</i>) - Caprine and ovine brucellosis (excluding <i>B. ovis</i>) - Caprine arthritis/encephalitis - Contagious agalactia - Contagious caprine pleuropneumonia - Enzootic abortion of ewes (<i>Ovine chlamydiosis</i>) - Ovine pulmonary adenomatosis - Nairobi sheep disease - Salmonellosis (<i>S. abortusovis</i>) - Scrapie - Maedi-visna - Peste de petits ruminants - Sheep pox and goat pox 	<p style="text-align: center;">말 질병(Equine disea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agious equine metritis - Dourine - Epizootic lymphangitis - Equine encephalomyelitis (Eastern and Western) - Equine infectious anaemia - Equine influenza - Equine piroplasmosis - Equine rhinopneumonitis - Glanders - Horse pox - Equine viral arteritis - Japanese encephalitis - Horse mange - Surra (<i>Trypanosoma evansi</i>) - Venezuelan equine encephalomyelitis
<p style="text-align: center;">돼지 질병(Swine disea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rophic rhinitis of swine - Porcine cysticercosis - Porcine brucellosis -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 Enterovirus encephalomyelitis -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 Swine vesicular disease - African swine fever - Classical swine fever 	<p style="text-align: center;">조류 질병(Avian disea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ian infectious bronchitis - Avian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 Avian tuberculosis - Duck virus hepatitis - Duck virus enteritis - Fowl cholera - Fowl pox - Fowl typhoid - Infectious bursal disease (Gumboro disease) - Marek's disease - Avian mycoplasmosis (<i>M. synoviae</i>) - Avian chlamydiosis - Pullorum disease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Newcastle disease
<p style="text-align: center;">토끼류 질병(Lagomorph disea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xomatosis - Tularemia - Rabbit haemorrhagic disease 	<p style="text-align: center;">벌 질병(Bee disea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arapisosis of honey bees - American foulbrood of honey bees - European foulbrood of honey bees - Varroosis of honey bees - Tropilaelaps infestation of honey bees

어류 질병(Fish diseases)	연체어류 질병(Mollusc dise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izootic haematopoietic necrosis - Infectious haematopoietic necrosis - Oncorhynchus masou virus disease - Spring viraemia of carp - 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 Channel catfish virus disease - Viral encephalopathy and retinopathy - Infectious pancreatic necrosis - Infectious salmon anaemia - Epizootic ulcerative syndrome - Bacterial kidney disease (<i>Renibacterium salmoninarum</i>) - Enteric septicaemia of catfish (<i>Edwardsiella ictaluri</i>) - Piscirickettsiosis (<i>Piscirickettsia salmonis</i>) - Gyrodactylosis (<i>Gyrodactylus salaris</i>) - Red sea bream iridoviral disease - White sturgeon iridoviral dise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ection with <i>Bonamia ostreae</i> - Infection with <i>Bonamia exitiosus</i> - Infection with <i>Mikrocytos roughleyi</i> - Infection with <i>Mikrocytos nelsoni</i> - Infection with <i>Marteilia refringens</i> - Infection with <i>Mikrocytos sydneyi</i> - Infection with <i>Mikrocytos mackini</i> - Infection with <i>Perkinsus marinus</i> - Infection with <i>Perkinsus olseni/atlanticus</i> - Infection with <i>Haplosporidium costale</i> - Infection with <i>Candidatus Xenohalictis californiensis</i>
갑각류 질병(Crustacean diseases)	기타(Other disea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ura syndrome - White spot disease - Yellowhead disease - Tetrahedral baculovirus (<i>Baculovirus penaei</i>) - Spherical baculovirus (<i>Penaeus monodon-type baculovirus</i>) -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 Crayfish plague (<i>Aphanomyces astaci</i>) - Spawner-isolated mortality virus dise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ishmaniosis

3.5.4 IPPC의 분류

IPPC는 OIE 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는 달리 대상에 상품대한 국제표준을 정하기 보다는 지역 식물보호기구와 지역 표준을 정한다. IPPC에서 채택된 표준은 총 27개로서 표 17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IPPC에서는 주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특정 병·해충 또는 특정 제품에 대한 규정은 과실파리(ISPM 26번) 및 목재포장재(ISPM 15번)관련 국제표준이외에는 없다. 이마저도 ISPM 26번은 2006년에, ISPM 15번은 2002년 처음 채택되어 아직 많은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표 20 IPPC 채택 식물보호 국제표준 목록

ISPM 번호	제 목	최종 채택일
01	Phytosanitary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lants and the application of phytosanitary measures in international trade	2006
02	Guidelines for pest risk analysis	1995
03	Guidelines for the export, shipment, import and release of biological control agents and other beneficial organisms	2005
04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Pest Free Areas	1995
05	Glossary of phytosanitary terms	2006
06	Guidelines for surveillance	1997
07	Export certification system	1997
08	Determination of pest status in an area	1998
09	Guidelines for pest eradication programmes	1998
10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pest free places of production and pest free production sites	1999
11	Pest risk analysis for quarantine pests including analysis of environmental risks and living modified organisms	2004
12	Guidelines for phytosanitary certificates	2001
13	Guidelines for the notification of non-compliance and emergency action	2001
14	The use of integrated measures in a systems approach for pest risk management	2002
15	Guidelines for regulating wood packaging material in international trade with modifications to Annex I (2006)	2002
16	Regulated non-quarantine pests: concept and application	2002
17	Pest reporting	2002
18	Guidelines for the use of irradiation as a phytosanitary measure	2003
19	Guidelines on lists of regulated pests	2003
20	Guidelines for a phytosanitary import regulatory system	2004
21	Pest risk analysis for regulated non quarantine pests	2004
22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reas of low pest prevalence	2005
23	Guidelines for inspection	2005
24	Guidelines for the determination and recognition of equivalence of phytosanitary measures	2005
25	Consignments in transit	2006
26	Establishment of pest free areas for fruit flies (Tephritidae)	2006
27	Diagnostic protocols for regulated pests	2006

3.5.5 WCO 및 ISO의 품목 분류

WTO SPS통보문에서 대상품목을 통보하는데 있어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에서 개발한 조화코드(harmonized system, HS코드)²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HS 코드는 상품 무역에 있어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품목 분류로서 세계적으로 6단위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4단위를 추가하여 10단위로 품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HS코드의 단위구분은 아래와 같다.

- 2단위 : 부류구분(부류 전체 표시 : <예> 산동물)
- 4단위 : 품목종류 표시
- 6단위 : 개별 품목 분류 (전세계 6단위 공통코드 분류)
- 10단위 : 개별품목 추가 상세분류 (해당국 상세분류)

표 21 HS 코드 및 설명

HS코드	종 류
[01]	살아있는 동물
[0101]	살아있는 말, 당나귀, 노새 및 버새
[0102]	살아있는 소과의 동물
[0103]	살아있는 돼지
[0104]	살아있는 양 및 염소
[0105]	살아있는 가금(家禽)류,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뿔 닭"
[0106]	살아있는 동물 (제외: 말, 당나귀, 노새, 버새, 소과의 동물, 돼지, 양, 염소, 가금류, 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 및 배양균 등)
[02]	육류와 식용 육류 부산물
[0201]	쇠고기: 신선한 고기 또는 냉장육
[0202]	쇠고기: 냉동육
[0203]	돼지고기: 신선한 고기, 냉장육 또는 냉동육
[0204]	양 또는 염소 고기: 신선한 고기, 냉동육 및 냉장육
[0205]	말, 당나귀, 노새, 버새의 고기: 신선한 고기, 냉동육 및 냉장육
[0206]	소, 돼지, 양, 염소, 말, 당나귀, 노새 또는 버새의 식용 부산물: 신선한 고기, 냉동육 및 냉장육
[0207]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뿔닭의 고기 및 식용 부산물: 신선한 고기, 냉동육 및 냉장육
[0208]	집토끼, 산토끼, 비둘기 또는 기타 동물의 고기 및 식용 부산물: 신선한 고기, 냉장육 또는 냉동육 (제외: 소, 돼지, 양, 염소, 말, 당나귀, 노새, 버새, 가금(家禽)류,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뿔닭의 고기 및 식용 부산물)

28) <http://www.wcoomd.org/ie/EN/en.html>

HS코드	종 류
[0209]	만들어지거나 추출되지 않은 돼지 지방: 살코기 제외 및 가금류 지방: 신선한 고기, 냉동육, 냉장육, 소금에 절인, 소금물에 절인, 건조 시킨 또는 훈제한 상태
[0210]	고기와 식용 부산물: 소금에 절인, 소금물에 절인, 건조 시킨 또는 훈제한 상태: 고기 또는 고기 부산물의 식용 뼈는 가루 또는 굵은 가루
[03]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 무척추 동물
[0301]	살아있는 어류
[0302]	신선한 또는 냉장 어류(제외: 어류 필릿 및 기타 어류 머리 부분 고기)
[0303]	냉동 어류(제외: 어류 필릿 및 기타 어류 머리 부분 고기)
[0304]	생선 필릿 및 기타 어류 고기: 썰어져 있건 아니건, 살아있는, 냉장 또는 냉동 상태
[0305]	사람의 소비를 위한 건조시킨, 소금에 절인 또는 소금물에 절인 어류: 훈제 어류, 사람의 소비를 위한, 훈제 전이나 도중에 요리를 했건 안했건 상관없이: 사람의 소비를 위한 어류의 뼈는 가루, 굵은 가루
[0306]	사람의 소비를 위한 갑각류: 껍질이 있든 없던, 살아 있는, 신선한, 냉장, 냉동, 건조, 소금에 절인 또는 소금물에 절인 상태(포함: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요리 전에 찌거나 물에 끓인 갑각류: 사람의 소비를 위한 어류의 뼈는 가루, 굵은 가루
[0307]	사람의 소비를 위한 연체동물: 껍질이 있든 없던, 살아 있는, 신선한, 냉장, 냉동, 건조, 소금에 절인 또는 소금물에 절인 상태(포함: 수생 무척추 동물: 사람의 소비를 위한 갑각류를 제외한 수생 무척추 동물의 뼈는 가루, 굵은 가루
[04]	유제품, 계란, 벌꿀, 식용 동물성 생산물
[0401]	우유 및 크림: 농축되어 있지 않으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지 않은 상태
[0402]	우유 및 크림: 농축되어 있거나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는 상태
[0403]	탈지유, 응고된 우유나 크림, 요구르트, képhir 및 기타 발효식품 또는 산성화된 우유 및 크림: 농축되어 있거나 조미료, 설탕, 과일, 견과류, 코코아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했던 안했던 상관없음
[0404]	유장(乳漿): 제품은 자연 우유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축되어 있거나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했던 안했던 상관없음
[0405]	버터(포함: 우유로부터 얻은 탈수 버터, 기(버터기름), 기타 지방 및 유지)
[0406]	치즈 및 응유
[0407]	새의 알: 껍질 안에 있거나 신선하거나 보존 가공되어 있거나 요리되어 있는 상태
[0408]	새의 알: 껍질 안에 있지 않거나 알의 노른자, 신선하거나, 건조되어 있거나 찌거나 물에 끓여서 요리 했거나 형태를 만들었거나 냉동 혹은 기타 보존 가공: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했던 안했던 상관없음
[0409]	천연 벌꿀
[0410]	거북이 알, 새의 동지 및 동물성 생산물의 기타 식용 물질
[05]	그 외의 동물성 생산물
[0502]	어린 돼지, 거세 돼지 또는 거세되지 않은 돼지의 강모 및 머리털: 오소리 및 기타 솔을 만들 수 있는 머리털 또는 강모 및 머리털의 부산물
[0504]	동물의 내장, 낭 및 위(어류 제외)의 일부분 및 전체: 신선한, 냉장, 냉동, 소금에 절인, 소금물에 절인, 건조된 또는 훈제된 상태
[0505]	깃털이나 솜털깃을 포함한 새의 가죽 및 일부분: 끝 부분을 손질했던 안했던 상관없이 깃털의 부분 혹은 전체, 혹은 솜털깃, 내장을 뺀 상태, 보존을 위한 소독 및 약품처리를 한 상태: 깃털의 부분 혹은 깃털의 부산물 및 분말
[0506]	뼈, 뿔, 이것의 분말 및 부산물: 가공되지 않은, 지방질 제거한, 간단히 미리 가공된(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절단하지 않음), 산으로 처리되거나 젤라틴화 되지 않은 상태

HS코드	종 류
[0507]	상아질, 거북 껍질, 고래수염 및 털, 뿔, (사슴의) 가지로 갈라진 뿔, 발굽, 발톱, 갈고리 발톱 및 부리, 가공되지 않았거나 간단히 미리 가공된(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절단하지 않음): 이것의 분말 및 부산물
[0508]	산호 및 유사 물질, 연체동물의 껍질, 갑각류 또는 크피동물, 오징어 뼈, 이것의 분말 및 부산물, 가공되지 않았거나 간단히 미리 가공된(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절단하지 않음): 이것의 분말 및 부산물
[0511]	동물 생산물: 사람의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죽은 동물
[06]	살아 있는 수목, 식물, 구근(球根), 뿌리, 절화
[0601]	구근(球根), 괴경(塊莖), 괴경 뿌리, 구경(球莖), 수관(樹冠), 뿌리줄기, 치커리 식물 및 뿌리: 발육 정지 중인, 성장 중 또는 개화한 상태 (제외: 사람의 소비를 위한 구근(球根), 괴경(塊莖), 괴경 뿌리 및 치커리 뿌리)
[0602]	살아있는 식물(포함: 잘려졌거나 상품의 질이 떨어진 이것의 뿌리), 버섯 균사체(제외: 구근(球根), 괴경(塊莖), 괴경 뿌리, 구경(球莖), 수관(樹冠), 뿌리줄기 및 치커리 식물 및 뿌리)
[0603]	장식용 및 꽃다발에 적합한 종류의 잘려진 꽃 및 꽃봉오리: 신선한, 건조된, 염색된, 표백된, 수정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상태
[0604]	장식용 및 꽃다발에 적합한 종류의 꽃 또는 꽃봉오리가 없는 잎, 가지와 식물의 다른 부분, 목초, 이끼, 지의류: 신선한, 건조된, 염색된, 표백된, 수정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상태
[07]	식용 채소, 뿌리 및 괴경(塊莖)
[0701]	감자: 신선하거나 냉장된 상태
[0702]	토마토: 신선하거나 냉장된 상태
[0703]	양파, 셀러트, 마늘, 리크 및 파속(屬)의 채소: 신선하거나 냉장된 상태
[0704]	양파, 꽃양배추, 콜라비, 케일 및 유사 종류의 식용 양배추: 신선하거나 냉장된 상태
[0705]	양상추 및 치커리: 신선하거나 냉장된 상태
[0706]	당근, 순무, 샐러드용 근대 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악, 무 및 유사 종류의 식용 뿌리: 신선하거나 냉장된 상태
[0707]	오이 및 작은 오이: 신선하거나 냉장된 상태
[0708]	껍질이 있는 또는 없는 콩과의 채소: 신선하거나 냉장된 상태
[0709]	기타 채소(제외: 감자, 토마토, 파속의 채소, 식용 양배추, 양상추 및 치커리, 당근, 순무, 샐러드용 근대 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악, 무 및 유사 종류의 식용 뿌리, 오이 및 작은 오이, 콩과의 채소): 신선하거나 냉장된 상태
[0710]	요리되지 않았거나 물로 끓이거나 찌서 요리된 채소: 냉동 상태
[0711]	즉각적인 소비에 적합하기 않은 상태로 일시적으로 보존된 채소(유황 이산화물 가스, 소금물에 절인, 유탕수에 넣은 또는 기타 보존 방법을 사용)
[0712]	전체, 잘려지거나 조각내진, 부서지거나 분말 상태의 건조된 채소: 하지만 다른 가공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0713]	껍질이 있는 건조된 콩과의 채소: 쪄개져있거나 표면이 아니라도 상관없음
[0714]	조각으로 되어 있던, 가루의 형태이던 상관없이 뿌리 및 카사바의 괴경(塊莖), 칩, 샐림, 둥근 딱지, 고구마 및 높은 녹말 또는 이눌린 함유량을 가진 유사 뿌리 및 괴경: 신선한, 냉장된, 냉동 또는 건조된 상태
[08]	식용 과일, 견과류, 감귤류의 껍질, 멜론
[0801]	껍질이 있거나 껍질이 벗겨져 있는 코코넛, 브라질너트 및 캐슈너트: 신선하거나 건조된 상태
[0802]	껍질이 있거나 껍질이 벗겨져 있는 기타 견과류(제외: 코코넛, 브라질너트 및 캐슈너트): 신선하거나 건조된 상태
[0803]	바나나(포함: 질경이): 신선하거나 건조된 상태

HS코드	종 류
[0804]	대추,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 신선하거나 건조된 상태
[0805]	감귤류 과일: 신선하거나 건조된 상태
[0806]	포도: 신선하거나 건조된 상태
[0807]	멜론(포함: 수박 및 파파야): 신선한 상태
[0808]	사과, 배 및 모과: 신선한 상태
[0809]	살구나무, 체리, 복숭아(포함: 승도, 자두 및 자두류): 신선한 상태
[0810]	신선한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회거나 붉은 건포도, 구스베리 및 기타 식용 과일(제외: 건과류, 바나나, 대추,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 파파야, 감귤류 과일, 포도, 멜론, 사과, 배, 모과, 살구나무, 체리, 복숭아, 자두 및 자두류)
[0811]	요리되지 않았거나 물에 끓이거나 찌서 요리된 과일 및 건과류(설탕 또는 감미료를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 상관없음): 냉동 상태
[0813]	건조된 살구, 말린 자두, 사과, 복숭아, 배, 파파야, 타마린드 및 기타 식용 과일 및 식용 견과류 또는 건조된 과일의 혼합(제외: 혼합되지 않은 상태의 견과류, 바나나, 대추,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감귤류 과일 및 포도)
[09]	커피, 차, 마테차(茶)와 향신료
[0901]	구운 상태거나 카페인이 제거된 상태 커피, 커피 껍질 및 외피, 임의의 비율로 커피를 포함하고 있는 커피 대용품
[0902]	조미료가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차
[0904]	후추: 건조되어 있거나 부서져 있거나 고추 또는 피멘타의 토양 식물
[0905]	바닐라
[0907]	정향과 줄기를 포함한 과일 전체
[0910]	생강, 사프란, 심황, 사향초, 월계수 잎, 커리 및 기타 종(제외: 후추, 고추, 피멘타, 바닐라, 계피(桂皮), 계피나무 꽃, 정향 과일 전체, 정향 줄기, 육두구(肉豆), 육두구 가루, 카르다몸, 아니스의 씨, 바디안, 회향(茴香), 고수풀, 쿠민, 캐러웨이 및 주니퍼베리)
[10]	곡물
[1001]	밀과 메실린
[1002]	호밀
[1003]	보리
[1004]	귀리
[1005]	옥수수
[1006]	쌀
[1007]	수수
[1008]	메밀, 기장, 카나리아 씨 및 기타 곡물 (제외: 밀 및 메실린,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쌀 및 수수)
[11]	도정(搗精) 생산물, 엿기름, 녹말 식품, 이눌린, 밀의 글루텐
[1101]	밀 또는 메실린 가루
[1102]	곡물 가루 (제외: 밀 또는 메실린)
[1103]	곡물 그로트, 굵은 가루
[1104]	다르게 처리된 곡물 알곡 (예: 겉껍질이 벗겨진, 눌린, 얇은 조각으로 된, 작은 알갱이로 만들거나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 및 눌린, 얇은 조각으로 되어있거나 뿔은 곡물의 싹의 전체(제외: 곡물 가루 및 껍질은 깎, 완전히 또는 반 정도만 제분되어 있는 쌀 또는 부서진 쌀)
[1106]	밀가루, 밀과 완두콩, 콩, 렌즈콩 및 다른 건조 콩과의 채소, 사고녹말, 카사바, 칩, 뽕단지, 고구마 및 높은 녹말 또는 이눌린 함유량을 가진 유사 뿌리 및 괴경의 윗부분의 가루, 및 8장의 식용 과일 및 견과류 농산물: 감귤류의 과일 및 멜론의 껍질을 벗긴 것

HS코드	종 류
[1108]	녹말: 이눌린
[1109]	건조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밀 글루텐
[12]	지방 종자, 채유용 과일 등
[1201]	부서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콩
[1202]	부서져 있거나 껍질에 싸여 있든 아니던 상관없이 제분된 견과류(제외: 구웠거나 다르게 요리된 상태)
[1203]	코프라
[1204]	부서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아마 씨
[1205]	부서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유채 또는 평지의 씨
[1206]	부서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해바라기 씨
[1207]	부서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기타 기름 씨 및 유질의 과일(제외: 식용 견과류, 올리브, 콩, 제분된 견과류, 코프라, 아마씨, 유채 또는 평지의 씨 및 해바라기 씨)
[1208]	기름 씨 또는 유질의 과일의 굵은 가루 및 빵은 가루
[1209]	파종을 위한 씨, 과일 및 종자 (제외: 향료, 약제를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살충, 살균 및 유사 목적을 위한 콩과의 채소 및 사탕 옥수수, 커피, 차, 마테차 및 향신료, 곡물, 기름 씨 및 유질의 과일과 씨 및 과일)
[1211]	실물 및 식물의 일부분(포함: 향료, 약제를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살충, 살균 및 유사 목적을 위한 씨 및 과일): 신선하거나 또는 건조된 상태지만 잘려져 있거나 몽개져있거나 혹은 가루 상태인지는 상관하지 않음
[1212]	아카시아 콩, 채초 및 기타 말, 사탕무 및 사탕수수 (신선하거나, 냉장 또는 냉동되어 있거나, 건조되어 있는 상태지만 가루 상태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음)와 과일 씨와 핵 및 기타 채소(포함: 사람의 소비를 위해 주로 쓰이는 종류의 굵지 않은 치커리 뿌리)
[1213]	미리 가공하지 않은 곡물의 짚 및 껍질: 잘려져 있거나 가루 상태, 눌러져 있거나 몽친 상태이든지 아니던지 상관없음
[1214]	몽쳐 있든 아니던 상관없는 스웨덴 순무, 비트, 마초 뿌리, 건초, 자주개자리, 토끼풀, 된장 풀, 마초 케일, 루핀, 야생 완두 및 유사 마초 생산물
[13]	랙, 고무, 수지, 식물성 수액 및 추출물
[1301]	랙: 자연산 고무, 수지, 고무-수지, 발상 수지 및 기타 자연 함유 수지
[1302]	채소 즙 및 추출물: 펄프 물질, 펙티네이트 및 펙테이트: 가공한 상태든 아니던 상관없는 우뚝가사리 및 기타 점액 및 채소 생산물로부터 추출한 농축
[14]	식물성 편조[編造] 재료와 다른 식물성 생성물
[1401]	엮어 만드는 물건을 만드는데 주로 쓰이는 채소 물질 (예: 대마우, 등(藤), 갈대, 등심초, 고리버들, 라피아, 완전한, 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짚, 및 라임 껍질)
[1404]	채소 생산물
[15]	동식물성 지방과 기름, 분해 생성물 등
[1501]	돼지 지방 (포함: 라드 및 가금(家禽) 지방, 정제유 또는 다르게 추출한 물질, 제외: 라드 스테아린 및 라드 기름)
[1502]	섞거나 유화 상태로 만들지 않고 다른 가공을 하지 않은 소과 동물, 양, 염소의 지방(제외: 라드 스테아린, 라드 오일, 오레오스테아린, 올레오 기름 및 우지(牛脂))
[1503]	라드 스테아린, 라드 오일, 오레오스테아린, 올레오 기름 및 우지(牛脂) (제외: 섞거나 유화 상태로 만들었거나 다른 가공을 한 상태)
[1504]	정제되어 있는지는 상관없이 지방, 기름과 어유 또는 해양 포유류의 일부분 (제외: 화학 처리가 된 것)
[1505]	양모 유지(油脂) 및 그에 대한 지방 추출물 (포함: 라놀린)

HS코드	종 류
[1506]	화학 처리를 제외한 정제 여부 상관없는 기타 동물 지방, 기름 (제외: 돼지 지방, 가금(家禽) 지방, 소과 동물, 양, 염소의 지방, 어류 및 기타 수생 동물의 지방, 라드 스테아린, 라드 오일, 오레오스테아린, 올레오 기름 및 우지(牛脂), 양모 유지(油脂) 및 그에 대한 지방 추출물)
[1507]	화학 처리를 제외한 정제 여부 상관없는 콩 기름
[1508]	화학 처리를 제외한 정제 여부 상관없는 가루 견과류 기름
[1509]	오로지 기계적인 또는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 품질의 저하가 없이 올리브 나무의 과일로부터 추출한 올리브기름, 단 화학 처리를 제외한 정제 여부 상관없음
[1510]	화학 처리를 제외한 정제 여부 상관없이 오로지 올리브로부터 추출한 기타 기름(포함: 추출된 오일 또는 부분의 혼합)
[1511]	화학 처리를 제외한 정제 여부 상관없이 야자열매 오일
[1512]	화학 처리를 제외한 정제 여부 상관없이 해바라기 씨, 잇꽃 또는 목화씨 오일
[1513]	화학 처리를 제외한 정제 여부 상관없이 코코넛, 야자열매 씨 또는 바바수 야자 오일
[1514]	화학 처리를 제외한 정제 여부 상관없이 유채, 평지 또는 겨자 오일
[1515]	화학 처리를 제외한 정제 여부 상관없이 응고된 채소 지방 및 기름 (포함: 호호바 기름), (제외: 콩, 가루 견과류, 올리브, 야자열매, 해바라기 씨, 잇꽃, 목화씨 오일, 코코넛, 야자열매 씨, 바바수야자, 유채, 평지 및 겨자 오일)
[1516]	정제 여부 상관없지만 더 이상의 전가공은 허용되지 않은 동물 또는 채소의 지방, 기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경화된, 상호-에스테르화된, 재-에스테르화된 상태
[1517]	마가린, 기타 식용 혼합물 또는 동식물 지방의 조제품, 다른 지방 또는 기름의 식용 부분(제외: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경화된, 상호-에스테르화된, 재-에스테르화된 상태의 정제 여부 상관없지만 더 이상의 전가공은 허용되지 않은 지방, 기름, 올리브기름과 그것의 혼합물)
[1518]	진공, 불활성 기체 상태에서의 열 또는 기타 화학 처리를 통해서 끓이거나, 산화되어있거나, 탈수 시켰거나, 변형됐거나, 중합된 동물 또는 채소의 지방, 기름, 식용 불가능한 혼합 또는 동물, 채소의 지방, 기름, 오일 또는 다른 지방의 부분 조제품
[1521]	채색 또는 정제하지 않은 채소 밀랍, 밀랍, 기타 곤충 밀랍 및 경랍(鯨蠟) (제외: 트리글리세리드)
[1522]	디그라스: 지방 물질, 동물, 야채 밀랍의 처리로 야기된 잔여물
[16]	육류, 어류 및 해산물 조제품
[1601]	고기, 부산물 또는 혈액으로 만든 소시지 및 유사 생산품: 이것의 생산물을 기본으로 한 음식 조제품
[1602]	미리 가공된 또는 보존된 고기, 부산물 또는 혈액 (제외: 소시지 및 유사 생산물, 고기 즙 및 분비액)
[1603]	어류, 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의 분비액 및 즙
[1604]	미리 가공된 또는 보존된 어류: 캐비아 및 어류의 알로부터 미리 가공된 캐리아 대체물
[1605]	미리 가공된 또는 보존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
[17]	설탕 및 설탕 과자
[1701]	줄기 또는 사탕무에서 얻은 고체 상태의 화학적 순수 자당(蔗糖)
[1702]	자연 벌꿀과의 혼합여부와는 상관없는 기타 당류 (포함: 고체 상태의 유당(乳糖),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 첨가제 또는 색소 물질을 넣지 않은 당류 시럽, 인공 벌꿀, 캐러멜)
[1703]	설탕의 정제 또는 추출로 얻은 당밀(糖蜜)
[1704]	코코아가 함유되지 않은 설탕 과자 (포함: 흰색 초콜릿)
[18]	코코아와 코코아 조제품
[1801]	구웠거나 또는 가공하지 않은 카카오 씨의 전체 또는 부서진 상태
[1804]	카카오 버너, 지방 및 기름

HS코드	종 류
[1805]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넣지 않은 카카오 가루
[1806]	초콜릿 및 기타 코코아를 포함한 음식 조제품
[19]	곡물, 밀가루, 녹말, 우유 조제품 및 생산품
[1901]	맥아(麥芽) 추출물: 밀가루, 귀리, 굵은 가루, 녹말 또는 코코아를 지방을 제거하여 계산한 무게의 40% 이하를 함유 하고 있거나 코코아를 함유 하고 있지 않은 맥아 추출물: 우유, 크림, 버터 우유, 신 우유, 신 크림, 유장, 요구르트, 및 지방을 제거하여 계산한 무게의 5 % 이하의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거나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유사 상품의 음식 조제품
[1902]	요리되었거나 고기나 기타 물질(스파게티, 마카로니, 국수, 라자나, 뇨키, 라비올리, 카넬로 니, 쿠스쿠스)로 채워져 있거나 전처리를 거쳤든지 아니든 상관없는 파스타
[1903]	얇은 조각, 결정 형태, 전형(典型), 체질된 형태 또는 유사 형태를 가지는 타피오카 및 녹말 로부터 얻은 대체품
[1904]	곡물 또는 곡물 생산물을 굽거나 팽창시켜 얻은 미리 가공된 음식(예: 낱알의 형태를 가지는 가공되거나 미리 요리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형태의 곡물), (제외: 밀가루, 귀리 및 굵은 가루)
[1905]	코코아 포함 여유는 상관없는 빵, 가루 반죽 과자, 케이크, 비스킷 및 기타 제과: 약제의 사양에 적합한 물질, 봉합지, 쌀 종이 및 유사 물질
[20]	채소, 과일, 견과류, 그 외 조제품
[2001]	식초 또는 아세트산으로 미리 가공되었거나 보존된 채소, 과일, 견과류 및 기타 식물의 식 용 부분
[2002]	식초 또는 아세트산으로 미리 가공되었거나 보존된 토마토
[2003]	식초 또는 아세트산으로 미리 가공되었거나 보존된 버섯 및 송로 버섯
[2004]	식초 또는 아세트산, 냉동으로 미리 가공되었거나 보존된 채소 (제외: 설탕으로 보존되었거나, 토마토, 버섯, 송로 버섯)
[2005]	식초 또는 아세트산, 냉동을 제외한 방법으로 미리 가공되었거나 보존된 그 외의 기타 채소 (제외: 설탕으로 보존되었거나, 토마토, 버섯, 송로 버섯)
[2006]	설탕에 의해 보존된 채소, 과일, 견과류, 껍질을 벗긴 과일 및 식물의 기타 식용 부분
[2007]	설탕 및 감미료 첨가 여부는 상관없는 요리를 통하여 얻은 잼, 과일 젤리, 마멀레이드, 과일 또는 견과류 푸레 및 과일 또는 견과류 밀가루 반죽
[2008]	설탕, 감미료 및 화주의 첨가 여부는 상관없는 미리 가공되거나 보존된 과일, 견과류 및 식 물의 기타 식용 부분 (제외: 식초에 의해서 보존되거나 미리 가공되었거나, 시럽이 포함되지 않은 설탕으로 보존되거나, 요리를 통하여 얻은 잼, 과일 젤리, 마멀레이드, 과일 푸레 및 밀가루 반죽)
[2009]	과일 즙 (포함: 발효되지 않은, 화주를 포함하지 않은 포도즙, 채소 즙, 설탕 또는 감미료 포함 여부는 상관하지 않음)
[21]	각종 식용 조제품
[2101]	커피, 차 또는 마테차, 이 생산물 또는 커피, 차 또는 마테차를 기본으로 만든 조제품, 추출 물, 에센스 및 농축액: 구운 치커리 및 기타 구운 커피 대체품 및 추출물, 에센스 및 농축액
[2102]	활동을 하지 않는 또는 활동하는 효모: 베이킹파우더 처리를 한 기타 죽은 단일 세포 미생 물 (제외: 약으로 분류되는 단일 세포 미생물)
[2103]	미리 가공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 소스 및 조제품: 겨자 가루와 같은 혼합된 조미료 및 양 념, 겨자
[2104]	스프, 묽은 스프, 조제품: 식품 조제품은 고기, 어류, 채소, 과일과 같은 두 가지 또는 그 이 상의 요를 혼합하여 이루어져 있으며 (250g 이하), 초기 단계의 음식 또는 식이성의 목적으 로 소매에 붙임
[2105]	코코아의 포함여부는 상관하지 않는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얼음
[2106]	음식 조제품
[22]	음료, 알코올 및 식초

HS코드	종 류
[2201]	물 (포함: 설탕 및 기타 감미료 및 조미료를 포함하지 않은 자연 또는 인공 무기물의 물 및 산화된 물, 얼음 및 눈)
[2202]	물 (포함: 설탕 및 기타 감미료 또는 조미료를 포함한 자연 또는 인공 무기물의 물 및 산화된 물,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 (제외: 과일 또는 채소 즙 및 우유)
[2203]	맥아로부터 만들어진 맥주
[2204]	신선한 포도 와인 (포함: 알코올 세기는 0.5% 이상인 부분적 발효된 또는 알콜이 첨가된 보강 포도주)
[2205]	향기로운 물질 또는 식물로 맛을 낸 베르무트 및 기타 신선한 포도 와인
[2206]	사과술, 페리주, 벌꿀 술 및 기타 발효 음료 및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와 발효 음료와의 혼합 음료 (제외: 맥주, 와인 또는 신선한 포도, 포도주, 향기로운 물질 또는 식물로 맛을 낸 베르무트 및 기타 신선한 포도 와인)
[2207]	알코올의 강도가 80% 이상인 성질이 바뀌지 않은 에틸 알코올: 임의의 도수를 가지는 에틸 알코올 및 기타 화주
[2208]	알코올의 강도가 80% 이하인 성질이 바뀌지 않은 에틸 알코올: 화주, 리큐어 및 기타 화주성 음료 (제외: 음료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종류의 알코올 혼합 알코올 조제품)
[2209]	식초, 발효 식초 및 아세트산으로부터 얻은 식초를 위한 대체품
[23]	식품 공업에서 나온 잔류물 및 쓰레기, 동물 사료
[2301]	고기 또는 고기 부산물의 밀가루, 굵은 가루 및 뭉쳐진 형태, 사람의 소비를 위해서 적합하지 않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
[2302]	채질, 제분 또는 곡물 또는 콩과의 식물을 위한 기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뭉쳐진 상태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는 왕겨, 거친 밀가루 및 기타 잔여분
[2303]	뭉쳐진 상태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는 녹말 제조의 잔여분 및 유사 과정의 잔여분,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과정의 나머지, 양조 과정 및 증류 잔재 및 찌꺼기
[2304]	뭉쳐진 상태 또는 가루 상태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는 콩 기름 추출 과정에서 나온 깻묵 및 기타 고체 잔여분
[2306]	뭉쳐진 상태 또는 가루 상태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는 채소 지방 또는 기름 추출 과정에서 나온 깻묵 및 기타 고체 잔여분 (제외: 콩기름 및 가루 견과류 기름으로부터 나온 잔여분)
[2308]	뭉쳐진 상태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는 도토리, 칠엽수, 포도주 찌꺼기 및 기타 채소 물질 및 채소 찌꺼기, 채소 잔여분 및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부산물
[2309]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조제품
[24]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2402]	시가, 엽궤련, 소형 엽궤련 및 담배 또는 담배 대체품
[2403]	제조된 담배 및 담배 대체품, 균질화된 담배, 재구성된 담배, 담배 추출물 및 담배 에센스 (제외: 시가), (포함: 엽궤련, 소형 엽궤련 및 담배)
[25]	소금
[2530]	질석, 진주암 및 기타 광석 대체품
[44]	목재 및 목제품
[4401]	장작, 통나무, 숙사, 잔가지, 작은 나무 가지 또는 유사 형태: 나무 조각 및 작은 조각: 톱밥 및 목재 폐기물 및 파편, 덩어리로 된 장작, 연탄, 뭉쳐진 형태의 유사한 형태
[4403]	나무껍질 또는 백목질을 벗기거나 벗기지 않던 상관없는 대략적으로 사각형인 미가광의 목재 (제외: 지팡이, 우산, 도구의 축을 위해 거칠게 잘려진 목재, 판자 또는 보의 기차 레일을 위해 놓인 형태의 목재)
[4407]	대패질이 되어 있건 모래로 덮여 있든 또는 이음매 유무에 상관없이 두께 6mm 이상의 톱질된 또는 새로 방향으로 조각난, 얇게 잘려진 또는 껍질의 목재

HS코드	종 류
[4410]	수지 또는 유기 물질 묶음 물질로 묶여져 있건 아니건 상관없는 기타 목재 또는 다른 목질 물질의 파티클보드 및 유사 형태의 합판 (예: 스트랜드 또는 웨이퍼보드), (제외: 섬유질 보드, 덧붙여진 파티클보드, 중앙이 비어있는 혼합 패널 및 시멘트, 분말 석고 또는 기타 접착 물질을 통해 한 덩어리로 묶여 지는 목질의 보드)
[4415]	목재를 이용한 포장 커버, 상자, 대바구니, 꾸러미 및 유사 포장 물질 (나무로 만든 밧줄 꾸러미, 침대, 박스 침대 및 기타 짐을 날을 수 있는 상자, 나무로 만든 칼라), (제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반 방법을 위해 고안되고 만들어진 컨테이너)
[4421]	목재의 다른 부분

이와 함께 WTO SPS 통보문 양식에 의하면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에서 개발한 ICS code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ICS 중 농산물관련 부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2 ICS(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ndards) 코드 및 설명

ICS코드	종 류
65	AGRICULTURE
65.020	Farming and forestry
65.020.01	Farming and forestry in general
65.020.20	Plant growing (Including horticulture, floriculture, seeds, plant diseases)
65.020.30	Animal husbandry and breeding (Including sanitary inspection)
11.220	Veterinary medicine, see
65.020.40	Landscaping and silviculture
65.020.99	Other standards related to farming and forestry
65.040	Farm buildings, structures and installations
65.040.01	Farm buildings and installations in general
65.040.10	Livestock buildings, installations and equipment (Including milking machines)
65.040.20	Buildings and installations for processing and storage of agricultural produce (Including slaughterhouses and related equipment)
65.040.30	Greenhouses and other installations
65.040.99	Other standards related to farm buildings and installations
65.060	Agricultural machines, implements and equipment
65.060.01	Agricultural machines and equipment in general
65.060.10	Agricultural tractors and trailed vehicles
65.060.20	Soil-working equipment
65.060.25	Equipment for storage,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fertilizers
65.060.30	Sowing and planting equipment
65.060.35	Irrigation and drainage equipment
65.060.40	Plant care equipment

ICS코드	종 류
65.060.50	Harvesting equipment
65.060.60	Viticultural and wine-making equipment
65.060.70	Horticultural equipment (Including lawnmowers, equipment for olive cultivation and olive production)
65.060.80	Forestry equipment (Including chain- and brush-saws)
65.060.99	Other agricultural machines and equipment
65.080	Fertilizers (Including soil conditioners and culture medium)
65.100	Pesticides and other agrochemicals
65.100.01	Pesticides and other agrochemicals in general
65.100.10	Insecticides
71.100.50	Wood-protecting chemicals
65.100.20	Herbicides
65.100.30	Fungicides
65.100.99	Other pesticides and agrochemicals
65.120	Animal feeding stuffs
07.100.30	Microbiology of animal feeding stuffs
65.140	Beekeeping (Including equipment and installations for beekeeping)
67.180.10	Honey
65.145	Hunting (Including equipment and installations for hunting)
65.150	Fishing and fish breeding (Including hunting of marine mammals and reptiles, collection and breeding of aquatic molluscs and other marine products, equipment and installations for fishing and fish breeding, etc.)
65.160	Tobacco, tobacco products and related equipment
67	FOOD TECHNOLOGY
67.020	Processes in the food industry (Including food hygiene and food safety)
67.040	Food products in general
67.050	General methods of tests and analysis for food products
07.100.30	Food microbiology
67.060	Cereals, pulses and derived products (Including grains, corn, flours, baked products, etc.)
67.080	Fruits. Vegetables (Including canned, dried and quick -frozen fruits and vegetables)
67.080.01	Fruits, vegetables and derived products in general
67.080.10	Fruits and derived products (Including nuts)
67.080.20	Vegetables and derived products (Including tomato concentrates, ketchup, etc.)
67.100	Milk and milk products
67.100.01	Milk and milk products in general
67.100.10	Milk and processed milk products (Including dried milk, condensed milk and evaporated milk)
67.100.20	Butter
67.100.30	Cheese (Including cottage cheese, whey cheese)
67.100.40	Ice cream and ice confectionery (Including sorbets)
67.100.99	Other milk products
67.120	Meat, meat products and other animal produce (Including frozen products)

ICS코드	종 류
67.120.01	Animal produce in general
67.120.10	Meat and meat products
67.120.20	Poultry and eggs
67.120.30	Fish and fishery products (Including aquatic molluscs and other marine products)
67.120.99	Other animal produce
67.140	Tea. Coffee. Cocoa
67.140.10	Tea (Including herb teas)
67.140.20	Coffee and coffee substitutes
67.140.30	Cocoa
67.160	Beverages
67.160.01	Beverages in general
67.160.10	Alcoholic beverages (Including beer, wine, spirits, etc.)
67.160.20	Non-alcoholic beverages (Including juices, nectars, mineral waters, lemonades, root beer, cola drinks, etc.)
67.180	Sugar. Sugar products. Starch
67.180.10	Sugar and sugar products (Including molasses, sweets, sugar confectionary, honey, etc.)
67.180.20	Starch and derived products (Including glucose syrups, etc.)
67.190	Chocolate
67.200	Edible oils and fats. Oilseeds
67.200.10	Animal and vegetable fats and oils
67.200.20	Oilseeds
67.220	Spices and condiments. Food additives
67.220.10	Spices and condiments
67.220.20	Food additives (Including salt, vinegar, food preservation additives, etc.)
67.230	Prepackaged and prepared foods (Including baby food)
67.240	Sensory analysis
67.250	Materials and articles in contact with foodstuffs (Including catering containers, and materials and articles in contact with drinking water)
67.260	Plants and equipment for the food industry
27.200	Refrigerating equipment
97.130.20	Cold rooms

3.5.6 우리나라의 분류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분류

우리나라의 가축의 정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있다. 여기서 ‘가축’이라 함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 산양, 칠면조, 오리, 거위, 돼지, 개, 닭, 꿀벌, 사슴 및 토끼를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고양이, 타조와 사육하

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가축전염병과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전염병은 다음과 같다.

- 제1종가축전염병: 우역, 우폐역, 구제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게곡열, 럽프스킨병,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돼지콜레라, 돼지수포병, 뉴캐슬병,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 제2종가축전염병: 탄저, 기종저, 부루세라병, 결핵병, 요네병, 소해면상뇌증, 소유행열, 소아까바네병,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텃센병, 스크래피, 비저, 말전염성빈혈, 말전염성동맥염, 구역, 말전염성자궁염, 동부말뇌염, 서부말뇌염, 베네주엘라말뇌염, 추백리, 가금티프스, 가금콜레라,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저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부저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2종가축전염병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은 다음과 같다.

- 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비기관염), 타이레리아(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놀라타에 한한다), 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 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 소백혈병, 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
-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위축 성비염
- 닭뇌척수염,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마렉병(Marek's disease), 닭전염성에프(F)낭병,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한편, 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대상 동물을 다음과 같이 1) 우제류 및 기제류, 2) 개, 고양이, 3) 토끼, 4) 닭, 칠면조, 오리, 거위, 5) 꿀벌, 6) 기타로 하고 있다.

표 23 지정검역대상 동물의 분류

법규상의 구분	분류학상의 구분	종 류
제1호 우제류 동물 및 기제류 동물	우제목	소과: 유우, 육우, 야우, 수우, 야크, 산양, 면양, 영양, 기타 양류 등 사슴과, 기린과, 낙타과(라마 포함), 하마과, 멧돼지과(돼지 포함) 등
	기제목	말과(당나귀, 노새, 버새 등), 맥과, 코뿔소과 등
제2호 개, 고양이	식육목	개과, 고양이과 등
제3호 토끼	토끼목	토끼과(가토, 야토 등)
제4호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닭목 기러기목	꿩과(닭, 메추리, 꿩), 칠면조과 오리과(거위, 기러기, 오리, 고니 등)
제5호 꿀벌	벌목	꿀벌과(꿀벌에 한함)
제6호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동 물 이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		상기 이외의 포유동물(고래 제외), 가금 및 조류

식물방역법의 분류

식물방역법에서 '식물'이라 함은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버섯류와 그 종자, 과일 및 가공품²⁹⁾으로서 다음의 유해식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유해식물'이라 함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등의 식물성병원체와 기생식물 및 잡초(그 종자를 포함)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유해동물'이라 함은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 그 밖에 식물에 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을 말하며 '규제병해충'이라 함은 유해동물 및 유해식물중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병해충을 말한다.

- 잠재적으로 경제적인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의 중요성이 있고,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사업 기타 방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검역병해충"이라 한다)
- 재식용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규제비검역병해충"이라 한다)

29) 식물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잠정규제병해충’이라 함은 수입식물검사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비검역병해충’이라 함은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을 제외한 병해충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는 규제병해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검역병해충: 금지병해충 및 관리병해충
 - 금지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당해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으로 63종이 지정되어 있음
 -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관심금지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병해충으로 9종이 고시되어 있음
 - 관리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식물검역소장이 고시하는 병해충으로 1,998종이 지정되어 있음
- 규제비검역병해충: 재식용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으로서 식물검역소장이 고시하는 병해충으로 52종이 지정되어 있음

표 24 수입금지 식물, 지역 및 병해충(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1. 벼, 왕겨, 벃짚과 그 가공품(껍질을 벗긴 쌀과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낻는 제외한다)	- 세계 전지역(일본 및 대만을 제외한다)	- 벼줄기선충 [Ditylenchus angustus] - 벼이삭미이라병 [Balansia oryzae-sativae]						
2.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식물의 풋콩류(코코넛, 파인애플 및 미성숙 바나나를 제외한다)	- 품목별로 다음의 수입허용 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지역	-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 - Ceratitis quinaria - Ceratitis rosa - Bactrocera aquilonis - Bactrocera carambolae - Bactrocera correcta						
	<table border="1"> <tr> <th>품목별</th> <th>수입허용지역</th> </tr> <tr> <td>감</td> <td>[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전지역 [뉴질랜드] 전지역</td> </tr> <tr> <td>포도</td> <td>[미국] 하와이주 및 텍사스주를 제외한</td> </tr> </table>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감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전지역 [뉴질랜드] 전지역	포도	[미국] 하와이주 및 텍사스주를 제외한	- 굴과실파리류 [Bactrocera dorsalis species complex] - Bactrocera halfordiae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감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전지역 [뉴질랜드] 전지역							
포도	[미국] 하와이주 및 텍사스주를 제외한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전지역 [일본] 전지역 [뉴질랜드] 전지역	- Bactrocera jarvis - Bactrocera latifrons - Bactrocera neohumeralis
참다래	[미국] 하와이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전지역 [뉴질랜드] 전지역	- Bactrocera papayae - Bactrocera tau - Bactrocera trivialis
자몽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규슈와 류큐열도를 제외한 전지역	- 퀘슬랜드과실파리[Bactrocera tryoni] - Bactrocera tuberculata - 오이과실파리[Bactrocera cucurbitae]
감귤 레몬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규슈와 류큐열도를 제외한 전지역 [뉴질랜드] 전지역	- 일본과실파리[Bactrocera tsuneonis] - Bactrocera umbrosa - Bactrocera zonata
라임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지역	- 남미과실파리[Anastrepha fraterculus]
유자	[일본] 규슈와 류큐열도를 제외한 전지역	- 멕시코과실파리[Anastrepha ludens]
단감 호박	[일본] 전지역 [뉴질랜드] 전지역	
두리안	[태국] 전지역	- 카리브과실파리[Anastrepha suspensa]
양벚 토마토 딸기	[일본] 전지역	- Anastrepha serpentina - Anastrepha obliqua
아보카도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지역 뉴질랜드] 전지역	- 유럽양벚과실파리[Rhagoletis cerasi] - Rhagoletis cingulata - Rhagoletis completa - 서부양벚과실파리[Rhagoletis indifferens]
석류	[이란] Sistan 및 Baluchistan Province를 제외한 전지역 [우즈베키스탄] 전지역	- Rhagoletis fausta - 사과과실파리[Rhagoletis pomonella]
월귤	[네팔] 전지역 [인도네시아] 전지역	- Rhagoletis suavis
멜론	[미국]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지역 [일본] 전지역 [우즈베키스탄] 전지역 [뉴질랜드] 전지역	- 고추과실파리[Zonosemata electa] - 코드린나방 [Cydia pomonella] - 자두애기잎말이나방 [Cydia funebrana]
참외	[일본] 전지역 [우즈베키스탄] 전지역	- 만주애기잎말이나방 [Grapholita inopinata] -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 [Grapholita prunivora] - 복숭아뽕나방 [Anarsia lineatella]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두바구미 [Conotrachelus nenuphar] - Cryptophlebia leucotreta - Carpomya pardalina
3. 호두나무의 열매와 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 레바논, 미얀마,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중국, 터어키, 파키스탄 - 유럽 : 전지역 - 아프리카 : 전지역 - 북아메리카 : 캐나다, 미국, 멕시코 - 남아메리카 :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페루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러시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그루지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드린나방 [Cydia pomonella]
4. 삭제 <2006.5.12>		
5. 고구마속식물, 나팔꽃속식물, 메꽃속 식물, 마속식물, 새삼속 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카사바 생식물의 지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미얀마, 싱가포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대만,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일본(북위30°이남의 다이토제도를 포함한 난세이제도 및 오가사와라제도에 한한다), 몰디브, 코코스섬, 크리스마스섬, 페스카도레스제도,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 아프리카 : 전지역 - 북아메리카 : 미국, 멕시코, 서인도제도 - 남아메리카 :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수리남, 페루, 프랑스령 기이아나, 파라과이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뉴기니,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하와이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미바구미 [Cylas formicarius] - 고구마바구미 [Euscepes postfasciatus]
6. 보리속(Hordeum spp.), 밀속Triticum spp.), 호밀속, 개밀속 및 라이밀(Triticosecale spp.) 식물의 경엽과 그 가공품(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가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 이라크, 이스라엘, 이란, 터어키, 시리아 - 유럽 : 전지역 - 아프리카 :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 북아메리카 : 전지역(서인도제도를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시안파리 [Mayetiola destructor]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뉴질랜드 - 그루지아, 라트비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7. 가지과 식물 및 고구마속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p>품목별로 다음의 수입허용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지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별</th> <th>수입허용지역</th> </tr> </thead> <tbody> <tr> <td>가지과식물의 생경엽</td> <td>[일본] 홋카이도, 규슈섬을 제외한 전지역</td> </tr> <tr> <td>고구마속식물의 생경엽, 가지과식물 및 고구마속식물의 생식물의 지하부</td> <td>[일본] 홋카이도, 규슈섬을 제외한 전지역 [미국] 메릴랜드주,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뉴욕주, 유타주, 네브래스카주, 캘리포니아주, 몬태나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뉴멕시코주, 북다코타주, 캔사스주, 와이오밍주, 델라웨어주, 오클라호마주, 남다코타주, 네바다주를 제외한 전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를 제외한 전지역</td> </tr> </tbody> </table>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가지과식물의 생경엽	[일본] 홋카이도, 규슈섬을 제외한 전지역	고구마속식물의 생경엽, 가지과식물 및 고구마속식물의 생식물의 지하부	[일본] 홋카이도, 규슈섬을 제외한 전지역 [미국] 메릴랜드주,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뉴욕주, 유타주, 네브래스카주, 캘리포니아주, 몬태나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뉴멕시코주, 북다코타주, 캔사스주, 와이오밍주, 델라웨어주, 오클라호마주, 남다코타주, 네바다주를 제외한 전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를 제외한 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자암종병 [Synchytrium endobioticum] - 감자갈썩병 [Potato spindle tuber viroid] - 감자씨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 감자흰씨스트선충 [Globodera pallida] - 콜로라도잎벌레 [Leptinotarsa decemlineata] - 담배노균병 [Peronospora tabacina]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가지과식물의 생경엽	[일본] 홋카이도, 규슈섬을 제외한 전지역							
고구마속식물의 생경엽, 가지과식물 및 고구마속식물의 생식물의 지하부	[일본] 홋카이도, 규슈섬을 제외한 전지역 [미국] 메릴랜드주,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뉴욕주, 유타주, 네브래스카주, 캘리포니아주, 몬태나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뉴멕시코주, 북다코타주, 캔사스주, 와이오밍주, 델라웨어주, 오클라호마주, 남다코타주, 네바다주를 제외한 전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를 제외한 전지역							
8. 가지과식물의 생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 대만,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미얀마,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터키, 예멘 - 유럽 : 전지역 - 아프리카 :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 북아메리카 :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캐나다, 쿠바,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푸에르토리코, 코스타리카 - 남아메리카 :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오스트레일리아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몰도바, 리투아니아, 그루지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노균병 [Peronospora tabacina] 						
9. 배나무아과, 복숭아속식물 및 나무, 딸기속식물의 묘목, 접수, 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를 제외한다)과 생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전지역(일본 및 대만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화상병 [Erwinia amylovora] - 사과빛자루병 [Apple proliferation phytoplasma] - 자두곰보병 [Plum pox virus]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복숭아속식물을 제외한다)		
10. Citrus spp., Fortunella spp., Poncirus spp., Aeglopsis spp., Atalantia spp., Balsamocitrus spp., Burkillanthus spp., Calodendrum spp., Clausena spp., Microcitrus spp., Murraya spp., Severinia spp., Swinglea spp., Toddalia spp., Triphasia spp., Cuscuta spp.의 묘목, 접수, 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를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 중국, 인도,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네팔, 예멘, 부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오끼나와현의 북위 27° 10' 이남의 난세이제도에 한한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스리랑카 - 아프리카 : 모리셔스, 레위니옹, 코모로, 이디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부룬디, 카메룬,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말라위, 르완다, 소말리아, 튀니지 - 남아메리카 : 브라질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그린병 [Citrus huanglongbing(greening) disease]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 [Diaphorina citri, Trioza erytreae]
11. 포도의 묘목, 접수, 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를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 대만 - 유럽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북, 중앙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파라과이,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황화병 [Grapevine flavescence doree phytoplasma] - 포도피어슨병 [Xylella fastidiosa]
12. 아보카도, 파인애플, 여지, Indigofera hirsuta, 테다소나무, Pinus elliotii, 강낭콩, 오크라, 수박, 무, 여주, 고추, 토마토, 호박, 멜론, 부추, 치자, 칸나, 차나무, 커피, 생강, 알파파, 후추, 고구마, 사탕수수, 대두, 옥수수, 땅콩(땅콩의 껍질이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 빈랑, 코코넛야자, Curcuma longa, 당근, 까마중의 생식물의 지하부, 파초속식물, 운향과식물, Calathea spp., 안스름속식물, 근대속식물, Dioscorea spp., 배나무속식물의 생식물의 지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중앙아메리카 : 전지역 - 남아메리카 : 전지역 - 아프리카 : 전지역 - 아시아 :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브루나이, 이스라엘, 레바논, 오만, 싱가포르, 예멘 - 유럽 : 벨기에,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 오스트레일리아, 폴리네시아, 취지, 하와이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뿌리썩이선충 [Radopholus citrophilus]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Radopholus similis]
13. 소나무속식물, 잎갈나무속식물, 개잎갈나무속식물의 묘목류, 목재류(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공목재류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 북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 [Monochamus alternatus, Monochamus carolinensis] - 소나무종유석병 [Cronartium colesporioides]
14. Acer macrophyllum, Aesculus californica, Arbutus menziesii, Arctostaphylos manzanita, Calluna vulgaris, Camell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 독일,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나무역병 [Phytophthora ramorum]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spp., Fraxinus excelsior, Griseliria littoralis, Hamamelis virginiana, Heteromeles arbutifolia, Lithocarpus densiflorus, Lonicera hispidula, Maianthemum racemosum (Smilacina racemosa), Photinia fraseri, Pieris formosa, Pieris formosa × P. japonica, P. floribunda × P. japonica, Pieris japonica, Pseudotsuga menziesii var. menziesii, Quercus spp., Rhamnus californica, Rhododendron spp., Rosa gymnocarpa, Sequoia sempervirens, Trientalis latifolia, Umbellularia californica, Vaccinium ovatum, Viburnum spp.의 묘목(대목 포함), 접수, 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를 제외한다)과 수피가 붙어 있는 목재류	스위스 - 북아메리카 : 미국(캘리포니아주 Marin, Monterey, Napa, San Mateo, Santa Clara, Santa Cruz, Sonoma, Alameda, Solano, Mendecino, Humboldt, Contra Costa, Lake, San Francisco카운티, 오레곤주 Curry카운티 및 뉴욕주 Nassau카운티에 한한다)	
※ 비고 1. 위 표의 수입금지식물중 농림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식물은 제외한다. 2. 위 표의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수입금지지역에는 북한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식물검역소에서는 이러한 각종 병해충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관리하고 있다.

표 25 병해충의 관리 방법

관리구분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검역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관리방법	법령(63)	고시(9)	고시(1,998)	고시(52종)	PRA대상
처분방법	수입금지		소독	소독	소독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분류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축산물의 무역 통계와 동향 파악 등을 위하여 수출입 품목분류에 AG 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AG 코드는 국가간 교

표 26 AG코드 체계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농산물(1)	곡실류		육류	곡류(11)	포유가축류(21)		
				서류(12)	가금육류(22)		
				두류(13)	양서류육류(26)		
				전분(14)	기타육류(29)		
				채유종실(15)	축산부산물	동물성유지(31)	
				과실류(16)		동물성납(32)	
				기타곡실류(19)		골류(33)	
				산식물		채소류(21)	한약재(34)
					화훼류(22)	기타축산부산물(39)	
	버섯류(23)	축산조제품	낙농품(41)				
	기타산식물(29)		난류(42)				
	농림부산물		식물성유지(31)	단백질류(43)			
		유지가공품(32)	의류등제조원료	모, 수모류(51)			
		농산물납류(33)		원피(52)			
		식물성액즙(34)		생모피(53)			
		박류(35)		합개(92)			
		사료(36)		임산물(3)	목재류	원목(11)	
		기타식물성물질(37)				제재목(12)	
		기타농산부산물(39)				합판(13)	
		식물성재료				빵류제조용(41)	단판(14)
						효모류(42)	섬유판(15)
	소오스류(43)					파티클보드(16)	
	향신료(44)		칩, 삭편상의 목재(17)				
	지방성물질(45)		목탄(18)				
	기타식물성재료(49)		기타목재(19)				
	기호식품	커피류(51)	수목, 종자류			수목류(21)	
		코코아류(52)		종자류(22)			
		차류(53)		임산부산물	산채류(31)		
연초류(54)		버섯류(32)					
인삼류(55)		견과류(33)					
한약재(56)		수지류(34)					
주류(57)		수피류(35)					
당류(58)		엽류(36)					
음료(59)		편조물류		죽채류(41)			
조제농산식품				과자류(61)	등나무류(42)		
	면류(62)	기타편조물(49)					
	기타조제농산물(69)	기타임산물	기타임산물(61)				
천연식물성원료	수산물(4)		수산동물	어류(11)			
		잠사류(71)		갑각류(12)			
		식물성성유(72)		연체동물(13)			
축산물(2)	산동물			수생동물(14)			
				포유가축류(11)	환형동물(15)		
				가금류(12)	기타수산동물(19)		
				기타포유류(13)	수산식물	해조류(21)	
				기타조류(14)		수산부산물	수산부산물(31)
				파충류(15)			한천(32)
				양서류(16)	기타수산부산물(33)		
				곤충류(17)	기타수산물	비식용수산물(41)	
				환형동물(18)		기타수산물(42)	
				기타산동물(1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일련번호
농산물 : 1	곡류 : 11	쌀 : 01	산식물 : 01	벼 : 00
축산물 : 2	산동물 : 11	소 : 01	구분없음 : 01	젓소 : 11
임산물 : 3	목재류 : 11	방부처리원료 : 00	구분없음 : 00	열대목재 : 01
수산물 : 4	어류 : 11	실장어 : 11	활어 : 01	실장어 : 00

역에 사용되는 HS 코드를 농수축산물 품목단위에서 그룹화하여 수출입 통계 집계시 사용되는 코드로 HS 코드와 1:1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AG코드의 체계는 대분류(1), 중분류(2), 소분류(2), 세분류(2) 및 일련번호(2)로 이루어져 단위로 되어 있어 HS의 10단위와 차이가 있다. 코드분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23).

- 대분류: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로 구분
- 중분류: 류별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분류
- 소분류: 실품목(대표품목)단위로 분류
- 세분류: 실품목 특성 및 용도별 분류
- 일련번호: 세분류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일련번호 부여

3.6 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한 전파시스템

일반적인 정보의 전파시스템으로는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제공자가 능동적인 e-mail 푸시(push) 서비스 시스템과 수동적인 인터넷 게시판이 있다.

e-mail을 이용한 푸시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주제별로 파악하여 관련정보들을 수집, 가공하고 이용자들에게 주기적이며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정보관리자 혹은 시스템 운영자가 정보이용자들에게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이용자의 특정 관심분야와 정보요구분석을 통한 target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정보이용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회원가입 시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가입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나 업데이트된 내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푸시 서비스한다. 그러나 단순히 관심분야를 등록하여 특정 정보를 자동으로 뿌려주는 시스템은 관심분야를 정확히 등록하지 않으면 정보의 전파에 있어서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특히, 자칫 스팸메일로 분류되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메일 푸시 기능과 더불어 RSS(Rich Site Summary, Really Simple Syndication) 기능이 포함된 전파시스템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10개의 사이트에서 업데이트 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브라우저를 열고 10개 사이트를 하나씩 방문해서 지난번 읽었던 곳을 찾고 그 뒤로 새로운 글이 올라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 시간 뒤에 업데이트 된 내용을 또 확인해보려면 위의 과정을 다시 반복하여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이 10개의 사이트에서 RSS를 제공한다면 RSS 리더기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간격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의 제공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내용을 보내준다는 용도로 보면 이메일로 보내는 뉴스레터, 이메일 소식지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RSS는 이메일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진다. 우선 이메일은 내용을 보내주는 사이트에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통보문을 이메일로 발송하면 사용자는 해당 정보를 편지함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 스팸 메일 속에 통보문이 섞일 수도 있고 해당사이트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

반면 RSS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RSS 주소를 리더기에 입력하기만 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수집하게 되며, 특정 웹 페이지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RSS 주소록에서 해당 웹페이지 주소를 삭제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웹 서비스 제공자가 강제로 RSS를 전송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림 27은 RSS와 메일링 시스템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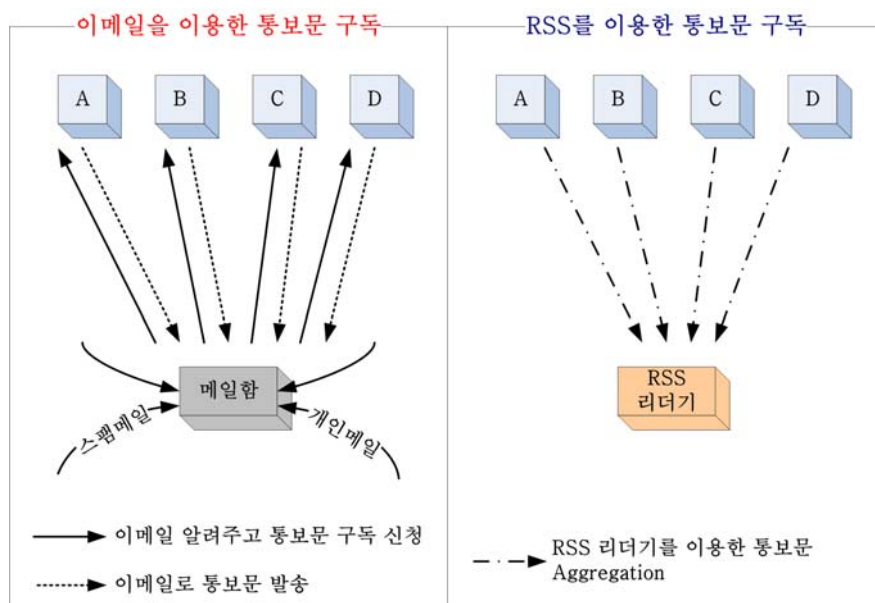


그림 29 RSS 시스템과 메일링 시스템의 차이

RSS 시스템은 아직 국내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RSS의 정의

RSS란 Rich Site Summary 또는 Really Simple Syndication의 줄임말로써 뉴스나 블로그 등과 같이 콘텐츠가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 사이트들의 업데이트된 정보를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XML 기반의 포맷이다. 즉, RSS는 http 또는 FTP와 같은 하나의 전송규약으로써,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http://www.../xxx.htm"으로 구성된 웹 주소가 http라는 전송방식으로 html 파일을 보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http에 대응하는 것이 RSS이며 html에 대응하는 것이 xml이다. 즉, RSS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며 xml은 그 데이터의 구현방식을 나타낸다.

RSS를 이용하면, A라는 사이트(또는 사용자)가 B라는 사이트의 RSS 파일의 정기적인 수집을 통하여 B 사이트의 갱신된 콘텐츠 제목, 링크, 발췌 내용을 자동화된 과정에 의해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개인 사용자는 RSS 리더(reader) 프로그램을 사용해 B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최신 콘텐츠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블로그 사이트들을 보면 "Syndicate this site (XML)" 또는 RSS 아이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RSS 파일의 링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보통 파일명은 index.xml, index.rdf, rss.xml 등이 사용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으로 되어 있는 RSS는 간단하게 제목, 내용, 날짜 등의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0.9, 1.0, 2.0 등 다양한 버전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RSS 표준화 동향

RSS 하나에 대해 두 가지의 용어 즉, RDF Site Summary 또는 Really Simple Syndication의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최초 개발은 Netscape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Netscape사가 개발을 포기하고 난 후 두 개의 개발 주체에서 규격 개발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RSS는 11년 전인 1995년 MCF(Meta Content Framework)³⁰⁾ 프로젝트에서 출발한다. 처음에는 지식표현시스템(Knowledge

Representation System)인 Cycl, KRL, KIF 등의 관계 기술을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으나 1997년 갑자기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 이후 담당자인 구하(Guha)가 넷스케이프(Netscape)사로 옮겨가면서 MCF는 XML 기반으로 변화되었고 이것이 바로 RDF가 된 것이다. 한편 Microsoft사도 1997년부터 MCF를 연구해 XML 기반의 CDF(Channel Definition Format)³¹⁾를 만들고, CDF를 기반으로 한 액티브 데스크톱이 출시되었다. 이후 넷스케이프사가 AOL로 넘어갔고, 여기에서 RSS(RDF Site Summary)를 선보인다. 그러나 넷스케이프사는 중간에 개발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RSS는 다양한 그룹에 의해 계속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RSS-DEV Working Group'³²⁾이 개발하는 RDF Site Summary 1.0이고 나머지는 'UserLand'³³⁾의 Really Simple Syndication 2.0이다. 이처럼 RSS 규격이 분리되면서 표준과 방식,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이들 형식은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버전처럼 RSS 0.91, 1.0, 2.0순으로 판올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RSS 0.91, RSS 1.0 판은 RDF 기반의 RSS 형식이다. 반면 RSS 0.92, RSS 0.93, RSS 2.0은 비 RDF 진영에서 발표한 RSS 형식이다. 물론 RSS 리더기 프로그램은 이런 차이를 알아서 구분해주므로 RSS리더기 사용자가 RSS 버전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다.

RSS의 표준도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새로운 콘텐츠 Syndication(PIE, ATOM, OPML, mbox 등)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며, 이들 형식은 RSS와 다른 형식이지만 ATOM과 OPML을 지원하는 사이트가 늘면서 RSS의 한 형식으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또한 RSS 표준 자체도 기능 개선을 위한 RSS-Data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아직도 RSS 표준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RSS 표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W3C나 IETF 등으로 옮겨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ATOM은 IETF에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4월에 IETF의 표준을 위한 초안이 제출

30) <http://www.w3.org/TR/NOTE-MCF-XML/>

31) <http://www.w3.org/TR/NOTE-CDFsubmit.html>

32) <http://web.resource.org/rss/1.0/>

33) <http://www.userland.com/>

되었다.

RSS를 사용하는 이유 및 적용분야

RSS는 웹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티 표준으로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웹의 가장 큰 특징인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기능을 웹서비스 형태로 변환시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RSS 사용을 통한 이점을 서비스의 운영자 및 사용자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 운영자는 이메일 정보 발송을 위한 콘텐츠 구성과 이메일 발송과 같은 작업 없이 손쉽게 신규 또는 추천 정보를 서비스 사용자 즉,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서비스의 사용자 또한 관심 있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RSS 서비스를 하게 되면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는 사용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서비스 운영자가 RSS 서비스와 같은 형태의 deep link로 인하여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광고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대신 관련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서비스 사용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용자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 증가의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수많은 정보들이 사용자에게 개방되어 기다리고 있고 이 정보의 바다 속에서 서비스 운영자는 어떻게 경쟁자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고, 서비스 사용자는 어떻게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해결점이 바로 RSS인 것이다.

RSS의 장점 및 단점, 해결해야할 문제

RSS는 가장 성공적인 XML 기반 웹 서비스로써, 웹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구현방식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요약하고, 상호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RSS로 대표되는 콘텐츠 배급 포맷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RSS 서비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선택적 정보의 획득: 사용자가 원하는 주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 빠른 정보의 획득: 동시에 다양한 소스에 접근이 가능하다.
- History 관리: 다양한 웹 사이트의 과거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 자동화된 콘텐츠 연동: Syndication / Aggregation
- 콘텐츠 재사용성: 구조화된 XML 데이터로 손쉬운 변환 및 처리가 가능
-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 1:1에서 1:N으로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RSS 시스템의 주요용도로는 시스템이 구축된 웹 사이트에 새롭게 생성되는 정보들을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규칙으로 이용되고 있다. 웹 사이트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RSS라는 규칙에 따라 제공하면 이용자는 RSS를 읽을 수 있는 브라우저나 리더기를 통해 그 내용을 받아올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RSS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SPS 조치에 대한 WTO 통보문 제공자 측면에서 본다면 웹 페이지에 RSS를 지원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손쉽게 SPS 관련 농림부 웹 페이지의 최신정보를 배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해당사자(수출입 업체 및 관련 단체, 기관) 입장에서 보면 매년 SPS 조치에 대한 WTO 통보문을 입수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메일 서비스를 기다리지 않고도 아주 간단히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다.

RSS의 활용분야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현재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사이트의 콘텐츠 배급(syndication) 또는 수집(agggregation), 그리고 개인 사용자의 콘텐츠 사용 편리성 제공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RSS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혹은 활용될 수 있다.

- 뉴스 및 공지사항: 매시간 새로운 정보가 추가 또는 변경 되는 뉴스 또는 신규소식 서비스
- 강좌: 매번 사이트를 방문하여 규칙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콘텐츠 서비스
- 일정 : 주요 행사, 마감일자 또는 휴일정보
- 검색결과 : 관심 키워드에 대한 변경 및 신규 정보 조회 서비스
- 메일링 리스트 : 주기적인 이메일 서비스 내용 모음
- 기타 각종 정보 서비스

RSS는 다양한 웹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기술적인 표준화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웹 사이트의 정책에 따라 RSS 공급 형식과 표시 형식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특정 사이트의 문서 정보를 RSS 문서로 만들어 보내주는 것을 발행(publish) 또는 공급(feed)이라고 하고, 공급된 RSS 문서를 읽는 것을 공급받다 또는 구독(read)이라고 한다. RSS 문서를 쉽게 읽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RSS 리더기 또는 RSS 수집기(RSS aggregator)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 물론 RSS 문서는 일반 브라우저로도 볼 수 있지만 전문 RSS 리더기 프로그램에 비하면 매우 불편하다. RSS를 구독해보면 어떤 사이트는 몇 줄의 간단한 요약 정보만 나오고 어떤 사이트는 본문 전체를 보여주는 차이를 볼 수 있다. 또 어떤 사이트는 글씨만 보여주는데 어떤 사이트는 그림파일도 함께 보여준다. 이처럼 RSS 리더기에서 보이는 형태는 조금씩 틀린데, 이는 RSS 파일을 공급하는 해당 사이트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 초기 블로그(blog)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규격은 몇 줄의 요약문만 보여주는 형태지만, 최근에는 본문 전체와 그림까지 함께 보여주는 형식도 지원하고 있다. 요약문만 보여주는 것과 본문 그림을 모두 보여주는 형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본문을 전부 보여주는 것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문을 볼 수 있어 좋지만, 구독하는 블로그가 많을 경우 RSS를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당 사이트와의 교류가 줄어들어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RSS 리더기는 웹 구독기나 PC용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한다. 즉 RSS 구독자는 대부분 전문적인 RSS 리더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RSS 리더기는 성격과 형식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응용프로그램 형은 PC에 설치해 사용하는 형태로 전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능이 다양하고 구독한 자료를 개인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편리하고 강력하다. 하지만 다른 곳의 PC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응용프로그램 형의 예로는 엑스파이더(Xpyder)³⁴, 샤프리더(SharpReader)³⁵, 피드데몬(FeedDemon)³⁶, 클립폴리오(klipfolio)³⁷ 등이 있다.

34) <http://www.xpyder.co.kr/>

35) <http://www.sharpreader.net/>

36) <http://www.bradsoft.com/feeddemon>

37) <http://www.serence.com/>

세 번째 문제점은 해당 사이트에서 RSS를 지원해야 만 RSS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 사이트가 RSS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A 사이트를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과거처럼 A 사이트를 방문해 일일이 차림표를 눌러가면서 새 글을 확인해야 한다. 물론 이는 네티즌에게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이 해당 사이트의 RSS 지원을 요청한다. 현재 외국의 주요 사이트는 RSS 지원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자료와 주제별 RSS를 따로 제공하며 네티즌의 편의를 돕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RSS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많지 않다.

RSS에 대한 세계시장의 동향

현재까지는 RSS의 사용처가 블로그나 언론사와 같이 콘텐츠 배급용으로 사용되지만 RSS의 사용처가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RSS는 광고, 일정관리, 홍보, 커뮤니티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미 이베이(eBay)³⁸⁾에서는 알림 기능을 RSS로 제공하고 있으며, 아마존은³⁹⁾ 상품 정보를 RSS로 제공하고 있다. 야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트닷컴 등도 RSS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RSS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대형 IT기업의 참여가 눈에 뜨게 늘고 있다. RSS에 대한 해외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RSS 시장은 블로그라인스(Bloglines)⁴⁰⁾, 피드스터(Feedster)⁴¹⁾, 피드버너(Feedburner)⁴²⁾, 루디콕(Ludicorp)⁴³⁾ 등의 신생회사들이나 참여하는 틈새시장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RSS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는 RSS의 혁명 가능성과 시장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며, 2006년 들어 RSS를 둘러싼 시장은 많은 변화는 거듭해오고 있다. 먼저 웹 구독기에서 가장 유명한 블로그라인스 회사를 인수한 애스크지브스(AskJeeves)⁴⁴⁾가 다시 IAC(InterActiveCorp)로 넘어갔다. 애스크지브스는 블로그라인스를 인수함으로써 많은 자료를 획득하게 되었고, 여기에 애스크지브스의 핵심인 Teoma⁴⁵⁾

38) <http://www.ebay.com/>

39) <http://www.amazon.com/>

40) <http://www.bloglines.com/>

41) <http://www.feedster.com/>

42) <http://www.feedburner.com/>

43) <http://www.ludicorp.com/>

44) <http://www.ask.com/>

45) <http://www.searchclores.org/teoma.htm>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구글, 야후 등과 싸우기 위해 좀 더 큰 힘이 필요했는지 IAC에 팔렸다. IAC는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IAC의 CEO인 배리 딜러(Barry Diller)는 미국 언론계에서 유명한 인사로 한 해 수익이 수 천억 원이나 되는 갑부다. IAC는 블로그 라인스와 애스크지브스를 이용하여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준비 중인 것은 역시 블로그 검색 엔진이다. 블로그라인스의 CEO인 마크 플레처(Mark Fletcher)는 테크노라티(Technorati), 펄서브(PubSub), 피드스터보다 훨씬 뛰어난 블로그 검색엔진을 선보일 것이라고 한다. 아직 포털사이트는 블로그 검색에 적극적이지 않지만 웹 구독기 서비스로 블로그라인스가 강력한 것처럼 전혀 새로운 검색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BlogLines, BlogPulse, Feedster, IceRocket 등등의 블로그 검색 엔진 외에도 메타 링크 찾기 기능을 제공하는 TalkDigger⁴⁶⁾까지 새로운 형식의 검색엔진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블로그라인스는 애스크지브스에 인수되면서 검색시장 진출을 위해 블로그 검색 기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색 기능에 추천 기능을 넣어 검색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시킨 검색 서비스를 선보이거나, 비트토렌트(BitTorrent)⁴⁷⁾가 선보일 검색 기능에서 "sponsored link"가 애스크지브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 새로운 검색시장 진출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야후는 RSS 리더와 360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며, 플릭커(Flickr)를 인수했다. 특히 플릭커를 인수한 것은 야후의 RSS 시장 진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구글은 개인화 홈페이지에서 "Universal RSS Support"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는 XML 공동 개발자이기도 한 팀 브레이를 영입해 RSS와 XML 기술을 개발기로 했으며, 패스트 인포넷이란 프로젝트를 통해 XML 애플리케이션의 속도를 2배에서 10배까지 향상시키려고 한다.

각 버전별 RSS의 기술적 차이점

RSS는 크게 RDF에 기반한 규격(버전 0.9, 1.0, 1.1)과 RDF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규격(버전 0.91, 0.92, 0.93, 0.94, 2.0)으로 나뉠 수 있다. 각 버전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46) <http://www.talkdigger.com/>

47) <http://www.bittorrent.com/>

표 27 RSS 버전별 특성

버전	제작	내용	현재상태
0.9	Netscape	RSS의 초기 버전	1.0에 포함되어 사용하지 않음
0.91	UserLand	간단한 구조	2.0으로 흡수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곳에서 사용하며, 기본적인 배포에 이용되고 2.0으로 변경이 용이함
0.92 0.93 0.94	UserLand	0.91 보다 풍부한 메타데이터 (metadata) 제공	RSS 2.0 포함 많이 사용되지 않으면 2.0 사용을 권고
1.0	RSS-DEV Working Group	RDF 기반 모듈을 통한 확장성이 있고 단일 벤더에 의해 조정되지 않음	안정된 핵심표준 주요 모듈 표준 개발 진행 중 RDF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RDF 모듈이 필요할 경우
2.0	UserLand	모듈을 통한 확장성이 있고 0.9x 버전에서 쉽게 이전 가능	안정된 핵심표준 주요 모듈 표준 개발 진행 중 일반적인 목적으로 이용

RSS 0.91의 피드(feeds)는 channel로 구성되며, channel은 title, link, description, language로 구성되며, channel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item은 title, link, description으로 구성된다.

RSS 1.0은 RDF를 사용하고 XML-Namespaces(RSS Modules)을 이용하여 큰 마찰 없이 확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모듈로써는 Dublin Core Module⁴⁸⁾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RSS 1.0은 아래의 샘플 코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RSS 0.9x와 거의 비슷하나 몇 가지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다. <rdf:RDF>...</rdf:RDF> 요소를 사용하며, <http://purl.org/rss/1.0> (Default Namespace), <http://purl.org/dc/elements/1.1/> (Dublin Core)과 같이 Namespace를 사용한다. Item Element가 Channel Element 밖에서 사용된다(RSS 0.9x의 경우는 Channel Element 내부에 있음). Item 레벨의 authors, publishing dates는 0.91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RSS 2.0은 RSS 1.0과 유사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RDF 기반은 아니며, RSS 0.91과 같이 2.0에서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가 없고, item은 channel에 포함된다. RSS 0.92까지는 아이템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RSS2.0에 오면서 숫자에 제한이 없어졌다. 또한 아이템(item)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Element)는 선택사항이다.

48) <http://web.resource.org/rss/1.0/modules/dc/>

차세대 콘텐츠 신디케이션(syndication)을 위한 ATOM 표준화

RSS의 확산과 더불어 콘텐츠 신디케이션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새로운 기능 및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콘텐츠 신디케이션 표준화를 위한 많은 논의와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나, 사실상 다양한 포맷의 RSS 규격을 단일화 시키고 표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표준화를 위한 ATOM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ATOM 프로젝트그룹과 표준화 활동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W3C⁴⁹⁾와 IETF⁵⁰⁾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W3C에서는 웹 기술과의 연관성, 그리고 웹 표준화 기구라는 대표성을 내세워 W3C에서 활동이 진행되길 요청하였고, IETF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결국 사용자들의 투표에 의해 보다 자유로운 멤버들의 참여가 가능한 IETF에서 활동하기로 결정하고, AtomPub(ATOM Publishing Format and Protocol) 작업그룹(WG)을 구성하였다.

현재 IETF의 AtomPub 작업그룹에서는 “웹 리소스들(블로그, 온라인 저널 등)을 위한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 프로토콜 개발”이라는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의 표준에 대한 초안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9) <http://www.w3.org/>

50) <http://www.ietf.org/>

제4장 정책 제안

4.1 SPS 통보의 분류 원칙

본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WTO SPS 통보문을 국내에 확산하여 이해당사자의 수입국 조치변화에 대한 빠른 정보수집·대응을 통한 수출에 문제 발생 최소화과 우리나라 조치의 선진화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분류의 정보 소비자(이해당사자와 정부관계자)의 입장에서 분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는 주로 특정 상품의 특정 국가에 수출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로 할 것이며, 정부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특정 질병에 대한 조치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다. 또한 너무 상세한 분류는 정보의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너무 큰 분류는 원하지 않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결국은 스팸메일의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보의 적절한 분류는 정보의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보문의 분류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실시하는 것을 우선 제안한다.

○ 분류 1: 조치 도입 국가

- 국가명: WTO 통보문 양식에서 1의 국가명을 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국가를 분류하고 있는 표를 활용하여 지역, 선진·개도국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 관할기관: WTO 통보문 양식에서 2의 관할 기관과 12 또는 13에서 제공되는 관할 기관 및 부서의 명을 제공
- 문의처: WTO에 통보된 문의처를 국가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분류 2: 조치 대상

- 정보: 통보문에서 제공되는 대상 품목명을 원칙으로 제공함. WTO SPS위원회에서 정한 통보문에는 WTO에 양허관세 제출에 사용한 HS code를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많은 국가가 일반적인 품목명으로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HS code 또는 ICS 번호(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Standards)가 제공된 경우 이를 활용하되 원칙적으로 대상품목을 나열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분류 3: 조치 목적
 - 대분류: 최상위 목적(인간건강, 동물보호, 식물보호, 인간보호 또는 국토 보호, WTO 통보문 양식의 7)
 - 중분류: 대상 질병 또는 해충(WTO 통보문 양식의 6에서 발취)
- 조치의 일반 사항
 - 조치의 수준: 제도, 기술규격
 - 조치 적용대상 국가/지역(WTO 통보문 양식의 4)
 - 국제규격 존재 여부(WTO 통보문 양식의 8)
 - 통보일자(WTO 통보문 양식의 통보일)
 - 의견수렴기한(WTO 통보문 양식의 12)
 - 채택 예정일(WTO 통보문 양식의 10)/채택일
 - 발효예정일(WTO 통보문 양식의 11)/발효일
- 조치 내용
 - 조치의 주요내용 개요(WTO 통보문 양식의 6)
 - 중요도에 따라 제안 조치 URL 연결 또는 전문 제공
 - 중요도에 따라 최종 조치 URL 연결, 원문 또는 번역문 제공

세부내용

이러한 분류에 대한 세부내용(안)은 다음과 같다.

- 분류 1: 조치 도입 국가
 - 정보: 국가명(WTO 통보문 양식의 1), 관할기관(WTO 통보문 양식의 2), 문의처(enquiry point)
 - 관심국가: 수출액 순
 - 농식품: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UAE, 대만, 유럽연합, ASEAN, 호주
 - 농산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UAE, 대만, ASEAN, 유럽연합, 호주

○ 분류 2: 조치 대상

- 정보: 품목명
 - 추가정보: HS code (WTO 통보문 양식의 3) 및 가능한 경우 ICS 번호
 - 문제점: 통보시 원칙적으로 HS code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히 일반명만을 제공하고 HS code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통보되는 제품명으로는 HS code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음
- 동물: 소(cattle), 양 및 염소(sheep and goat), 말(equine), 돼지(swine), 조류(avian), 토끼(lagomorph), 벌(bee), 기타
- 식물: 목재포장재, 종자류, 과실류, 채소류, 곡류 등
- 관심품목
 - 주요 국가별 주요 국가별 주요품목(수출순)
 - 가공품의 포함 여부에 대한 결정 필요

○ 분류 3: 조치 목적

- 대분류: 목적(식품안전, 동물건강, 식물보호, 인간보호 및/또는 국토보호, WTO 통보문 양식의 7)
 - WTO SPS통보문의 양식에 따름, 복수 표시되어 있음
 - 주요 조치로서 식품, 동물, 식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조치인 경우에는 식품과 동물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중분류: 대상 질병 또는 해충(WTO 통보문 양식의 6에서 발췌)
 - 조치의 대상이 되는 질병, 해충 또는 잡초
- 동물
 - OIE의 육상동물표준의 분류를 사용
 - 인수공통전염병/다중간 질병: anthrax, Aujeszky's disease, echinococcosis/hydatidosis, leptospirosis, rabies, paratuberculosis, heartwater, new world screwworm 및 old world screwworm, trichinellosis, foot and mouth disease, vesicular stomatitis, rinderpest, bluetongue, rift valley fever, Japanese encephalitis, tularemia (16종) 또는 개별 동물 군의 질병 등
- 식물
 - 과실파리 등

- 식물의 경우는 세부 질병 또는 해충에 따른 구체적인 분류는 크게 필요하지 않으나, 질병, 해충 및 잡초 등에 대한 조치로 분류는 가능할 것임
-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체, 외래종(invasive foreign species) 등에 대한 통보는 동·식물 모두에 공통적으로 분류도 가능함
- 조치의 일반 사항
 - 조치의 수준: 제도, 기준·규격
 - 법령(제도), 특정 질병·해충·품목 등에 대한 기준·규격
 - 긴급조치여부
 - 조치 적용대상 국가/지역(WTO 통보문 양식의 4)
 - 국제규격 존재 여부(WTO 통보문 양식의 8)
 - 통보일자(WTO 통보문 양식의 통보일)
 - 의견수렴기한(WTO 통보문 양식의 12) 및 의견제출
 - 채택 예정일(WTO 통보문 양식의 10)/채택일
 - 발효예정일(WTO 통보문 양식의 11)/발효일
- 조치 내용
 - 조치의 주요내용 개요(WTO 통보문 양식의 6):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번역 필요하며, 한글로의 기계번역은 전문용어 등에 의하여 아직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통보언어인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의 영어로의 기계번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중요도에 따라 제안 조치 URL 연결 또는 전문(원문) 제공
 - 중요도에 따라 최종 조치 URL 연결, 원문 또는 번역문 제공

4.2 국내업계에의 전파시스템 모델 개발

4.2.1 WTO SPS 조치를 위한 통보문 검색 시스템 개발 방향

WTO SPS 조치를 위한 통보문 검색과 전파시스템에 대하여 주요 국가/기구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호주의 AQIS(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시스템과 FAO에 의해 개발된 IPFSAPH(International Portal on Food Safety, Animal & Plant Health) 시스템이 비교적 우수한 사례로 여겨진다. 국내

의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WTO TBT 통보문 검색시스템과 현재 구축 중인 자동경보시스템이 외국 사례와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WTO SPS 조치를 위한 통보문 검색 및 전파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며, 무역 관련 각종 규제 및 자국내 농·수·축 수출입산업과 자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기관·부처의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SPS 조치 관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AQIS, FAO의 IPFSAPH, 기술표준원의 TBT 검색/자동경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SPS 관련 시스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WTO SPS 통보문은 표 28과 같이 통보문 종류별로 분류 기호가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통보문 종류를 문서기호로만 분류하게 되면 조치의 종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MS-WORD 통보문 문서에서 제목도 함께 추출하여 통보문의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표 28 문서번호에 따른 조치의 종류

통보문의 문서번호	조치의 종류
G/SPS/N/COUNTRY/#	정규, 긴급
G/SPS/N/COUNTRY/#/Rev.#	정규, 긴급
G/SPS/N/COUNTRY/#/Add.#	정규, 긴급, 특별 및 차등대우
G/SPS/N/COUNTRY/#/Corr.#	정규, 긴급
G/SPS/N/COUNTRY/#/Suppl.#	번역(AVAILABILITY OF TRANSLATIONS)

그림 30은 SPS 통보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고려해야 하는 통보문 분류기호 DB 테이블의 구성필드 샘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Notification ID: 통보문의 종류를 나타내는 Table
- Symbol ID: Equivalence 통보문 여부를 구별하는 Table
- Country ID: 영문(A~Z)까지 그룹화한 국가별 코드 Table
- Number_1 ID: Equivalence 통보문번호를 저장하는 Table
- Number_2 ID: Equivalence 통보문을 제외한 나머지 통보문의 번호를 저장하는 Table
- Number_3 ID: Equivalence 통보문을 제외한 나머지 통보문의 개정(Rev.),

추가(Add.), 수정(Corr.), 보완(Suppl.) 번호를 저장하는 Table

- Category ID: Equivalence 통보문을 제외한 나머지 통보문의 None, Revision, Addendum, Corrigendum, Supplement 여부를 저장하는 Table

Notification ID					
Regular					
Emergency					
Equivalent					
Treatment					
Supplement					

Country ID	Symbol ID	Number_1 ID	Number_2 ID	Category ID	Number_3 ID
N/COUNTRY_A	N	EQV/N/#	N/COUNTRY/#	None	Rev.#
N/COUNTRY_B	EQV			Revision	Add.#
N/COUNTRY_C				Addendum	Corr.#
.				Corrigendum	Suppl.#
.				Supplement	
.					
.					
.					
.					
.					
N/COUNTRY_Z					

그림 30 SPS 통보문 분류기호 DB 테이블의 구성필드 샘플

WTO SPS 조치를 위한 통보문의 구성요소는 통보문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각의 통보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려면, MS-WORD 통보 문서에서 구성요소 데이터를 추출하여 해당 필드별로 DB에 저장해야 한다. 그림 29는 SPS 통보문별 구성요소를 저장하기 위한 DB 테이블의 구성필드 샘플을 나타낸 것이다.

Sector_1 ID	Sector_2 ID	Sector_3 ID	Sector_4 ID	Sector_5 ID
Member	Member	Member	Special and Diff. treatment	Availability of translations
Agency responsible	Agency responsible	Title		
Products covered	Products covered	Parties involved		
Rigions	Rigions	Entry date		
Title	Title	Products covered		
Description	Description	Description		
Objective	Objective	Further info.		
International Std.	Urgent problems			
Relevant document	International Std.			
Adoption date	Relevant document			
Entry date	Entry date			
Final date	Agency			
Texts from	Texts from			

Objective ID	Standard ID	Final_date ID	Further_info ID
food safety	Codex	Notification auth.	Enquiry point
animal health	OIE	Enquiry point	Other
plant protection	IPPC		
protect humans	None		
protect territory			

그림 31 SPS 통보문별 구성요소 DB 테이블의 구성필드 샘플

통보문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되므로 구성요소 또한 다음과 같이 5개의 섹터로 구분하여 DB 테이블을 생성해야 한다.

- Sector_1 ID : 정규 통보문의 구성요소 13개를 저장하기 위한 Table
- Sector_2 ID : 긴급 통보문의 구성요소 13개를 저장하기 위한 Table
- Sector_3 ID : 동등성 인정 결정 통보문의 구성요소 7개를 저장
- Sector_4 ID : 특별 및 차등대우 통보문의 구성요소 1개를 저장
- Sector_5 ID : 번역 가능에 관한 통보문의 구성요소 1개를 저장

Objective ID	Commodity ID	Commodity_1 ID
food safety	01	0101
animal health	02	0102
plant protection	03	0103
protect humans	.	0104
protect territory	.	0105
	.	0106
	10	Commodity_2 ID
	.	.
	.	.
	20	Commodity_20 ID
	21	.
	22	.
	23	.
	24	Commodity_25 ID
	25	.
	44	.
		Commodity_44 ID
		4401
		4403
		4407
		4410
		4415
		4421

그림 32 상품분류코드 DB 테이블의 구성필드 샘플

한편, 정규 통보문의 경우에는 통보문을 구성하는 13개 항목 중 4개 항목 (7, 8, 12, 13)과 긴급 통보문의 경우에는 13개 항목 중 4개 항목(7, 9, 12, 13)은 SPS 조치를 위한 통보문 작성 시 반드시 체크해 주어야 하는 항목이므로 다음과 같이 DB 구축 시 별도의 테이블을 생성해 주어야 한다.

- Objective ID : 정규 및 긴급 통보문의 7번 항목에서 선택된 내용을 저장

하기 위한 Table

- Standard ID : 정규 통보문의 경우에는 8번 항목, 긴급 통보문의 경우에는 9번 항목에서 선택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한 Table
- Final_date ID : 정규 및 긴급 통보문의 12번, 13번 항목에서 선택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한 Table
- Further_info ID : 동등성 인정 결정 통보문의 7번 항목에서 선택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한 Table

WTO SPS 조치를 위한 정규 통보문과 긴급 통보문의 구성요소 중에서 7번 항목(objective and rationale)은 통보문 검색시스템에서 상품(commodity)별로 검색을 위해 중요한 키워드를 제공한다. 따라서 그림 32와 같이 Commodity는 "Object ID" 테이블과 링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각 상품코드는 WCO⁵¹⁾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및 식품의 상품분류(HS 코드)를 참조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품분류 코드는 표 21과 같다.

그러나 상품분류 코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상품이 HS 코드와 다른 분류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실제로 HS 코드는 부속 코드로서 사용자의 필요 시 검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ISO에서 개발한 ICS 분류에 의한 코드도 부가할 필요가 있다. (표 22 참조)

상품분류 코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너무 세밀하게 나누면 정보 소비자가 잃어버리는 분류가 있을 수 있으며, 너무 크게 나누면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회람하게 되므로 적절한 크기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4.2.2 SPS 통보문 검색 및 전파시스템 구축 방안

WTO SPS 조치는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WTO 및 SPS 위원회에서는 SPS 통보문을 이메일로 첨부하여 회원국의 관련 기관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SPS 통보문을 위한 전파시스

51) <http://www.wcoomd.org/ie/EN/en.html>

템이 미약한 실정이어서 WTO 회원국의 SPS 조치 현황을 국내 수출입 회사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쉽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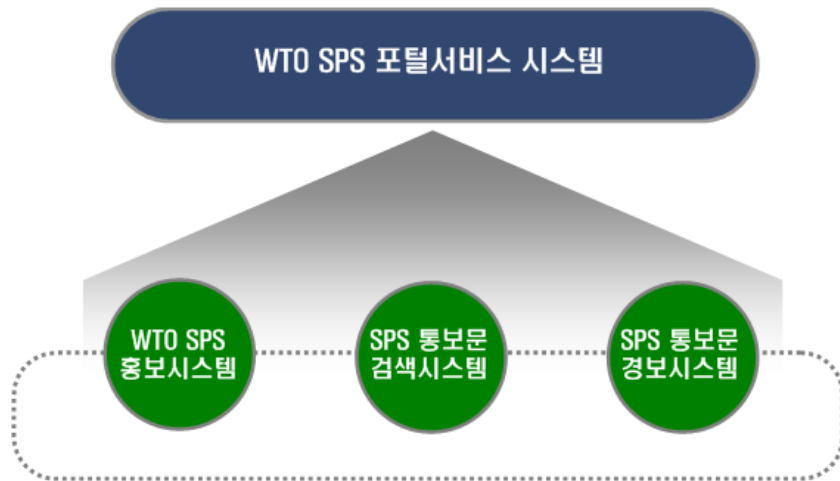


그림 33 SPS 통보문 검색 및 전파시스템의 구축 방안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 또는 기관에서의 SPS 조치에 통보문 전파시스템 사례와 국내 기술표준원에서 구축 중인 WTO TBT 자동경보시스템 사례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SPS 통보문 검색 및 전파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WTO 회원국 또는 제외국에 대한 SPS 제도 및 조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효율적으로 통보/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그림 33과 같이 제안한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는 WTO SPS 협정과 더불어 관련 내용을 웹을 통하여 제대로 홍보하는 정부 기관 또는 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WTO SPS 조치에 대한 일반현황, SPS 결정문, SPS 논의 결과 및 최근 동향을 홍보할 수 있는 “① WTO SPS 홍보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다음에는 SPS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조건에서 검색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② SPS 통보문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SPS 조치를 위한 통보문을 이해당사자에게 효율적으로 통보/확산할 수 있는 “③ RSS를 이용한 SPS 통보문 경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시스템을 한꺼번에 구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시스템의 최종 단계는 위

에서 언급한 ①, ②, ③ 시스템을 포함하며, 포털기능이 탑재된 "④WTO SPS 포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WTO SPS 홍보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PS 홍보시스템"은 미국 USDA의 APHIS⁵²⁾와 같이 SPS 조치, SPS 협정, 그리고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위험평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모듈단위의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습 페이지를 구성하여 이를 이해당사자 및 관련 업체에 확산하면 많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SPS 협정관련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레이션이 추가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면 홍보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2) SPS 통보문 검색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PS 통보문 검색시스템"은 앞에서 언급한 통보문 템플릿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방안을 참조하여 한글/영문 모두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 검색시스템은 유럽연합의 MADB⁵³⁾와 FAO의 IPFSAPH⁵⁴⁾와 같이 유사한 검색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원 국가별 검색기능 제공
- 국가별 검색기능 제공
- Document Symbol 검색기능 제공
- Document Title 검색기능 제공
- Document Number 검색기능 제공
- Document Date 검색기능 제공
- 상품(Commodity)별 검색기능 제공
- 회원국 및 상품별 검색기능 제공(cross search 기능)
- 회원국 및 SPS 조치별 검색기능 제공(cross search 기능)

52) <http://www.aphis.usda.gov/is/sps/>

53) <http://madb.europa.eu/sps/index.html>

54) <http://www.ipfsaph.org/En/default.jsp>

3) SPS 통보문 경보시스템

현재 SPS 조치에 대한 WTO 통보문의 전파형태는 MS Word(DOC) 문서 형태로 이메일에 첨부되어 국내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된다. 다음에는 해당 담당자가 첨부된 문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파악하고 이를 다시 국내 이해당사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전 세계 회원국의 SPS 조치에 대한 내용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파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4와 같이 RSS(Rich Site Summary; Really Simple Syndication) 개념을 이용한 통보·확산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그림 34 RSS 시스템에 대한 개념

RSS는 뉴스나 블로그 등 자주 갱신되는 웹 사이트의 내용을 통보하거나 배급하기 위한 XML(eXtended Markup Language) 기반의 차세대 웹 서비스 기술이다. 예를 들면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웹 사이트의 RSS 파일을 정기적으로 수집하면 B 사이트의 갱신된 콘텐츠의 제목, 링크, 내용을 자동화된 과정에 의해 자신의 사이트에 등록하고 RSS 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해 B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최신 콘텐츠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0개의 웹 사이트에서 최근 갱신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웹 브라우저를 열고 10개 사이트를 하나씩 방문해서 지난번 읽었던 곳을 찾고 그 뒤로 새로운 글이 올라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시간 뒤에 또 확인해보려면 이 작업을 손으로 하나씩 다시 해줘야 한다. 그런데 만약 10개의 사이트에서 RSS를 제공한다면 RSS 리더기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확인이 가능하고 일정한 시간간격마다 자동으로 갱신된 내용을 확인해 준다.

상기와 같은 RSS 기술을 이용해 SPS 조치에 대한 WTO 통보문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림 33과 같은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통보문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에는 RSS 리더기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검색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파싱(parsing) 단계를 거쳐 모든 데이터를 RSS 포맷으로 변환해야 한다. 국내 이해당사자들은 농림부에서 서비스하는 RSS 시스템을 통해 회원 각국의 SPS 조치에 대한 WTO 통보문을 RSS 리더기로 손쉽게 획득하고 반대로 국내 수출입 업체나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의 RSS 시스템 연동을 통해 SPS 조치에 따른 WTO 통보문의 활용실태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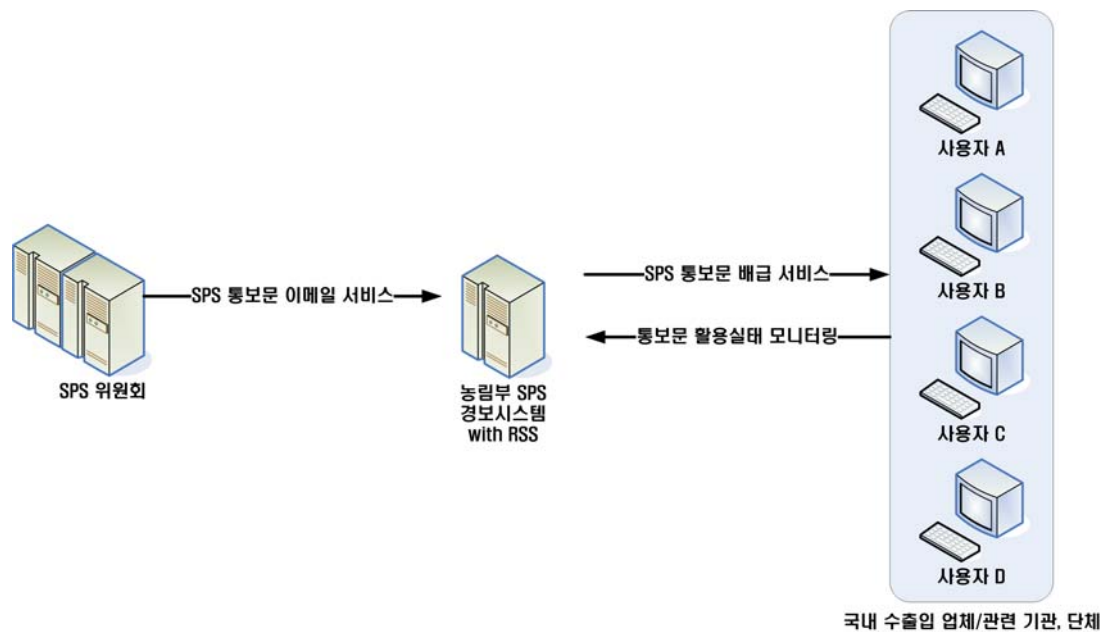


그림 35 SPS 통보문 경보시스템의 정의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동 푸시 메일링 시스템 기능과 더불어 RSS 기능을 포함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회원가입 시, 대분류, 소분류로 구분하여 관심분야를 체크하면 SPS 통보문 등록 시, 자동으로 해당회원별로 통보문 원문과 함께 이메일이 발송되고 회원들이 RSS 리더기를 통해 항목별로 정리된 조치내용을 SPS 통보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즉, 단순히 관심분야를 등록하여 SPS 통보문을 자동으로 뿌려주는 시스템은 관심분야를 정확히 등록하지 않았거나, 통보문 원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통보문 전파에 있어서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메일 푸시 기능과 더불어 RSS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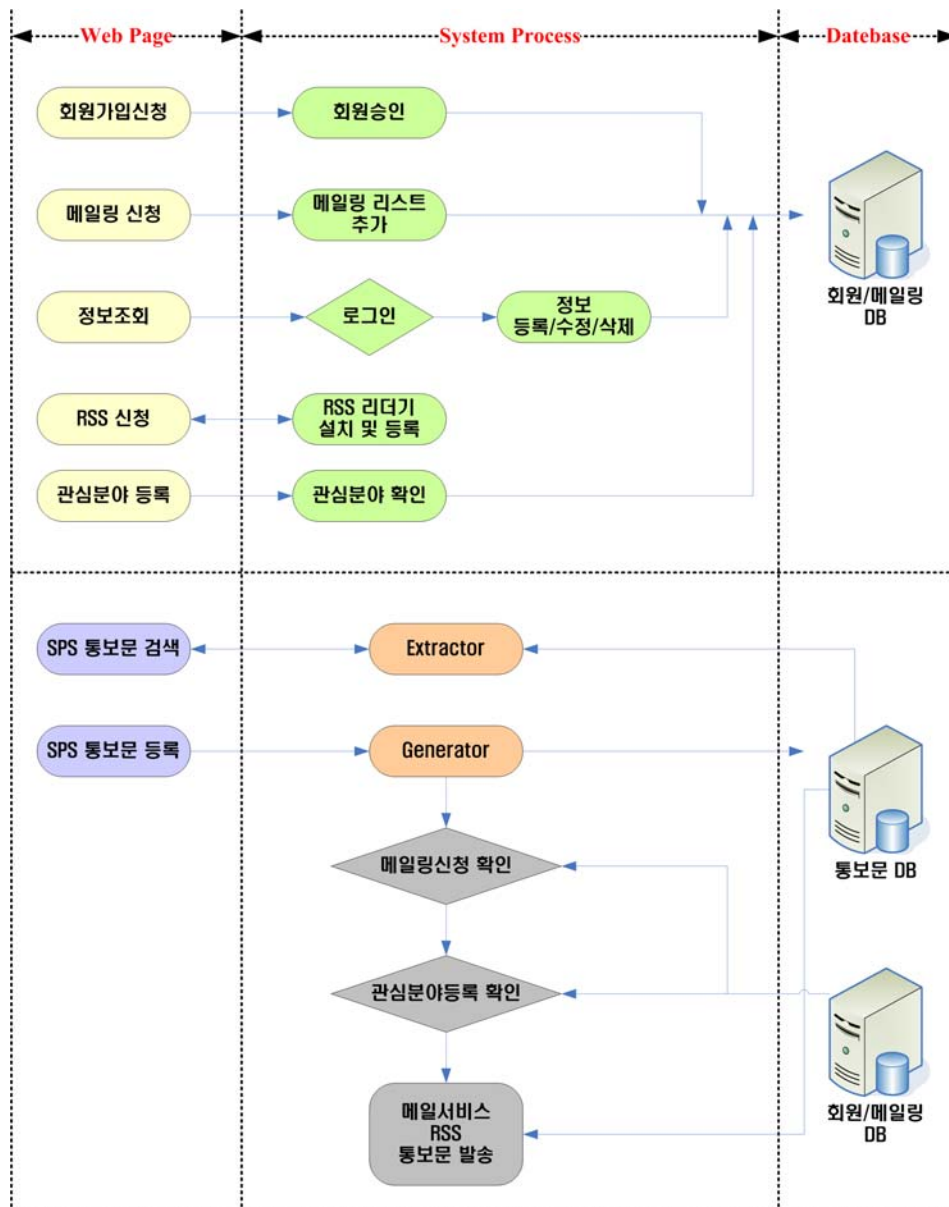


그림 36 제안하는 SPS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의 프로세스

먼저, 회원은 웹 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할 때 관심 분야를 체크하고 메일링을 신청하면 시스템은 이를 확인하여 Member/Mailing DB 저장한다. 아울러, RSS를 신청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 회원의 PC에 RSS 리더기를 설치하게 된다. 새로운 통보문을 관리자가 등록하면, 시스템은 각 통보문별로 내용을 파싱(parsing)하여 항목별로 통보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된다. 아울러, 메일링을 신청한 각 회원에게 체크된 관심분야별로 SPS 조치 내용을 원문과 더불어 이메일로 통보하게 된다. 그림 36는 제안하는 SPS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의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4) 결론 및 기대효과

현재 국내에서는 WTO SPS 조치에 대한 통보문의 공식 통보처(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SPS 통보문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더불어 통보문 확산, 검토, 모니터링을 위한 전파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TO SPS 조치 변화를 빠르게 확인하고 국내 수출입 업체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SPS 조치에 대한 통보문을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국내외 주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전파시스템 사례를 고찰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SPS 통보문 검색 및 전파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WTO SPS 조치를 위한 통보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국내 이해당사자에게 SPS 협정과 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미국의 APHIS나 호주의 AQIS처럼, 수출입업자가 반드시 체크해야만 하는 다양한 수출입 조건(검역이 필요한지 아닌지, 검역이 필요할 경우 취급이나 운송방법, 포장방법 등), 위험관리 요소 및 방안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홍보자료의 웹 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USDA에서 제공하는 APHIS와 같이 SPS 협정 및 조치 관련 내용을 이해당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플래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구성하여 나레이션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SPS 통보문 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여러 종류의 통보문 템플릿을 분석하였으며, 비교적 정규화된 통보문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DB 모델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통보문 검색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하는 검색 기능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으며, 통보문 DB가 RSS와 연동하여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내용을 항목별로 구독할 수 있도록 DB가 구축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SPS 조치를 위한 통보문의 보급 또는 확산을 위하여 자동 푸시(push) 메일링 시스템 기능과 더불어 RSS 기능을 포함하는 경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RSS를 이용한 SPS 통보문 경보시스템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배포할 수 있으며, 또한 시스템 간에 RSS 연동을 통해 WTO 통보문

의 활용실태 및 사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시스템을 한꺼번에 구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그림 37과 같이 단계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시스템의 최종단계는 단계별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는 포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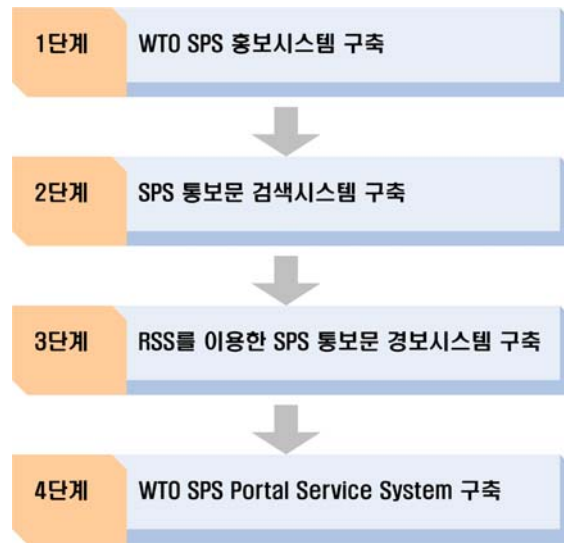


그림 37 단계별 시스템 구축 방안

그림 3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WTO SPS 포털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SPS 조치관련 통합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산업체나 이해당사자의 수요조사에 의한 수요 도출 및 반영
- 시스템 개발자 및 농림부, 관련 기관/단체의 자문 반영
- 추진위원회 분석 및 선정

ISP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웹 프로그램 개발

- 농림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단체의 자문 반영
- 추진위원회의 의견 반영 및 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자 담당 및 추진

홈 페이지 제작 및 시범운영

- 기존에 구축된 농림부 홈 페이지의 장점 및 단점 체크하여 신규 개발되는 홈페이지의 연동과 향후 확장성 고려
- 시스템 개발자 담당 및 추진
- 산업체 및 이해당사자의 반응 점검

SPS 통보문 가공 및 DB 입력

국내외적으로 SPS 통보문 전과 및 모니터링을 위한 대표 사이트가 되기 위해 활용성이 높은 자료 및 국내외 정보를 확보하고, 기본 웹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홈 페이지 제작과 연계해 자료의 가공이나 입력을 추진한다.

- 자료에 따른 활용방안 정립
- 가공정보의 내용, 형태, 활용도 등 정밀 분석
-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담당 전문가 활용



그림 38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이 완성되면 기존의 이메일을 통한 SPS 조치 및 제도변화의 확산, WTO 통보문 배급 방식과 비교하여 많은

홍보효과 및 전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 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한 제도의 신속한 개발과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6은 RSS를 이용한 SPS 포털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나타낸 것이며, SPS 조치 관련 신규소식, 컨텐츠, 통보문 관련 정보 조회 및 검색, 메일링, 기타 각종 정보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4.3 정책 제안

WTO의 SPS협정의 목표는 WTO회원국 영토의 국민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동시에 무역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SPS협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통보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보면 SPS통보에 관한 정보의 주요 소비자는 무역업자와 국내 위생관리자의 두 그룹이 있을 수 있다.

SPS통보문의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회람은 궁극적으로 국내 SPS조치의 도입·이행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무역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SPS협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SPS 홍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SPS 통보문의 검색 및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1) 제공 정보

이들 두 그룹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외국의 검사·검역 조치는 공통으로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WTO 통보문은 무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조치의 제·개정에 대한 통보로 현재 유지 중인 조치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또한 SPS통보문은 SPS협정에서 정의하는 SPS 조치는

-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또는
-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특히, 제종제품 기준, 가공 및 생산방법, 시험, 조사, 증명 및 승인절차, 동물 또는 식물의 수송 또는 수송중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관련된 적절한 요건을 포함한 검역처리, 관련 통계방법, 표본추출절차 및 위험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포장 및 상표부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SPS 조치를 제외한 품질 규격 및 표시 등에 대한 내용은 SPS에 통보되고 있지 않고 TBT 통보문으로 회람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동·식물의 안전관리 및 무역을 하는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본 연구과제에서 제기된 ① WTO SPS통보문 중 관련 품목에 대한 조치 내용, ② WTO TBT통보문 중 관련 품목에 대한 조치 내용 및 ③ 유지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심 품목 또는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조치 동향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외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는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연차별로 주요국 순으로 조사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제공되고 있는 국가라도 조치의 제·개정 등 상시 변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SPS 및 TBT 통보문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최신화가 필요하다.

국내 동·식물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이러한 SPS 통보문 및 TBT 통보문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내 동·식물 안전관

리 담당자에게 제공이 바람직한 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을 수 있다.

- 주요국의 동식물질병 방역 관리 규정 및 프로그램(ex. 예찰프로그램)
- 주요국의 축산물 위생 관리 규정 및 프로그램(ex. 잔류물질 및 미생물 관리 프로그램)
- 주요국의 동식물 및 축산물 수출입 검역검사 기준
- 주요국의 식품위생 및 동식물 방역을 담당하는 조직 이름, 인원, 년도별 예산
- 주요국의 동식물 및 축산물검역관련 주요 정부 기관 및 민간기구의 홈페이지
- 동식물 및 축산물검역관련 주요 언론매체 홈페이지
- 수출입 동식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 실적.
- 외국기관과의 인사교류 프로그램
- 동·식물 질병관련 정책 결정시 이용하는 자문 프로그램

이러한 상기의 정보와 더불어 비록 본 연구에서 일부 국가의 WTO 통보문 활용 실태를 조사하였으나, 가능하다면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사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는 개별 기관에서 확보할 수도 있으나, 중복과 결핍되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이의 이행이 바람직하다.

무역 등 민간 종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한편, 안전관리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 이외에도 무역을 위한 민간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절차를 비롯하여, 운송에 대한 정보, 수출대상국(수입국)의 수입절차, 수입 농산물에 대한 조치 및 관세 등에 대한 내용과 현지 시장 정보 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이들 정보의 대부분 정보는 제공하고 있으나, 수입국의 조치 등에 대한 정보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검역의 경우 수출시 국내에서 수행하는 수출 검역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으나, 수입국의 농산물에 대한 검역 조치 및 품질규격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개별 농축

산물에 대한 국가별 수입절차, 위생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 및 관세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바람직하다.

정보의 분류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에는 너무 많은 정보는 해당 정보가 없는 것과 같다. 즉 너무 많은 정보는 정보 수요자의 선택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정보 수요자는 결국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다시 시간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며, 결국은 이들에게 약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하나, 추가적인 시간 투여가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너무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공급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입수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분류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 제공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안

SPS위원회에서는 SPS협정의 이행 강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워크숍에서 개발도상국은 자국이 SPS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발표하였으며, 워크숍을 통하여 여러 해결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대부분의 경험을 발표한 국가는 빈곤한 국가로서 대부분의 결론은 기술 및 자원(경제적, 인적 등)의 지원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많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자국내 이해관계자에게 정보전달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기된 여러 문제점 중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견 수렴기간이 짧아 번역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이 어려움, 통보문의 분류, 번역의 어려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민간부분의 반응, 이해관계자의 참여 저조, 민간기구의 역할 조정, 지방의 이해관계장의 참여 저조, 제한된 인적·재정적 자원 및 능력배양의 필요성) 등은 우리나라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보다 더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워크숍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조직 및 법률적 수준에서의 경향

SPS 조치에 대한 각국은 정치적으로 수준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들 결정권자의 SPS 사안에 대하여 제한된 지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법률적으로 SPS 사안에 정부내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상호간의 조화가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치와 민간부분에서 SPS사안을 국가 우선 분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정 기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사무국을 설립하고, 공식·비공식적으로 국가위원회 등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능력개발

이해관계자(민간, 제조·생산자, 경제운영자 등)의 인지도가 부족하며, 국가 SPS 위원회의 회원 훈련 워크숍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인력에 대한 훈련 및 재정적 자원의 강화가 필요하며, 능력 있는 대표자를 선정함으로써 민간부분의 공식적인 참여 강화와 촉진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된 중·장기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통보문 및 투명성 증진

통보문의 의견수렴기간이 일반적으로 짧아 번역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 지난하며, 제안되는 SPS규정 및 조치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 문서의 번역을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필요한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SPS 통보문의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시간, 양, 불충분한 정보, 번역 등의 이유로 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 활용하여 통보문, 국가, 제품 및 활용자(관심분야에 따라 분류된 활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모니터링과 의무 이행은 본부의 사무국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함을 지적하였으며, 국내·외 문의처간의 공조가 바람직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기하는 의견은 민간과 공공의 이해를 균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해관계자와 협력

또한, 각국은 자국의 민간부분은 SPS조치에 대하여 자신에게 직접 닥친 긴급사이거나 또는 어려움에 대하여만 반응하며, 이해관계자(특히 민간 분야)의 참여 저조하여 정책적 접근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에 관련 민간기구가 여럿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간의 역할의 중복이 발생하거나 수직적 기구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경우 지방의 이해관계자와 접촉이 어려워 지적되었다. 더불어 능력배양을 위하여는 특화된 훈련이 필요하나 인적·금전적 자원의 제한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SPS조치에 대한 효과와 비용·효과 연구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이해관계자는 기타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스스로 선택, 소규모 생산자단체에 요청에 의하여 확대가 바람직함을 제안되었다. 이해관계자 교육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이해의 조정과 특정 정보가 어째서 관계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국제규격과 절차에 관한 인지도 향상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명확한 국내 조정 기작(예, SPS분과위원회 설립)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지방과의 연계는 인터넷 등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제기되었다.

3) 번역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도, 제공 정보의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하여는 모든 통보에 대한 조치를 한글로 번역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통보문에 대한 번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제안 및 채택된 모든 조치를 한글로 제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에서 주요 국가를 선택하고 주요 최종 조치에 대한 번역물의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제2외국어로 영어를 선택하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SPS 통보문 및 기타 원문에 나오는 전공용어(jargon)도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초기에 영어로 회람되지 않은 SPS 통보문이라도 최초 회람 후 수일 이내에 영어를 포함하는 모든 WTO언어로 제공된다. 그러나 통보되는 문서 중 긴급 통보문은 긴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어 이외에도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의 번역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의 전공용어의 번역이 가능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전문이 해석되어야 하는 주요 국가의 조치는 선택되는 주요국가에 따라 그 국가에 대한 SPS 제도와 전공용어를 알 수 있는 해당 언어의 능력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통보문을 모두 요약 번역문과 원문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조치의 경우는 앞에서 기술된 수입절차 조사 대상 국가의 주요 조치를 우선적으로 번역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치를 도입한 국가의 언어가 아닌 어떠한 언어로의 번역물도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제공되는 번역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증 시스템의 구축도 향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향후 제안

이와 같이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면 중국의 사례와 같이 국가 문의처로서 제외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영문페이지도 추가 구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안한 모든 정보의 제공은 개시된다면 향후 1-2년 또는 5-10년이 아닌 지속적인 정규 사업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농무성의 FAS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최근 수년간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경우 어떠한 기기·제도 등을 처음 도입할 때에는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도입하나 이후 관리소홀로 정상적인 기간만큼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WTO SPS 통보문을 비롯하여 정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장기적으로 지속하여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참고 자료

<참고 문헌>

1. 신성균, 2004, WTO/SPS, TBT 각국 통보문 조사·분석 및 FTA 관련 분석, 한양여자대학
2. 신성균, 2005, WTO/SPS, TBT 각국 통보문 조사·분석, 한양여자대학
3. 신성균, 2006, WTO/SPS 및 TBT 각국 통보문 조사·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양여자대학
4. 남상열, 2005,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2005,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for Standards
6.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2006,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7. WTO, 2006, Workshop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PS Agreement held on 31 March 2006 (G/SPS/R/41)
8. WTO, 2006, Specific Trade Concerns (G/SPS/GEN/204/Rev.6)

<법 령>

1. WTO,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2.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
3. 농림부, 식물방역법

<참고 인터넷 페이지>

1. <http://docsonline.wto.org/>
2. <http://madb.europa.eu/sps/index.html>
3. <http://web.resource.org/rss/1.0/>
4. <http://www.affa.gov.au/>
5. <http://www.amazon.com/>
6. <http://www.aphis.usda.gov/is/sps/>

7. <http://www.ask.com/>
8. <http://www.at.or.kr/>
9. <http://www.ats.go.kr/>
10. <http://www.aqsiq.gov.cn/>
11. <http://www.bittorrent.com/>
12. <http://www.bloglines.com/>
13. <http://www.bradsoft.com/feeddemon>
14. http://www.codexalimentarius.net/web/index_en.jsp
15. <http://www.ebay.com/>
16. <http://www.feedburner.com/>
17. <http://www.feedster.com/>
18. <http://www.ietf.org/>
19. <http://www.ipfsaph.org/En/default.jsp>
20. <https://www.ippc.int/IPP/En/default.jsp>
21. <http://www.kati.net/>
22. <http://www.kfda.go.kr/>
23. <http://www.ludicorp.com/>
24. <http://www.maf.go.kr/>
25. <http://www.microsoft.com/>
26. <http://www.oie.int/>
27. <http://www.searchlores.org/teoma.htm>
28. <http://www.serence.com/>
29. <http://www.sharpreader.net/>
30. <http://www.talkdigger.com/>
31. <http://www.tbt-sps.gov.cn/>
32. <http://www.userland.com/>
33. <http://www.w3.org/>
34. <http://www.wcoomd.org/ie/EN/en.html>
35.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ps_e/sps_e.htm
36. <http://www.xpyder.co.kr/>

<첨부 1>

WTO/SPS 홍보 시스템 개발(안)

<첨부 1> WTO/SPS 홍보 시스템 개발(안)

(1) 과제명

WTO SPS 통보문 검색 및 전파시스템 구축을 위한 웹 프로그램(홈페이지) 개발 및 통보문 DB 구축

(2) 주요 구성내용

가) 공통사항

① 회원 등록·관리

- 이용자 등록 및 Login/Logout 인증처리(법인, 개인) 및 DB
- 이용자 정보변경 및 처리상태 보기
- 이용자의 관심분야 등록 처리

② SPS 통보문 실시간 자동경보 서비스

- e-mail push 서비스
 - 관심분야별 통보문 서비스, 신규등록, 공지사항 등
- RSS 지원 웹 서비스
 - RSS reader 자동설치 지원 서비스
- 분야별 정보 수집 및 분류
 - 최신 공지사항 보기
 - 분야별 뉴스 보기
- 각종 행사/이벤트/세미나 참가 및 등록 서비스

나) WTO SPS 홈페이지 구축

① 농림부 등 관련 부처 정보

② 해당 기업이나 이해당사자의 애로 및 건의상담 서비스

- DB와 연계된 통보문에 대한 의견 수렴용 e-mail 페이지
- 이용자 애로요청 및 전달(게시판, 메일 등)

- 애로 및 건의사항 응답체제 구축(기관별 담당자, 웹마스터)
- 각종 건의정보 서비스(정책/아이디어/홍보 등)

③ 부가서비스

- 월별 행사, 이벤트, 세미나 정보
- 설문조사
- 일반 게시판: 공지사항, 자료실, 건의사항
- 각종 시책 정보
- Site Link
- Site Map 등

다) SPS 통보문 DB 및 관련 DB 구축

① WTO SPS 통보문 DB 구축

- 회원 국가별 검색기능 제공
- 국가별 검색기능 제공
- Document Symbol 검색기능 제공
- Document Title 검색기능 제공
- Document Number 검색기능 제공
- Document Date 검색기능 제공
- 상품별 검색기능 제공 (HS 및 ICS code, 기타 분류체계 기반)
- 회원국 및 상품별 검색기능 제공(cross search 기능)
- 회원국 및 SPS 조치별 검색기능 제공(cross search 기능)

② 국내·외 농수축산업정보

- 주요국가의 농수축산업정보
 - 주요국가의 현황(검사·검역 및 SPS 제도, 시장, 산업 현황)
 - 기타
- 주요 국제기구(OIE, IPPC 등) 동향
 - 주요 기구의 표준
 - 논의 동향 및 회의 참석 보고

- 정책 및 동향정보
 - 국내 SPS 관련제도
 - 관련 국제협약 등(국가별 수입요건 등)
 - 관련동향 정보
 - 기타
- 농수축산업 연계정보
 - 산업관련 연계정보
 - 기술관련 연계정보
 - 기타
- 기타 관련 정보: 관세율 등

라) 기타: 사이버 동호회 등 커뮤니티 시스템

마) 운영 및 관리 시스템

① 서비스 관리기능

-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서비스를 관리하고 특별한 프로그래밍 없이 서비스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② 유관기관, 산업체, 이해당사자 데이터 공유체제 구축

- 업체, 인력 등의 정보 DB의 자료 교환을 위해 표준화된 포맷 설정
- 표준 포맷 파일을 오라클 DB 혹은 MS SQL 등으로 upload 또는 표준 포맷 파일로 download가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③ 통계처리

- 이용자 및 등록된 정보자료(DB) 등의 접속, 사용 등 각종 통계 및 현황은 통계항목 및 통계처리 형태, 형식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집·분석·보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DB 관리 시스템

- 등록된 정보자료(DB)들의 보완, 수정 및 갱신작업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설계한다.
- 향후 정보자료의 표준화 및 호환성을 고려한 환경을 설계한다.

(3) 추진계획

가) 추진전략

- 이용자 중심의 종합적인 SPS 포털(portal site)로 구축하되,
 - 단순(simplicity)하고, 접근 용이성(accessability)
 - 차별화(distinctive)되며, 역동적(active, dynamic)
 - 이용하기 쉬운(easy & smart), 양방향성(interactive)을 가진 전문적인 포털 시스템을 구축한다.
- 사업추진은 ①ISP 계획수립, ②시스템 개발자 선정, ③WTO SPS 통보문 검색 및 전파시스템 구축 및 DB 구축환경 설계의 순서로 수행
-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는 협의하여 추진
-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력업체간의 역할 분담
 - 검색시스템과 자동경보시스템, 홈페이지 및 DB구축환경 개발과 구축은 전문성을 지닌 시스템 개발자를 선정하여 추진
 - DB구축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는 주관기관의 협조로 수행

나) 추진방안

① SPS 포털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 농림부, 관련 기관/단체 등
- 역할 및 운영
 - DB구축과 관련된 정보자료의 형태, contents 및 범위 수립
 - SPS 통보문 구축정보 선정 및 가공 등의 구축계획 수립

② 홈페이지 구축 및 정보자료(DB) 구축환경 개발

- SPS 포털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통합정보자료(DB) 구축환경 설계 및 개발

- 역할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 통합정보자료(DB) 구축환경 설계 및 개발
 - 시스템 개발자 추진
 -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③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위원회 구성
- 역할 및 운영
 - 전체 또는 세부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 제반사항 점검
 - 정보 선정, 정보입수 및 가공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역할
 -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추진내용 검토 및 점검
 -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한 정보내용 점검 및 분석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농림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 산업체 전문가 등
- 역할 및 운영
 - 수록될 자료의 정보수집, 가공, 업그레이드 계획 수립
 - 상시 활용체제로 정보교류 및 상호 보완
 -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한 정보내용 점검 및 분석

⑤ 협력시스템 구성 및 운영

- 전문 시스템 개발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제작 추진
- 관련 기관, 단체, 산업체와 협력하여 전반적인 자문 협조
- 관련 기관, 단체, 산업체 정회원 및 특별회원 활용

다) 기타

- 추진조직
- 시스템개발 추진일정(안)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부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부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농림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